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23. 12

## UNITED KINGDOM

영국 편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홍 용 기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박 지 우 선임연구원

# 목 차

제1편 개관 .....	1
I. 일반 개황 .....	1
II. 경제 개황 .....	5
1. 주요 경제지표 .....	5
2. 대(對) 세계 상품무역 현황 .....	7
가. 영국의 대(對) 세계 수출입 .....	7
나. 영국의 국가별 수출입 .....	8
다. 영국의 수출입 품목 .....	10
3. 외국인 투자 동향 .....	11
가. 영국의 FDI 유출입 .....	11
나. 영국의 업종별 투자 유치 .....	12
다. 대(對) 영국 주요 국가별 FDI 유입액 .....	13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15
1. 한-영국 수출입 동향 .....	15
2. 한-영 자유무역협정 .....	17
가. 협상 추진의 배경 .....	17
나. 협정문 내용 .....	19

IV.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27
1. 무역 관련 협정 개요 .....	27
2. 브렉시트 체결일지 .....	31
제2편 통관제도 .....	32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	32
1. 통관행정 조직 .....	32
2. 관계 법령 .....	38
가. 관세 관련 법령 .....	38
나. 관세 관련 규정 .....	41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45
1. 과세요건 .....	45
가. 과세물건 .....	45
나. 과세표준 .....	45
다. 납세의무자 .....	46
라. 과세환율 .....	46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47
가. 관세의 확정 방식 .....	47
나. 세액의 정정 .....	49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52
가. 부가가치세 .....	52
나. 소비세 .....	54

III. 관세평가제도 .....	57
1. 개요 .....	57
가. 관세평가제도 .....	57
나. 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 .....	59
2.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	60
3.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 .....	64
가.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2 방법) .....	64
나.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3 방법) .....	65
다.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4 방법) .....	66
라. 산정가격 기준(제5 방법) .....	68
마. 합리적인 조정(제6 방법) .....	69
바. 기타 특별 절차에 따른 물품의 가치 평가 .....	70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	74
1. 개요 .....	74
가. 품목분류제도 .....	74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75
2. 관세율제도 .....	76
가. 관세율 수준 .....	76
나. 관세율 체계 .....	79
다. 관세율 종류 .....	82
V. 감면 및 유예 .....	85
1. 개요 .....	85
2. 감면의 종류 .....	86
가. 특혜협정에 따른 물품 .....	86
나.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87

다.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89
라. 교육 및 문화 관련 물품 .....	89
마. 의료 및 과학 관련 물품 .....	90
바. 인쇄물 및 판촉물 .....	92
사. 산업 또는 상업적 연구를 위한 물품 .....	93
아. 특별사용을 위한 물품 및 수산물 .....	93
자. 사업을 영국으로 이전할 때 관련 물품 및 장례식과 추도식 물품 .....	94
차. 소액물품 및 자선 또는 장애인 지원 용품 .....	94
카. 개인용 물품 .....	95
3. 관세의 유예 .....	95
VI. 원산지제도 .....	97
1. 개요 .....	97
가. 원산지제도 .....	97
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	98
2. 비특혜원산지제도 .....	99
3. 특혜원산지제도 .....	102
가. 특혜원산지제도 .....	102
나. 원산지 증명 .....	103
다. 개발도상국 무역규정 .....	105
VII. 보세제도 .....	108
1. 개요 .....	108
2. 보세창고 .....	109
가. 창고 관리 .....	109
나. 물품 보관 및 반출 .....	109
다. 창고 내 작업 및 관리 .....	111

3. 자유지역 .....	112
가. 자유지역 및 혜택 .....	112
나. 자유지역 허가 및 요건 .....	114
다. 자유지역 물품 반출 .....	116
VIII. 수출입규제 .....	117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 .....	117
2. 무역구제제도 .....	119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119
나. 기술무역장벽(TBT) 및 식품위생검역(SPS) .....	121
다. 인증 및 라벨링 .....	123
라. 환경 관련 규제 .....	130
IX. 행정구제제도 .....	132
1. 개요 .....	132
2. 행정구제대상 .....	133
3. 재심사 .....	136
가. 재심사 절차 .....	136
나. 재심사 요구권리 .....	137
다. 재심사 기간 .....	137
X. 벌칙 .....	139
1. 개요 .....	139
2. 벌칙 .....	140
가. 위반행위 및 처벌에 관한 일반조항 .....	140
나.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 .....	142
다. 수입 관련 처벌 .....	145

XI. AEO제도 .....	149
1. 개요 .....	149
2. AEO 공인 대상 및 기준 .....	150
가. 공인 대상 .....	150
나. 공인 기준 .....	151
3. 공인 절차 .....	154
4. 공인 혜택 .....	156
5. 영국의 상호 인정협정 .....	157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158
I. 수입 통관절차 .....	158
1. 수입 통관절차 .....	158
가. 수입 사전 절차 .....	158
나. 수입신고 .....	160
다. 물품검사 .....	167
라.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168
2. 기타 수입 통관절차 .....	170
가. 개인용 물품 .....	170
나. 우편 및 선물 .....	173
II. 수출 통관절차 .....	177
1. 수출 통관절차 .....	177
가. 수출신고 .....	177
나. 물품검사 .....	180
다. 물품 반출 및 환급 .....	181

2. 기타 수출 통관절차 .....	182
가. 개인용 물품 .....	182
나. 우편 .....	183
참고문헌 .....	185

# 표 목차

## 제1편

〈표 1-II-1〉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	5
〈표 1-II-2〉 최근 5년간 영국의 대(對) 세계 수출입 현황 .....	7
〈표 1-II-3〉 영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2021~2022) .....	8
〈표 1-II-4〉 영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2021~2022) .....	9
〈표 1-II-5〉 영국의 FDI 유출입 추이 .....	12
〈표 1-II-6〉 2021년 대(對) 영국 주요 국가별 FDI 유입액 추이 .....	13
〈표 1-II-7〉 2021년 대(對) 영국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	14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수출입 현황 .....	15
〈표 1-III-2〉 2022년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주요 수출입 품목 .....	16
〈표 1-III-3〉 한-영 FTA 일지 .....	19
〈표 1-III-4〉 한-영 FTA 협정문 구성 .....	21
〈표 1-III-5〉 한-영 FTA 양국 상품양허 .....	23
〈표 1-III-6〉 공산품 양허 주요품목 .....	23
〈표 1-III-7〉 우리농산물 세부 양허 결과 .....	24
〈표 1-IV-1〉 영국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	28
〈표 1-IV-2〉 브렉시트 체결일지 .....	31

## 제2편

〈표 2-II-1〉 조세(국경간 무역)법 Taxation Act 2018 체계 .....	39
〈표 2-II-2〉 관세 관련 명령 및 규칙 .....	41
〈표 2-IV-1〉 평균 MFN 관세율 및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	76
〈표 2-IV-2〉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	77
〈표 2-IV-3〉 품목별 관세율 수준 .....	78
〈표 2-VIII-1〉 영국의 대(對) 우리나라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규제 현황 .....	119
〈표 2-VIII-2〉 유해물질 규정 .....	128

# 그림 목차

## 제1편

[그림 1-I-1] 최근 5년 연평균 공식환율(GBP/USD) 추이(2019.11.~2023.11) .....	3
[그림 1-I-2] 2019~2023년 연평균 공식환율(GBP/KRW) 추이 .....	4
[그림 1-II-1] 2022년 영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10

## 제2편

[그림 2-I-1] 영국 조세·관세청 조직도(2023년) .....	36
[그림 2-IV-1] 영국 물품 분류 예시 .....	80
[그림 2-IV-2] 영국 관세율 조회 화면 .....	81

# 제1편 개관

## I. 일반 개황

- 정식 국가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으로 유럽 대륙 서해안에 있는 섬이며, 수도는 런던(London)임
  - 영국은 유럽 본토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나라이며 영토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4개의 구성국이 연합해 형성한 단일국가임
  
- 국토면적은 241,930km<sup>2</sup>로 한반도 면적의 약 1.1배이며, 서안해양성 기후를 보임
  - 서안해양성 기후는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나 습기가 많으므로 안개가 자주 낀
  
-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약 6,702만명이며 주요 인종은 백인임<sup>1)</sup>
  - 잉글랜드 5,653만명, 스코틀랜드 547만명, 웨일스 310만명, 북아일랜드 190만명임

---

1)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 검색일자: 2023. 11. 15.

## 2 제1편 개관

- 인종은 백인(81.7%), 아시안(9.3%), 흑인(4.0%), 혼혈(2.9%), 기타(2.1%)로 구성됨
- 공용어는 영어이며 영국에서는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등 제2외국어를 배워야 함
  - 영국은 공식적으로 국어를 정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으며 토착어인 웨일스어, 아일랜드어, 스코틀랜드어 등은 구사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 웨일스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16세가 넘어가면 웨일스어를 제2외국어로 배운다고 함
- 영국의 국교는 잉글랜드 성공회이며 종교 분포는 기독교(46.2%), 무교(37.2%), 이슬람교(6.5%), 힌두교(1.7%), 기타(2.4%), 무응답(6.0%)으로 조사됨<sup>2)</sup>
  - 영국은 18세기까지 기독교 국가였으나 현대에 들어서 다종교국가로 변모함
-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기본으로 하며 근대적 의회제도와 의원내각제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 영국 국가원수(Head of State)는 찰스 3세 국왕(His Majesty The King Charles III)이자 영연방의 수장이며, 의회 다수당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짐<sup>3)</sup>
  - 의회는 최고의 입법기관으로 2023년 10월 기준 상원의원 785명, 하원의원 6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당으로 보수당, 노동당, 민주연합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등이 있음
  - 내각은 국가수반인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함<sup>4)</sup>
- 영국의 화폐단위는 파운드(GBP, £)로 최근 5년간(2019~2023) 연평균 환율(GBP/USD)

2)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culturalidentity/religion/bulletins/religionenglandandwales/census2021>, 검색일자: 2023.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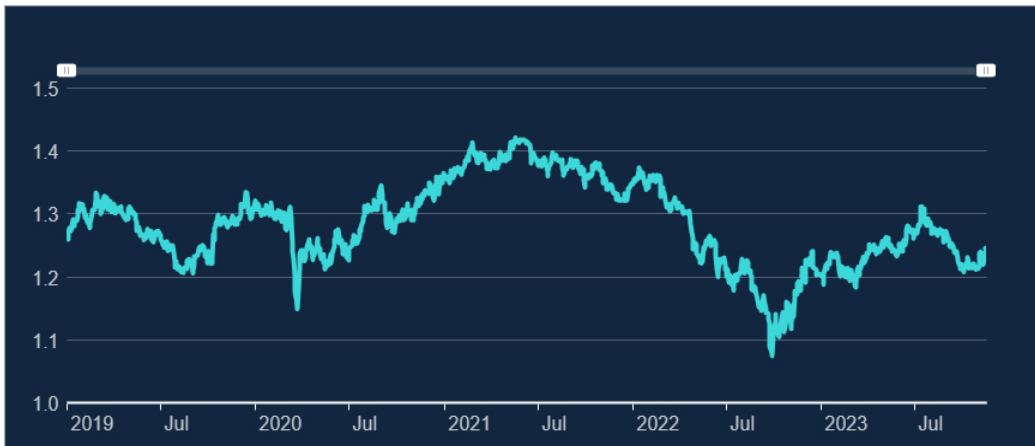
3) 영국 외 영연방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자메이카 등 53개의 영연방 회원국이 있음

4) 하원에서 선출되며 보통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도자가 총리직을 맡음

추이는 [그림 1-I-1]과 같음

- 영국은 군주의 얼굴을 화폐에 새겨 왔는데 2022년으로 구권 지폐(5, 10, 20, 50 파운드 등 4 종류) 사용이 종료되고 2023년부터 폴리머 신권만 사용 가능함
- 2023년 11월 15일 기준 1파운드는 1.244달러이며, 최근 5년 평균 1파운드는 1.2447달러임
  - 최근 52주간 달러 파운드 최저 환율은 1.0774달러이었으며, 최고 환율은 1.4178달러임

[그림 1-I-1] 최근 5년 연평균 공식환율(GBP/USD) 추이(2019.11.~20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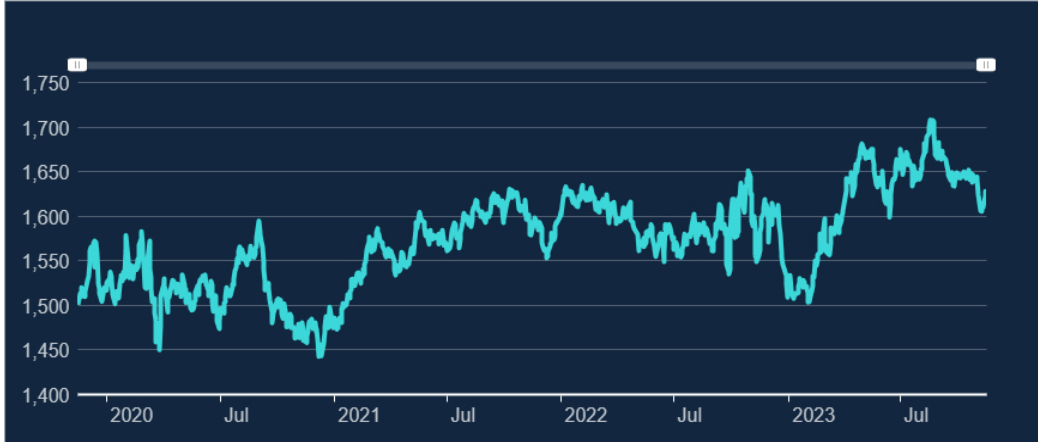
자료: 영국중앙은행(BOE), <https://www.bankofengland.co.uk/boeapps/d`atabase/Rates.asp?Travel=NIXAZx&into=GBP>, 검색일자: 2023. 11. 15.

□ 한편 2019 ~ 2023년 기간 중 원 파운드 환율(GBP/KRW) 추이는 [그림 1-I-2]와 같음

- 2023년 11월 15일 기준 1파운드는 1,621원이며, 최근 5년 평균 1파운드는 1,604원임
- 최근 52주간 원 파운드 최저 환율은 1,503.5535원이었으며 최고 환율은 1,707.9455원임

#### 4 제1편 개관

[그림 1-1-2] 2019~2023년 연평균 공식환율(GBP/KRW) 추이



자료: 영국중앙은행, <https://www.bankofengland.co.uk/boeapps/database/fromshowcolumns.asp?Travel=NIxAZxRSxSUx&FromSeries=1&ToSeries=50&DAT=RNG&FD=15&FM=Nov&FY=2019&TD=15&TM=Nov&TY=2023&FNY=&CSVF=TT&html.x=95&html.y=36&C=INC&Filter=N>, 검색일자: 2023. 11. 15.

## II. 경제 개황

### 1. 주요 경제지표<sup>5)</sup>

- 2022년 영국 경제는 공급망 병목현상 지속,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둔화하는 상황이었음<sup>6)</sup>
- 2022년 1인당 명목 GDP는 약 46,432달러, 경제성장률은 4.1%임
  - 2021년 대비 1인당 명목 GDP는 3.3% 상승하였고, 경제성장률은 3.5%로 다소 하락함
- 2022년 소비자물가 증감률은 9.067%로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함

〈표 1-11-1〉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sup>1)</sup>
명목 GDP(십억달러)	2,858.73	2,706.54	3,123.23	3,081.87	3,332.06
1인당 명목 GDP(달러)	47,286.433	41,892.221	44,941.860	46,432.026	46,428.125
경제성장률(% <sup>2)</sup> )	1.7	-11.0	7.6	4.1	0.4
소비자물가 증감률(% <sup>3)</sup> )	1.791	0.851	2.588	9.067	7.656
실업률	3.7	4.6	4.5	3.7	3.9

주: 1) 추정치, 2) Real GDP growth(%), 3) Inflation, average consumer prices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3. 10.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3. 1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3/October/weo-report?c=112,&s=NGDP\\_R,NGDP\\_RPCH,NGDP,NGDPD,PPP\\_GDP,NGDPRPC,PPPSH,PCPI,PCPIPCH,TM\\_RPCH,TMG\\_RPCH,TX\\_RPCH,TXG\\_RPCH,&sy=2019&ey=2023&ssm=0&scsm=1&ss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3/October/weo-report?c=112,&s=NGDP_R,NGDP_RPCH,NGDP,NGDPD,PPP_GDP,NGDPRPC,PPPSH,PCPI,PCPIPCH,TM_RPCH,TMG_RPCH,TX_RPCH,TXG_RPCH,&sy=2019&ey=2023&ssm=0&scsm=1&ss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 검색 일자: 2023. 11. 22.

6)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동향분석:최근 영국 경제 상황 및 평가」, 2022. 2. p. 1

## 6 제1편 개관

- 2023년 경제성장률은 0.4%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2023년 1/4분기 0.3%, 2/4분기 0.2%를 기록하는 등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sup>7)</sup>
  - 영국의 경제 규모는 2023년 명목 GDP(GDP, current prices) 3조 3,332억달러로 추정되며,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임
  - 영국 경제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에도 큰 충격 없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2017~9년 들어 1% 중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함
    -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은 파운드화 약세 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저조한 임금 상승률이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지출(2018년 현재 영국 GDP의 62.3%) 위축,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노딜 우려)으로 기업투자 지연 등임
  -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1%로 하락하였지만 2021년 7.6%, 2022년 4.1% 등 강력한 회복세를 보임
  
- 2023년 소비자물가는 7.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10월 11.1% 대비 3.4% 하락한 수치임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다 낮은 에너지 가격 및 정부의 부가세 감면 조치 등으로 0%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로 2022년 10월 11.1%로 정점을 찍고 점차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12월 1.3, 2020년 12월 0.6, 2021년 7월 2.0, 2021년 12월 5.4, 2022년 10월 11, 2023년 3월 10.1, 2023년 6월 7.9, 2023년 8월 6.7임
  
- 실업률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따라 2022년 8월 3.5%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최근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 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2020년 들어 코로

7) IMF Country Report No. 23/252, United Kingdom, 2023. 7.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07/10/United-Kingdom-2023-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35878>, 검색일자: 2023. 11. 15.

- 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2월에는 5.2%까지 상승세를 보임
- 실업률(% , 전년동기비)은 2020년 12월 5.2, 2021년 12월 4.0, 2022년 12월 3.7, 2023년 6월 4.2, 2023년 7월 4.3임

## 2. 대(對) 세계 상품무역 현황

### 가. 영국의 대(對) 세계 수출입<sup>8)</sup>

- 2022년 영국 총 무역액은 약 1조 3,735억달러이며, 무역수지는 약 2,968억달러 적자를 기록함
- 같은 해 수출 금액은 약 5,383억달러이며, 수입 금액은 약 8,351억달러임

〈표 1-11-2〉 최근 5년간 영국의 대(對) 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491,327	471,616	395,214	474,641	538,332
수입	675,273	696,998	631,489	691,906	835,186
교역규모	1,166,600	1,168,614	1,026,703	1,166,547	1,373,518
무역수지	-183,946	-225,382	-236,275	-217,265	-296,854

자료: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bulletins/uktrade/September2023#quarterly-trade-in-goods-and-services>, 검색일자: 2023. 11. 15.

- 2023년 9월 말까지 12개월 동안의 영국 총 무역액은 1조 7,742억파운드<sup>9)</sup>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7.6% 상승 전환함<sup>9)</sup>

8)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trade-in-numbers/uk-trade-in-numbers-web-version#uk-trade-summary-statistics>, 검색일자: 2023. 11. 15.

9)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bulletins>

## 8 제1편 개관

- 2022년 9월 말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영국의 수출액은 8,766억파운드이며 수입액은 8,975억파운드임

### 나. 영국의 국가별 수출입

- 2022년 기준 영국의 최대 교역국은 미국이며 교역액은 약 1,200억파운드임
  - 미국에 이어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순임
- 2022년 기준 영국의 최대 수출국 역시 미국으로 수출액은 약 584억파운드이며, 전체 수출 상품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비중은 13.8%임
  -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중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홍콩, 이탈리아 순임
  - 우리나라는 영국의 14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상품의 1.7%를 차지함
- 2022년 기준 영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수입액은 약 708억파운드이며, 전체 수입 상품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비중은 약 11%임
  - 중국에 이어 독일,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순임
  - 우리나라는 영국의 19위 수입국이며 전체 수입 상품의 1.1%를 차지함

〈표 1-11-3〉 영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2021~2022)

(단위: million파운드)

순위	국가명	2021	2022	비중 (% of Total UK goods)
1	미국	49,755	58,409	13.8
2	네덜란드	28,424	37,642	8.9
3	독일	30,148	34,022	8.1

〈표 1-11-3〉의 계속

순위	국가명	2021	2022	비중 (% of Total UK goods)
4	아일랜드	21,870	30,290	7.2
5	중국	18,960	28,650	6.8
6	프랑스	19,721	25,985	6.1
7	스위스	10,376	18,742	4.4
8	벨기에	15,208	18,348	4.3
9	홍콩	7,330	12,662	3
10	이탈리아	9,229	9,667	2.3
14	우리나라	5,769	7,346	1.7

자료: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datasets/uktradegoodsandservicespublicationtables>, 검색일자: 2023. 11. 22.

〈표 1-11-4〉 영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2021~2022)

(단위: million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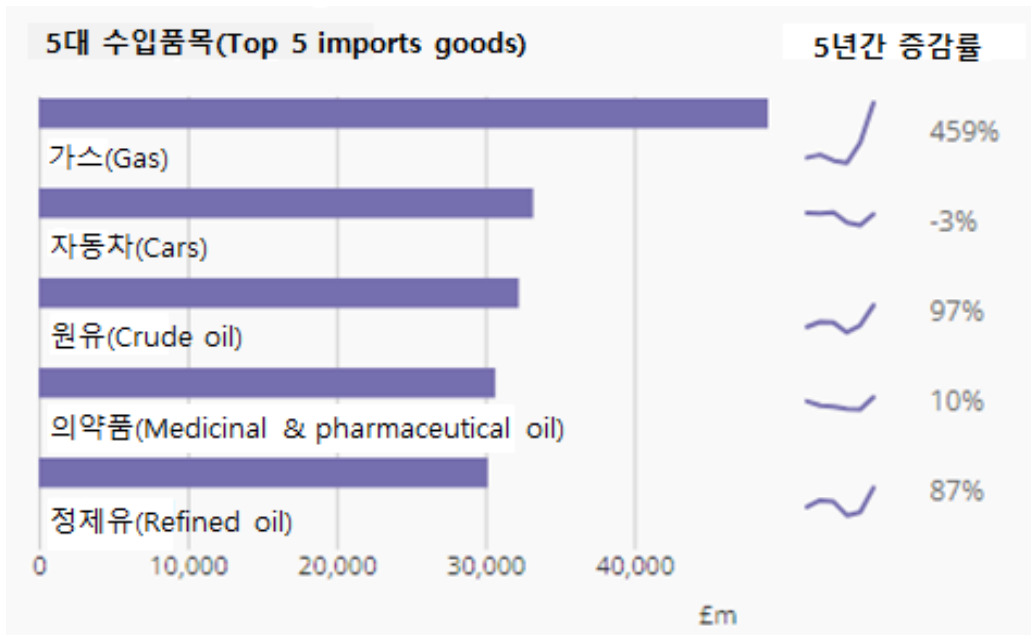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2021	2022	비중 (% of Total UK goods)
1	중국	64,237	70,763	11
2	독일	57,929	68,154	10.6
3	미국	39,253	61,881	9.6
4	네덜란드	33,108	56,038	8.7
5	노르웨이	27,209	44,426	6.9
6	프랑스	23,521	34,153	5.3
7	벨기에	23,915	29,822	4.6
8	이탈리아	18,753	23,544	3.7
9	아일랜드	14,984	19,066	3
10	스페인	15,395	18,766	2.9
19	우리나라	4,972	6,845	1.1

자료: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datasets/uktradegoodsandservicespublicationtables>, 검색일자: 2023. 11. 22.

### 다. 영국의 수출입 품목<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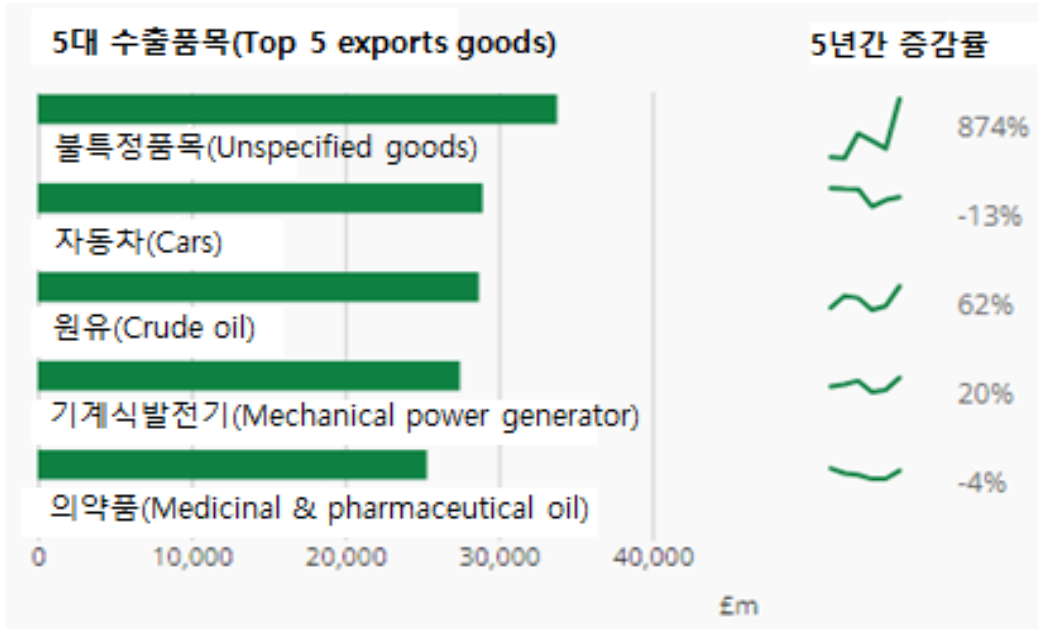
- 2022년 영국의 5대 수입 품목은 가스, 자동차, 원유, 의약품, 정제유이며, 특히 가스의 경우 5년 전 대비 459%의 수입 증가율을 보임
- 2022년 영국의 5대 수출 품목은 불특정품목, 자동차, 원유, 기계식발전기, 의약품이며, 특히 불특정품목의 경우 5년 전 대비 874%의 수출 증가율을 보임

[그림 1-Ⅱ-1] 2022년 영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10)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bulletins/uktrade/September2023#explore-uk-trade-in-goods-country-by-commodity-data-for-2022>, 검색일자: 2023. 11. 22.

[그림 1-11-1]의 계속



자료: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bulletins/uktrade/September2023#explore-uk-trade-in-goods-country-by-commodity-data-for-2022>, 검색일자: 2023. 11. 22.

### 3. 외국인 투자 동향

#### 가. 영국의 FDI 유출입

- OECD에 따르면 2021년에는 영국의 외국인투자가 711억 8,000만달러 감소하였으나 2022년 외국인투자금액은 총 140억 9,500만달러임
- 외국인투자 저량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21년에는 2조 6,898억달러, 2022년에는 2조 6,986억달러를 기록함

12 제1편 개관

- 한편, 2022년 영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총 1,296억달러로 2021년 849억달러 대비 약 53% 증가함
- 해외직접투자 저량의 경우 최근 5년 중 2018년에 1조 8,447억달러로 최저 수준을 보였고 2021년에 2조 3,768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표 1-11-5〉 영국의 FDI 유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국인투자액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87,818	53,908	58,260	-71,180	14,095
외국인투자 저량 (Inward FDI stocks)	1,996,726	2,152,787	2,656,494	2,689,894	2,698,687
해외직접투자액 (Out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82,943	11,715	-78,170	84,926	129,618
해외직접투자 저량 (Outward FDI stocks)	1,844,710	2,167,368	2,221,715	2,376,838	2,203,215

자료: OECD,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ountry-statistical-profile-united-kingdom-2023-4\\_a350090b-en](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country-statistical-profile-united-kingdom-2023-4_a350090b-en), 검색일자: 2023. 11. 22.

나. 영국의 업종별 투자 유치<sup>11)</sup>

-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디지털 기술 분야의 FDI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2022년 영국의 주요 FDI 부문은 디지털 기술(234), 금융 서비스(76), 비즈니스 및 전문 서비스(70), 유틸리티 공급(68), 농식품(61) 순서임
  - 디지털 기술 부문은 23.3% 감소하였고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은 25.5% 감소하여 영국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침

11) EY (Ernst and Young), 「attractiveness survey of foreign investors' investments in the UK」 2022, pp. 5 ~ 7, 19 ~ 24

- 이러한 하락은 금융 서비스, 유틸리티 공급, 의약품 등의 부문에서 눈에 띄는 이익을 상쇄시킴
- 다만, 제조업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증가세를 보였고 서비스 부문 프로젝트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sup>12)</sup>
- 제조업 중 증가세를 보인 부문은 농식품 내 제조업 활동(최대 9개 프로젝트), 유틸리티 공급, 의약품부문임

#### 다. 대(對) 영국 주요 국가별 FDI 유입액

- 2021년 기준 단일국 중 FDI 최대유입국은 미국이며 약 6,757억 파운드로 전체 FDI 총액의 33.7%를 차지함
- 2016년 영국의 FDI 유입액은 GDP의 9.6%에 달했으나 이후 매해 감소하여 2021년에는 -2.3% 수준으로 하락함
- 2019년 EU 국가의 FDI 유입액은 전체의 37%였으나 2022년에는 34.2%로 감소함

〈표 1-Ⅱ-6〉 2021년 대(對) 영국 주요 국가별 FDI 유입액 추이

(단위: 10억파운드)

구분	10억파운드	총계(%)
<b>전체</b>	<b>2,002.4</b>	<b>100.0</b>
미국	675.7	33.7
네덜란드	217.5	10.9
영국 역외 제도(Offshore islands)	205.0	10.2
룩셈부르크	121.3	6.1
프랑스	100.9	5.0
일본	92.0	4.6
벨기에	88.8	4.4

12) EY (Ernst and Young), 「attractiveness survey of foreign investors' investments in the UK」 2022., p. 1

〈표 1-Ⅱ-6〉의 계속

(단위: 10억파운드)

구분	10억파운드	총계(%)
스위스	74.4	3.7
캐나다	42.4	2.1
스페인	41.3	2.1
EU	<b>685.1</b>	<b>34.2</b>
비EU	<b>1,317.3</b>	<b>65.8</b>

자료: House of Commons Library,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23. 6., p. 10

- 2021년 영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은 미국이며 약 490억파운드로 전체 FDI 총액의 79.4%인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미국 다음으로 영국 역외 제도, 핀란드, 아일랜드, 홍콩, 호주, 캐나다 등의 순서임
  - 2021년 영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sup>13)</sup>

〈표 1-Ⅱ-7〉 2021년 대(對) 영국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10억파운드)

구분	10억파운드	총계(%)
<b>전체</b>	<b>61.7</b>	<b>100.0</b>
미국	49.0	79.4
영국 역외 제도(Offshore islands)	13.1	21.2
핀란드	6.0	9.6
아일랜드	4.5	7.2
홍콩	3.7	5.9
호주	3.2	5.2
캐나다	3.1	5.1
남아공	2.4	3.9
스위스	2.1	3.4
인도	2.0	3.2

자료: House of Commons Library,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23. 6., p. 19

13) House of Commons Library,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23. 6., p. 20

###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1. 한-영국 수출입 동향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영국의 총 교역규모는 약 121억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수출은 약 57억달러, 수입은 약 63억달러임
- 2022년 우리나라 총 교역액(약 1조 4천억달러)의 약 0.86%를 차지하고 있음<sup>14)</sup>
  - 2021년 대비 2022년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수출은 31.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0.6%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수출은 지속해서 감소하다가(2018~2019) 2021년 30% 이상 증가함
  - 2021년 한-영 FTA 발효 이후,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 간 교역은 약 1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함
- 대(對) 영국 무역수지는 코로나19 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에 흑자 전환했으며 2022년에는 5억달러 수준을 유지함

〈표 1-Ⅲ-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6,358	-21.7	5,514	-13.3	4,467	-19.0	5,962	33.5	6,340	31.7
수입	6,809	7.8	4,168	-38.8	4,370	4.8	5,809	32.9	5,775	-0.6

14)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11. 22.

〈표 1-Ⅲ-1〉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교역 규모	13,168	-9	9,683	-26	8,837	-9	11,771	33	12,116	3
무역 수지	-450	-125	1,345	-3.99	97	-0.93	152	0.57	565	2.71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23. 11. 22.

- 2022년 기준 영국은 우리나라의 제20위 수출국이자, 제27위 수입국임<sup>15)</sup>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10대 수출 품목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스마트폰, 승용차, 백금, 항공기부품 등임
  - 특히 전기차는 전년 대비 수출이 57% 증가하여 내연기관차를 추월함
    - 2022년 5대 수출품목(금액, 증가율)은 전기차(10억달러, 57%), 기타자동차(8억달러, 15%), 무선 전화기(5억달러, 37%), 승용차(4억달러, 112%), 백금(2억달러, 126%) 등임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10대 수입 품목은 원유, 승용차, 의약품, 백금, 주류(위스키) 등임
  - 승용차, 자동차부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계측기, 집적회로 반도체는 전년 대비 모두 수입이 감소하였음

〈표 1-Ⅲ-2〉 2022년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품목명	수입액
1	전기자동차	1,046	원유	1,024
2	기타 자동차 (하이브리드)	767 (766)	승용차	524

15)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11. 22.

〈표 1-Ⅲ-2〉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품목명	수입액
3	무선전화기	509	의약품	401
4	승용차	393	백금	387
5	백금	292	주류	236
6	항공기부품	237	원동기	152
7	건설중장비	225	계측기	134
8	자동차부품	176	항공기부품	124
9	제트유 및 등유	165	그림	111
10	아연도강판	163	밸브	105

주: MTI 4단위<sup>16)</sup>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l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11. 22.

## 2. 한-영 자유무역협정

### 가. 협상 추진의 배경

- 2019년 10월, 한-영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영국이 EU를 정식으로 탈퇴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발효됨
  -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와 영국은 양자 통상관계 수립을 위한 한-영 무역작업반을 발족하였으며, 이후 7차례의 협상을 걸쳐 2019년 8월 22일 양국은 한-영 FTA에 정식으로 서명함
  -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는 단행되었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EU 간 미래 협상 관계를 시행하기 위한 전환기를 가졌고, 이 시기까지는 그대로 한-EU FTA가 적용되었음

16)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단위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 집행 및 경제 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를 의미하며,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對) EU 10대 수출입 품목' 자료의 단위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18 제1편 개관

- 한-영 FTA는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 인하 시작 시점을 한-EU FTA 발효 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함
  -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 양국 간 교역에 한-EU FTA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하기로 합의함
  
- 향후 한-영 FTA 개선 협상이 이뤄질 계획이며 협상에서 우리나라 측은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sup>17)</sup>
  - 한-영 FTA 개선 협상은 2021년 협정이 발효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만에 이뤄지며, FTA 개선 협상에서 한국 측은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세 가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기차 등의 수출이 쉬워지도록 산업 현실에 맞게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고속철도 등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도 논의함
    - 그 외 디지털 통상 활성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 현재 한영 FTA에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등 전자상거래 규범 관련 2개 조항만 있는 상태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핀테크·인공지능(AI) 기업 등으로 디지털 통상을 넓히고, 종이 없는 무역 등을 안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됨
  
- 영국 DBT(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는 향후 FTA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거래 증진을 위한 전략적 사례와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잠재적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sup>18)</sup>
  - 보고서는 상품, 서비스, 시장 접근, 관세와 무역원활화, 원산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영국과 한국의 무역협정 강화를 위한 협상 목표, 영국과 한국 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협의에 대한 답변, 협의가 영국의 협상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한 내용과 영국과 한국 간 무역협정의 잠재적 장기적 영향에 대한 초기 평가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17) 산업통상자원부 뉴스, [https://www.motie.go.kr/motie/ne/motienewse/Motienews/bbs/bbsView.do?bbs\\_cd\\_n=2&bbs\\_seq\\_n=155118518](https://www.motie.go.kr/motie/ne/motienewse/Motienews/bbs/bbsView.do?bbs_cd_n=2&bbs_seq_n=155118518), 검색일자: 2023. 11. 21.

18) 영국 DBT, 『UK-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Strategic Approach』, 2023. 11. 21.

〈표 1-III-3〉 한-영 FTA 일지

일자	내용
2022. 2. 7.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런던)
2019. 10. 28.	한-영 FTA 국회 본회의 통과
2019. 8. 22.	한-영 FTA 정식 서명(런던)
2019. 6. 10.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선언(서울)
2019. 5. 29 ~ 30.	제7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9. 5. 15.	제6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서울)
2019. 5. 3.	한-영 무역작업반 회기간 협의 개최(런던)
2019. 4. 1 ~ 2.	제5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9. 2. 19 ~ 20.	한-영 무역작업반 회기간 협의 개최(서울)
2019. 1. 30.	제4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8. 11. 21.	한-영 FTA 공청회 개최(서울)
2018. 9. 20.	제3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서울)
2017. 12. 12 ~ 13.	제 2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런던)
2017. 2. 24.	제1차 한-영 무역작업반 개최(서울)
2016. 12.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계기 양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

자료: FTA 포털, <https://www.fta.go.kr/m/situation/lov3/uk/2/>, 검색일자: 2023. 11. 15.

### 나. 협정문 내용

- 한-영 FTA 협정문은 서문, 본문 및 부속서(annex),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총 15장임
- FTA 협정문의 장은 크게 총칙, 상품무역, 투자 및 서비스, 지식재산권, 행정 및 조직규정 그리고 그 밖의 규정으로 구성됨
  - 총칙은 목적 및 일반정의, 분쟁해결,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임

## 20 제1편 개관

- 상품관련 장은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과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무역구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관세 및 무역원활화에 해당함
  - 서비스투자 관련 장은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지급 및 자본이동, 정부조달에 해당함
  - 규범·협력에 관한 장은 지식재산, 경쟁, 투명성,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당함
- 부속서는 21개로 구성됨
-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임
- 의정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로 구성됨

〈표 1-III-4〉 한-영 FTA 협정문 구성

장	각 장의 제목
제1장	목적·일반 정의 및 상품협정문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무역구제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제10장	지식재산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4장	분쟁해결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 규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uk/2/>, 검색일자: 2023. 11. 22.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에도 한-영 양국 간 교역에 한-EU FTA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하기로 합의함<sup>19)</sup>
- 한-영 FTA는 한-EU FTA 관세양허 수준을 유지하며 한-영 FTA의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발효 연차와 무관하게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 시점은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함<sup>20)</sup>
- 2023년 11월은 이행 13년 차에 해당하며 한-영 FTA 관세인하 스케줄은 다음과 같음

19) 관계부서 합동, 『한·영국 FTA 상세설명자료』, 2021. 2., p. 9

20) 관계부서 합동, 『한·영국 FTA 상세설명자료』, 2021. 2.

## 22 제1편 개관

- 1년차: 2011. 7. 1. ~ 2012. 6. 30.
- 2년차: 2012. 7. 1. ~ 2013. 6. 30.
- 3년차: 2013. 7. 1. ~ 2014. 6. 30.
- 4년차: 2014. 7. 1. ~ 2015. 6. 30.
- 5년차: 2015. 7. 1. ~ 2016. 6. 30.
- 6년차: 2016. 7. 1. ~ 2017. 6. 30.
- 7년차: 2017. 7. 1. ~ 2018. 6. 30.
- 8년차: 2018. 7. 1. ~ 2019. 6. 30.
- 9년차: 2019. 7. 1. ~ 2020. 6. 30.
- 10년차: 2020. 7. 1. ~ 2021. 6. 30.
- 11년차: 2021. 7. 1. ~ 2022. 6. 30.
- 12년차: 2022. 7. 1. ~ 2023. 6. 30.
- 13년차: 2023. 7. 1. ~ 2024. 6. 30.
- 20년차: 2030. 7. 1. ~ 2031. 6. 30.

□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체품목의 94.6%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영 FTA 발효 즉시 철폐되며, 영국으로 수출의 경우 쌀을 제외한(39개 세번) 전체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함<sup>21)</sup>

○ 당초 한-EU FTA에서 상품양허는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음<sup>22)</sup>

- 수입액을 기준으로 EU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음

---

21) 한-EU FTA 양허와 동일

22)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7., p. 2

〈표 1-III-5〉 한-영 FTA 양국 상품양허

(단위: 개, %)

양허 유형	한국 양허		영국 양허	
	품목 수 <sup>1)</sup>	비중	품목 수 <sup>1)</sup>	비중
즉시 철폐 <sup>2)</sup> (한-영 FTA 양허표 상 즉시 ~ 7년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	10,649	94.6	9,803	99.6
10년 철폐	397	3.5	-	-
10년 초과	157	1.4	-	-
계절관세	2	0.0	-	-
양허제외/현행관세	56	0.5	39	0.4
총합계	11,261	100.0	9,842	100.0

주: 1.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11. 7. 1로 규정  
 1) HS 2006 기준  
 2) 2011년 7월 1일부터 기산되어 한-영 FTA 발효시점('19. 11. 1)에 즉시 철폐되는 품목으로,  
 한-영 FTA 양허표 상 '즉시 철폐 ~ 7년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  
 자료: 관계부서합동, 『한-영국, FTA 상세설명자료』 2021. 2., p. 10

- 한-영 FTA 발효 즉시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한-EU FTA와 동일하게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유지함
  - 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 가능  
 하여 양국 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함

〈표 1-III-6〉 공산품 양허 주요품목

(단위: 관세율 %, HS 2006 기준)

양허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즉시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자동차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선박용부품(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섬유기계(5~8), 컴퓨터부품(5~8), 항공기부품(3~8), 계측기(8), 기타정밀화학제품(5~8)	승용차(10), 화물자동차(22), 하이브리드카(10), 타이어(2.5~4.5), 자동차부품(4.5), 스웨터(12), 기타신발(16.8), 순모직물(8), 편직물(8), 폴리에스테르직물(8), 칼라TV(14), 라디오(9~12),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무선통신기기부품(22)

자료: 관계부서합동, 『한-영국, FTA 상세설명자료』 2021. 2., p. 11

- 영국 측은 한-영 FTA 발효 즉시,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현행 관세 유지, 계절관세, 농산물 셰이프가드, 장기관세 철폐 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함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 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을 도입함

〈표 1-III-7〉 우리농산물 세부 양허 결과

양허유형	품목수(개)	비중(%)	주요품목
양허제외	16	1.1	쌀
현행관세	37	2.6	감귤, 고추, 마늘, 양파(신선, 냉장, 건조), 감자(신선, 냉장), 흑설탕, 대두, 보리(겉보리, 쌀보리), 인삼(미삼, 본삼, 수삼, 잡삼), 전·탈지 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2	0.1	오렌지, 포도
15+TRQ	2	0.1	보리(맥주맥, 맥아)
12+TRQ	4	0.3	보조사료
20	2	0.1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7	0.5	참기름, 참깨, 땅콩, 녹차, 생강
16	1	0.1	설탕(백설탕)
15	94	6.5	육우, 젓소, 쇠고기, 계란, 우유, 표고버섯, 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주정, 메밀, 전분(감자, 고구마, 매니옥, 옥수수 등), 사료용 근채류, 녹두, 녹용, 녹각, 대추, 밤, 잣, 호도(미탈각), 키위, 인삼류(홍삼, 홍삼엑스), 혼합조미료, 치즈 등
13	27	1.9	닭고기(냉동가슴, 냉동날개), 오리고기, 난황, 고구마, 옥수수(팝콘용), 스위트콘(건조), 대추(냉동) 등
12	18	1.2	고사리, 들기름, 송이버섯(냉동, 건조), 양파(냉동), 멜론, 수박, 혼합주스(포도), 변성전분 등

〈표 1-III-7〉의 계속

양허유형	품목수(개)	비중(%)	주요품목
10	286	19.7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냉장 삼겹살·목살·갈비), 양고기, 혼합분유, 발효유, 마요네즈, 누룩, 잎담배, 감, 강낭콩, 수수(종자용), 쌀 배아, 양배추,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당근, 무(신선, 냉장), 들깨,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매실, 과일주스(딸기, 복숭아 등), 메주, 춘장, 인조꿀, 레몬, 로얄제리, 버터, 조제분유, 유장(식용) 등

자료: 관계부서합동, 『한-영 FTA상세설명자료』 2021. 2., p. 14

- 한-영 FTA 발효 즉시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우리 측은 주요 민감품목(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민어 등)에 대해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 유지 등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함
- 한-영 FTA는 동일한 원산지 증명 방식을 채택함
  -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Origin Declaration)제도를 채택함
- 한-영 FTA 원산지 판정 시 EU산 원재료도 발효일로부터 3년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함
- EU를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 된 것으로 인정함
- 협정문 상 무역기술장벽(TBT) 기술규정 제·개정 시의 의무를 통해 WTO TBT 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
  -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내(혹은 회원국 내) 이해관계자(업계, 단체, 개인 등)는 물론 상대국 이해당사자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 규정(한-영 FTA 협정문 제4.4조 제2항)
  - 양국의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 입수 및 의견 제안이 가능(비공개 과정은 제외)

26 제1편 개관

-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 및 보호하는 것으로 합의함
- 한-EU FTA에서는 한국 및 EU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한-EU FTA 협정문 제10.18조 제3항 및 제4항, 부속서 10-가, 나),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한-영 FTA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함

## IV.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1. 무역 관련 협정 개요

- 브렉시트 이전 영국은 EU의 연합국으로 무역 관련 협정 또한 EU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EU를 탈퇴한 후 영국의 양자 통상관계는 EU의 FTA를 승계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둬<sup>23)</sup>
  
- 영국은 EU의 FTA 대상국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여 2023년 11월 기준, 70개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sup>24)</sup>
  - 최근 발효된 무역협정은 다음과 같음
    - 영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 영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
    - 일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자유무역협정
  - 양국이 FTA에 서명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무역협정의 경우 서명 후 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 시행법안이 통과된 후에 발효할 수 있음
    - 영국은 마다가스카르(2021년 11월 4일) 및 코모로(2022년 4월 12일)와 동아프리카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ESA)와의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협정을 체결함

23) 강유덕,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제3국과의 FTA 체결을 중심으로」, 2020, p. 58

24)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k-trade-agreements-in-effect>, 검색일자: 2023. 11. 17.

〈표 1-Ⅳ-1〉 영국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협정국	진행	2022년 영-협정국 교역액 (백만파운드)
Albania	알바니아	발효	293
Andean countries	콜롬비아	발효	5,815(안데안 국가 총금액)
Andean countries	에콰도르	발효	
Andean countries	페루	발효	
Australia	호주	발효	17,067
Cameroon	카메룬	발효	745
Canada	캐나다	발효	26,309
CARIFORUM trade bloc	앤티가 바부다	진행중	5,108(CARIFORUM 총금액)
CARIFORUM trade bloc	바하마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바베이도스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벨리즈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도미니카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도미니카공화국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그레나다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가이아나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자메이카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세인트키츠 네비스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세인트루시아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수리남	진행중	
CARIFORUM trade bloc	트리니다드토바고	진행중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발효	2,624(중앙아메리카 총금액)
Central America	엘살바도르	발효	
Central America	과테말라	발효	
Central America	온두라스	발효	
Central America	니카라과	발효	
Central America	파나마	발효	
Chile	칠레	발효	1,881
Côte d'Ivoire	코트디부아르	발효	539
Eastern and Southern Africa(ESA) trade bloc	모리셔스	발효	1,922 (total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trade bloc)

〈표 1-Ⅳ-1〉의 계속

협정명	협정국	진행	2022년 영-협정국 교역액 (백만파운드)
Eastern and Southern Africa(ESA) trade bloc	세이셸	발효	1,922 (total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trade bloc)
Eastern and Southern Africa(ESA) trade bloc	짐바브웨	발효	1,922 (total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trade bloc)
Egypt	이집트	발효	4,896
Faroe Islands	페로 제도	발효	1,923
Georgia	조지아	발효	457
Ghana	가나	진행중	1,807
Iceland and Norway	아이슬란드	진행중	56,325 (total for Iceland and Norway)
Iceland and Norway	노르웨이	진행중	56,325 (total for Iceland and Norway)
Israel	이스라엘	발효	6,881
Japan	일본	발효	27,703
Jordan	요르단	발효	968
Kenya (2)	케냐	발효	1,364
Kosovo	코소보	발효	13
Lebanon	레바논	발효	771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발효	225
Mexico	멕시코	발효	5,868
Moldova	몰도바	진행중	1,480
Morocco	모로코	진행중	3,288
New Zealand	뉴질랜드	발효	2,734
North Macedonia	북마케도니아	진행중	2,768
Pacific states	피지	진행중	286 (total for Pacific States)
Pacific states	파푸아뉴기니	진행중	
Pacific states	사모아	진행중	
Pacific states	솔로몬제도	진행중	

〈표 1-Ⅳ-1〉의 계속

협정명	협정국	진행	2022년 영-협정국 교역액 (백만파운드)
Palestinian Authority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효	69
Serbia	세르비아	발효	904
Singapore	싱가포르	발효	20,135
South Korea	대한민국	발효	18,349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and Mozambique (SACUM) trade bloc	보츠와나	발효	12,539 (total for SACUM trade bloc)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and Mozambique (SACUM) trade bloc	에스와티니	발효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and Mozambique (SACUM) trade bloc	레소토	발효	12,539 (total for SACUM trade bloc)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and Mozambique (SACUM) trade bloc	모잠비크	발효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and Mozambique (SACUM) trade bloc	나미비아	발효	12,539 (total for SACUM trade bloc)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and Mozambique (SACUM) trade bloc	남아프리카	발효	12,539 (total for SACUM trade bloc)
Switzerland	스위스	발효	53,551
Tunisia	튀니지	발효	678
Turkey	튀르키예	진행중	25,737
Ukraine	우크라이나	발효	1,408
Vietnam	베트남	진행중	7,049

## 2. 브렉시트 체결일지

-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는 2020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발표됨
  - 이는 영국이 EU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 지 47년 만이자,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된 지 3년여 만의 일임<sup>25)</sup>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는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을 두고 영국의 EU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미래관계협상을 진행함
    - 영-EU 간 미래관계 협상은 4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상 내용은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사회보장 공조, 인력이동, 교통, 에너지 등임

〈표 1-Ⅳ-2〉 브렉시트 체결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2017년 3월	영국, EU에 탈퇴의향서 제출
2018년 11월	영-EU 간 탈퇴협정 합의
2019년 1월 ~ 2020년 1월	영국 및 EU 의회의 합의안 비준 ('19. 10월 새 합의안 타결) (영 의회의 4차례 합의안 비준 거부 및 영국 조기총선 실시)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자료: 코트라, 「브렉시트 이후 EU 변화 및 대응방향」, 2020. 7., p. 3

25) 코트라, 「브렉시트 이후 EU 변화 및 대응방향」, 2020. 7., p. 3.

## 제2편 통관제도

###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 1. 통관행정 조직

- 영국의 관세행정조직의 정식명칭은 조세·관세청(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 HMRC)<sup>26)</sup>으로 2005년 발효된 조세 및 관세법(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 CRCA)에 기반하여 구성된 자치적 행정기관임
- HMRC는 2005년 4월 18일 자로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이 통합되어 탄생하였으며, 상위기관은 재무부(HM Treasury)이고 재무부를 통해 의회에 활동을 보고함
  - 2004년 재무부 장관은 세금 정책 및 행정 관련 기관(HMRC, 내국세청, HM 재무부)의 평론을 발표하였으며, 정부 세금 정책 최적화를 위해 세금 행정 개선, 정보 활용, 세금 정책 기획에 대한 조세부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구성을 위한 노력임

---

26)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organisation-chart/hmrc-organisation-chart-2#executive-committee>, 검색일자: 2023. 11. 8.

- HMRC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적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지원금을 지급함
  - 세금 징수를 올바르게 하며 변칙적인 규칙 및 규칙의 위반을 어렵게 만들
  - 공평한 대우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를 유지하고 사회를 위해로부터 보호함
  - HMRC의 업무환경을 조성
  - 탄력적이고 민첩한 세무 행정 시스템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정부의 경제적 목표를 지원함
  
- HMRC의 소관 업무는 재정적 지원 및 통계 정보 수집, 세금 징수 등이 있음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보험료세, 인지세, 토지 및 석유 수입세(Land and Petroleum Revenue Taxes) 징수
  -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징수
  - 기후변화세,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세와 쓰레기 매립세(climate change and aggregates levy and landfill tax) 징수
  -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징수
  - 무역 통계 수집
  - 국민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업무수행
  - 세금공제(Tax Credit)를 통한 재정 지원 제공
  - 육아 수당(Child Benefit) 집행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enforcemen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 학자금 대출 상환금 회수(recovery of Student Loan repayments)
  
- HMRC의 범죄 관련 업무 중 국경 보호 직무는 2008년 4월 1일 자로 Home Office 산하 영국 국경국(UK Border Agency)으로 이관됨<sup>27)</sup>
  - 영국 관세청은 강력 범죄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법 집행기관으로 중대한 조직적 국고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책임을 지며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의회에 해당 내용을

27)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p. 211

보고함

- 기소 기능은 신설된 세입·관세 검찰청(Revenue and Customs Prosecution Office)으로, 특별 조사 기능은 신설된 강력조직범죄청(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으로 이관되었음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부서의 주요 집행 및 결정 권한을 가지며 개별 위원회 구성원은 HMRC 비즈니스 및 기업 서비스 기능의 각 라인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HMRC의 모든 업무를 감독하고 보장하며 전략을 설정하고 전달함
  - 또한 즉각적인 목표와 미래 목표 측면에서 부서의 성과를 감독함
    - 목표 대비 HMRC 성과를 분석하고 고객 서비스와 가격 대비 가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함
  - 집행위원회는 4개 소위원회(전략위원회, 변화, 투자 및 디자인위원회, 세금 디지털화 행정감독위원회, 전문표준위원회)의 지원을 받음
  
- HMRC의 상위기관인 재무부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 재정과 관련한 모든 부문을 총괄·관리하는 영국 주요 내각부처 중 하나임<sup>28)</sup>
  
- 국가운영에 있어 예산·세금 등 정부의 공공지출과 관련한 모든 부문을 통제 및 유지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sup>29)</sup>
  - 주요업무로는 공공지출, 재정서비스 정책, 조세제도 감독, 인프라 투자 촉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등이 있음
  - 공공지출의 경우 부처의 지출,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연간운용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과 복지정책, 자본투자 등에 대한 정책을 담당
  - 은행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규정, 재정안정 및 영국 금융 특별구역 경쟁력 보장 등 재정서비스 정책을 담당

28)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2020. 3., p. 84

29) 상동

- 직접세, 간접세, 영업세, 재산세, 대인세, 법인세 등 영국 내 모든 조세운영을 감독
  - 공공부문 인프라 프로젝트의 제공 및 개인 투자 촉진
  -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 재무부에 속한 주요 인사로는 국가재정위원장(총리), 장관, 비서실장, 재정비서 실장 등이 있음<sup>30)</sup>
- 국가재정위원장 또는 제1재무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은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 관직이나 총리가 겸임하여 실질적인 업무는 담당하지 않음
  - 재무부의 실질적인 업무는 재무부 장관 또는 제2재무경(Chancellor of the Exchequer, Second Lord of the Treasury)이 담당함
- 재무부는 전략적 조세정책과 정책개발을 주도하고, HMRC는 정책의 유지와 시행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위해 정책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sup>31)</sup>
- 추심, 규정 준수 및 집행 활동을 통해 국고로의 자금 흐름을 보호할 책임을 짐
  - 영국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계획
  - 합법적인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국경에서 영국의 재정, 경제, 사회 및 물리적 보안을 확립하고 영국 무역 통계를 수집함
  - 법정 병가 수당, 법정 출산 수당 등 법정 지급금을 관리함
  - 세금 공제 지급을 통해 가족과 개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 및 아동 수당을 관리함
  - 가장 간단하고 고객 중심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세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 은행 서비스를 관리함

30)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2020. 3., p. 84

31) HMRC,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about>, 검색 일자: 2023. 11. 8.



[그림 2-1-1]의 계속

Business, Assets and Interational 비즈니스 자산 및 국제부			HR Director for Chief People Officer (CPO), and Chief Digital and Information Officer (CDO) 참고: 입사 )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Strategic Policy into Delivery 전략적 정책	Individuals and Small Business Compliance 개인 및 소기업 규정 준수	Strategy and Change 전략 및 변화(1)	Borders and Trade Programme and Operational 국경 및 무역 프로그램과 운영 전략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Customer Insight and Design 고객인사이트 및 디자인	Counter Avoidance 회피	Strategy and Change 전략 및 변화(2)	Compliance Strategy and Operational 이행전략/운영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Policy Driven Change 정책중심 변화	Compliance Strategy Delivery 이행전략/운영	Operational 운영 우수성	Compliance Strategy Delivery 이행전략/운영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Indirect Tax (Interim) 간접세	Compliance Operations 이행운영/감독	Finance Planning and Performance 계획/기회/성과	Finance and Operations 이행운영/감독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Tax Administration 세부행정	Finance and Operations 이행운영/감독	Finance and Operations 이행운영/감독	Finance and Operations 이행운영/감독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Intermediaries 중개	Transformation 개혁	Finance and Operations 이행운영/감독	Transformation 개혁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HMRC Strategies HMRC 전략	Race Delivery Director 인종차별전담 감독	Finance and Operations 이행운영/감독	Race Delivery Director 인종차별전담 감독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Human Resources 인력자원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Finance 재정				HMRC Shared Services HMRC 공유서비스	Security Officer 보안관	Joint Chief Strategy and Transformation Officer - Strategy, Trans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Data and Analytics, (SRO) Reporting Requirements Programme 최고: 운영, 집행, 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 프로그램		Portfolio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	Non-Executive committee (정규회 없는 과장)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organisation-chart/hmrc-organisation-chart-2#transformation>, 검색일자: 2023. 11. 9. 및 한국관세무역 개발원, 『외국 관세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2017. 3., p. 212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2. 관계 법령

### 가. 관세 관련 법령

- 영국이 EU에 속해 있는 동안 1972년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ECA)을 통해 EU가 영국을 대신하여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sup>32)</sup>
- ECA는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영국은 기존 무역 협정이 영국 법률 내에서 완전히 이행될 수 있음을 의미함<sup>33)</sup>
- 2018년 9월 13일 왕실의 승인을 받은 8년 「조세(국경간 무역)법」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에 따라 영국은 독립적인 관세 제도를 수립하고자 하였음<sup>34)</sup>
  - 해당 법안은 총 6장, 58조, 하위의 8가지의 부칙(Schedule)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해당 법안을 통해 브렉시트 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자 하였음
  - 해당 법안에는 무역 관련 세금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 해당 법안을 통해 새로운 영국 관세제도를 설정하고, 상품(EU에서 수입되는 상품 포함)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율을 설정 및 변경하고, 특정 상황에서 수입 시 관세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음
  - 납부해야 할 관세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 및 세금 관련 정보

32)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k-trade-policy-a-guide-to-trade-legislation/preparing-for-a-uk-trade-policy-a-guide-to-trade-legislation>, 검색일자: 2023. 11. 13.

33) 상동

34) 상동

요청, 수집, 저장 및 공유 및 새로운 관세제도를 수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특히 해당 법에는 관세율과 직접 관련된 EU 법률의 기존 권한 및 제도를 대체하려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sup>35)</sup>
  - 특정 상황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국 무역 구제 프레임워크
  -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지급하는 관세를 지속해서 감소시키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특혜 제도 정비
  - 영국 정부와 다른 영토 또는 국가의 정부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국제법에 따라 승인된 경우)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 이 밖에 「재정법(Finance act)」에서 관세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일부 세율의 변동 사항을,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이하 「관세 및 소비세법」)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 대상, 내용, 환급, 관세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 행정적 구제, 수출입 금지 물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2-11-1〉 조세(국경간 무역)법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체계

조세(국경간 무역)법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제1장 수입관세 (PART 1 Import duty)
부과되는 세금 (The charge to tax)
수입관세에 대한 채무 발생 (Incurring of liability to import duty)
납세의무자 (Person liable to import duty)
수입관세: 관세, 양허, 세이프가드 등 (Amount of import duty: the customs tariff, preferences, safeguarding etc)
수입관세: 보충 (Amount of import duty: supplementary)
감면 (Reliefs)
행정 (Administration etc)

35)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k-trade-policy-a-guide-to-trade-legislation/preparing-for-a-uk-trade-policy-a-guide-to-trade-legislation>, 검색일자: 2023. 11. 13.

〈표 2-11-1〉의 계속

조세(국경간 무역)법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행정관련 지원 (Supplementary)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영국관세연방 (UK's customs union)
기타규정 (Regulations etc)
용어 해설 (Interpretation etc)
제2장 수출관세 (PART 2 Export duty)
제3장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제4장 소비세 (PART 4 Excise duties)
제5장 EU 탈퇴와 관련된 기타 규정 (PART 5 Other provision connected with withdrawal from EU)
제6장 최종 (PART 6 Final provisions)
부칙 SCHEDULES
부칙 1. 수입신고 (SCHEDULE 1 Customs declarations)
부칙 2. 특별세관절차 (SCHEDULE 2 Special Customs procedures)
부칙 3. 개도국 (SCHEDULE 3 Eligible developing countries)
부칙 4. 덤핑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영국 산업의 피해 (SCHEDULE 4 Dumping of goods or foreign subsidies causing injury to UK industry)
부칙 5. UK 생산자에 피해를 가하는 수입의 증가 (SCHEDULE 5. Increase in imports causing serious injury to UK producers)
부칙 5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영국 생산자들에게 발행한 피해 (Schedule 5A Increase in imports as a result of free trade agreement causing serious injury to UK producers)
부칙 6. 수입관세: 책임고지, 납부 등 (SCHEDULE 6 Import duty: notification of liability, payment etc)
부칙 7. 수입관세: 증대한 개정 (SCHEDULE 7 Import duty: consequential amendments)
부칙 8.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된 수정안들 (SCHEDULE 8 VAT amendments connected with withdrawal from EU)
부칙 9. EU 탈퇴와 관련된 소비세 개정안 (SCHEDULE 9 Excise duty amendments connected with withdrawal from EU)

자료: 영국법령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22/contents>, 검색일자: 2023. 11. 13.

## 나. 관세 관련 규정

- 영국의 관세 관련 규정은 상위 법(Acts)을 비롯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Statutory Instruments)으로써 위임명령, 집행명령으로서의 시행규칙(Regulations, Rules, Orders, Directions) 등으로 분류됨<sup>36)</sup>
- 관세관련 법 및 규정은 2018년 브렉시트 이후 지속해서 개정되어 오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는 HMRC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ustoms-부가가치세-and-excise-uk-transition-legislation-from-1-january-2021#full-publication-update-history>)에서 확인이 필요함

〈표 2-11-2〉 관세 관련 명령 및 규칙

명령(Statutory Instruments) <sup>1)</sup>		세관통지(법적효력)
세관	세율	
The Customs (Aerodromes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Northern Ireland) (EU Exit) Regulations 2020
The Customs (Safety and Security Procedures) Regulations	The Trade Preference Schem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Regulations	Notice to be made under Commission Implementation Regulation (EU) 2015/2447 of 24 November 2015
The Customs Safety and Security Procedure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Origin of Chargeable Goods: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Origin of Chargeable Goods: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23

36) 세계 법제 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CTS\\_SEQ=37983&AST\\_SEQ=308&ETC=](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CTS_SEQ=37983&AST_SEQ=308&ETC=), 검색일자: 2023. 11. 14.

〈표 2-11-2〉의 계속

명령(Statutory Instruments) <sup>1)</sup>		세관통지(법적효력)
세관	세율	
The Mutual Assistance on Customs and Agricultural Matters (Revocation)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ontrol of the Movement of Goods Regulations 1984
The Customs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New Zealand) (Amendmen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Bulk Customs Declaration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2020
The Customs (Transitional Arrangement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and Tariff Quotas) (Australia) (Amendmen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ash Control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9
The Customs (Record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Quotas) (EU Exit) (Amendment) Regulations	Special Directions made under section 30 of the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The Customs and Excise (Miscellaneous Provisions and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Amendment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Regulations	Notices under The Customs Transit Procedures (EU Exit) Regulations 2018
The Customs Safety and Security (Penalty)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Preferential Trade and Tariff Quotas) (Ukraine) (Amendmen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The Customs Safety and Security (Penalty)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Preferential Trade and Tariff Quotas) (EU Exit) (Amendmen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s32A of the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The Customs (Import Duty)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Miscellaneous Provision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Origin of Chargeable Goods: Trade Preference Scheme)(EU Exit) Regulations 2020

〈표 2-11-2〉의 계속

명령(Statutory Instruments) <sup>1)</sup>		세관통지(법적효력)
세관	세율	
The Taxation (Cross-border Trade) (Miscellaneous Provision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Establishment and Suspension of Import Duty) (EU Exit) (Amendmen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Crown Dependencies Customs Union) (EU Exit) Regulations 2019
The Customs (Contravention of a Relevant Rule)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Establishment) (EU Exi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Reliefs from a Liability to Import Duty) (EU Exit) Regulations 2020
The Customs (Import Duty, Transit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The Trade Preference Scheme (EU Exi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Special Procedures and Outward Processing) (EU Exit) Regulations 2018
The Customs (Crown Dependencies Customs Union)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Import Duty Variation) (EU Exi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Export) (EU Exit) Regulations 2019
The Customs (Managed Transition Procedure)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Origin of Chargeable Goods: Trade Preference Scheme) (EU Exi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and Excise (Miscellaneous Provisions and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2019
The Customs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Suspension of Import Duty Rates) (EU Exit) Regulations	Notice made under the Customs (Transitional) (EU Exit) Regulations 2020
The Customs (Consequential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free Access for Goods from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EU Exit) Regulations	Notice to be made under the Customs Safety and Security Procedures (EU Exit) Regulations 2020
The Customs (Bulk Customs Declaration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Origin of Chargeable Goods) (EU Exit) Regulations	Notice to be made under the Customs Tarif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EU Exit) Regulations 2020

〈표 2-11-2〉의 계속

명령(Statutory Instruments) <sup>1)</sup>		세관통지(법적효력)
세관	세율	
The Statistics of Trade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Quotas) (EU Exit) Regulations	Notices made under the Customs (Import Duty) (EU Exit) Regulations 2018
The Wharves, Examination Stations and Temporary Storage Facilities (Approval Condition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Reliefs from a Liability to Import Duty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Notice made under the Customs (Records) (EU Exit) Regulations 2019
The Customs (Export)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ariff (Establishment) (EU Exit) Regulations 2020	Reference Document for The Customs (Northern Ireland) (EU Exit) Regulations 2020
The Wharves and Temporary Storage Facilities (Approval Condition and Transitional Provision) (EU Exit) Regulation		
The Customs (Contravention of a Relevant Rule)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Transit Procedures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Special Procedures and Outward Processing) (EU Exit) Regulations		
The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주: 1) 동일법이 연도별로 개정된 경우 2018년 이후 개정된 첫 규정만 기재하였음  
 자료: HMRC,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ustoms-부가가치세-and-excise-uk-transition-legislation-from-1-january-2021#full-publication-update-history>, 검색일자: 2023. 11. 14.

##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1. 과세요건

#### 가. 과세물건

- 관세의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의 일정한 요건을 의미함
- 과세물건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의미하며, 수입 시 세관에 제출되는 부과 대상 물품은 세관 신고를 통해 세관 절차에 대해 신고함으로써 확정됨<sup>37)</sup>
  - 물품의 자유 유통을 위한 반출신고
  - 특별 통관절차 신고(보관 절차, 환적 절차, 내부 가공 절차, 또는 승인된 사용 절차 또는 임시 절차)

#### 나.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격 또는 수량으로써 원칙적으로 납세신고시의 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됨<sup>38)</sup>
  - 대개 상품 관세 가치의 백분율로 계산되며 이러한 유형의 관세를 ‘증가세’라고 함<sup>39)</sup>

---

37)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8

38)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16

- 특정 수량에 대해 지급되는 관세를 종량세라고 함<sup>40)</sup>
- 관세액은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관세율은 품목별로, 수입하는 국가별로 달라짐
  - £135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입품에만 관세가 부과됨(£135 한도는 화물에 포함된 개별 품목의 가치가 아니라 수입된 화물의 총금액에 적용됨)
- 영국은 일반적으로 국제운임이나 적하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 + 관세) × 20%(대부분은 기본 세율인 20%)의 비율로 부과됨

#### 다.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세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 명의자를 의미함<sup>41)</sup>
  - 수입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물품과 관련하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영국 입국 시 물품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수입 관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그 밖에 세관신고서를 대신 작성 하는 자, 「조세(국경간 무역)법」 제21조(6)항에 따른 관세사, 특별 통관절차의 신고 책임자, 그리고 관세 관련 의무 위반에 연루된 자 모두 납세의무가 있음

#### 라. 과세환율

- 관세는 영국으로의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조세(국경간 무역)법」 제 3조에 따라 부과됨

---

39) HMRC, <https://www.gov.uk/guidance/prepare-to-work-out-the-customs-value-of-your-imported-goods#customs-duty>, 검색일자: 2023. 11. 13.

40)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16(4)

41)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6(1)~(3)

- 물품의 가치는 목적상 파운드화(£)로 계산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재화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된 금액이 영국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그 금액은 영국 파운드화로 환산되어야 함<sup>42)</sup>
- 환산은 HMRC 위원들이 고시한 내용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고시에는 환율에 대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함
  - 언제든지(수입이 발생한 시점보다 이전 시점을 포함) 적용 가능한 환율(또는 환율)을 참조하거나 특정 기간의 평균 환율을 참조하여 환산할 수 있어야 함
  -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거래 또는 기타 사건에 적용되는 통지에 따라 환율이 결정될 수 있음
  - 해당 통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특정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해당 환율을 조정하여 반올림 또는 내림할 수 있어야 함

##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가. 관세의 확정 방식

- 물품 신고 후 HMRC가 신고를 수리 시 수입관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liability to import duty is incurred at the time of the acceptance)<sup>43)</sup> 납세에 대한 책임은 HMRC의 고지를 받지 않을 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HMRC가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간주할 시 다음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sup>44)</sup>
  - 해당 금액

42)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18

43)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4(1)

44)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6. Article 1~3

-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 또는 그 전의 날짜
  - 통지는 HMRC가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음
- 수입관세 납부 의무 통지는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책임이 발생한 경우(범죄가 수입 관세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통지의 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됨<sup>45)</sup>
- 보관 절차, 환적 절차, 또는 내부 가공 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관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으나,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음<sup>46)</sup>
- 해당 세관 신고를 할 자격이 없는 경우, 납부 의무는 신고가(의도된) 이루어진 시점에 발생함
  -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관련자가 위반 하면 납부 의무는 처음 발생한 시점에 발생함
- 승인된 사용 절차 또는 임시 수입 절차를 위해 신고된 상품의 경우, 납부 의무는 HMRC가 신고를 수락한 시점에 발생하며, 해당 절차에 대한 신고 권한이 있는 경우,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sup>47)</sup>
- 권한이 없는 경우 정상 세율로 관세가 부과되며, 절차와 관련된 요건위반 시 이전 세액을 고려하여 정상 세율보다는 감액된 추가 세율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함
-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부 의무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sup>48)</sup>
- 수입관세 납부와 관련하여 단일 보증이 제공됐거나 지급 유예가 승인된 경우 수입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부 의무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음

45)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6 Article 4

46)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4(2)(3)

47)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4(4)

48) The Customs (Import Duty) (EU Exit) Regulations 2018 Article 43(1)~(3)

## 나. 세액의 정정

- 수정된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초로 수입 세액이 확정되면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함<sup>49)</sup>
  -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10일의 기간
  - 관련하여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HMRC 담당자가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책임자에게 통지되는 기간(다만,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연체가 발생할 시 납부해야 할 수입 관세에 연체 이자 시작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체 이자가 적용됨<sup>50)</sup>
  - 연체이자 개시일은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날 또는 수입관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되기 전날까지임
  - 개인이 물품과 관련된 관련 관세 의무 위반에 연루되어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부과할 책임이 있는 경우, 연체 이자 발생일은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필요에 따라 세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날로부터 시작됨

### 1) 과다 납부

-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세관 수출입 통관시스템(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CHIEF), Customs Declaration Service(CDS)을 사용하거나 양식 C285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sup>51)</sup>
- CDS용 양식 C285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실하지 않으면 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서비스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49) The Customs (Import Duty) (EU Exit) Regulations 2018 Article 43(4),(5)

50) The Customs (Import Duty) (EU Exit) Regulations 2018 Article 45(1)~(3)

51) HMRC, <https://www.gov.uk/guidance/how-to-apply-for-a-repayment-of-import-duty-and-부가가치세-if-youve-overpaid-c285>, 검색일자: 2023. 11. 9.

-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대리인, 관세사, 화물 운송업자,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함<sup>52)</sup>
- 과다 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음<sup>53)</sup>
  - 초과 지급의 경우 3년
  - 수입 거부 의 경우 1년
  - 세관 통관 무효화 시 3개월
- 과다 납부된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sup>54)</sup>
  - 양식 E2[영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접수된 수입허가 양식(CHIEF 클레임에 한함)]
  - 양식 C88(국제 무역에서 세관에 물품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세관 양식으로, CHIEF 클레임에 한함)
  - MRN(Movement Reference Number) (세관 신고 서비스 클레임용)
  - 수입품에 대한 상업 송장
  - 포장 목록
  - 운송 서류(항공 운송 청구서 또는 선하 증권)
  - HMRC에 납부한 수입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금액
  - HMRC에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
  - 연락처 및 주소 세부 정보

## 2) 과소 납부

- 형식 C2001을 사용하여 물품 수입 시 발생하는 과소지급액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요금 이 인상됨

---

52) HMRC, <https://www.gov.uk/guidance/how-to-apply-for-a-repayment-of-import-duty-and-부가가치세-if-youve-overpaid-c285>, 검색일자: 2023. 11. 9.

53) 상동

54) HMRC, <https://www.gov.uk/guidance/how-to-apply-for-a-repayment-of-import-duty-and-부가가치세-if-youve-overpaid-c285>, 검색일자: 2023. 11. 9.

- 수입신고 상의 납부 방법으로 연기된 부가가치세 회계(납부유형 'G'라고도 함)를 선택한 경우, 과소 납부된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 CHIEF를 사용한 경우 C2001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HMRC에 관세 미납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해 보고할 수 있음
    - 관세 절차 코드(Customs Procedure Code: CPC)에 기존의 CPC, 수정된 CPC, 변경된 경우 수정안의 세부 사항,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 등이 필요함
    - 또한 물품 코드에 품번, 박스번호, 수입번호, 수정 수입번호, 이미 납부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금액과 같은 과소 납부 내역(HMRC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금액, 기타 지급액, 기타 HMRC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C2001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음
  - CDS를 통해 수입 후 과소신고에 대해 신청 시 C2001CDS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절차 코드(Procedure Codes)에 기존 절차 코드 및 추가 절차 코드, 수정된 절차 코드 및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EORI(경제 사업자 등록 식별) 번호 등이 필요함
    - 또한 물품 코드에 품번, 데이터 요소 번호, 이동참조번호(movement reference number, MRN), 이미 납부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금액과 같은 과소 납부 내역, HMRC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금액, 기타 지급액, 기타 HMRC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이 필요함

###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수입물품 중 £135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상품의 수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비용, 보험, 운임 및 관세로 구성됨
  - £135 한도는 위탁물에 포함된 개별 품목의 가치가 아니라, 수입되는 총 위탁물의 가치를 의미함
-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외에도 주류, 담배, 도로 차량의 국내 판매와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에 소비세(excise duty) 또한 부과됨

#### 가. 부가가치세

-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가치는 통지 252(Notice 252)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과세가 적이며 다음의 내용을 포괄한 세액임<sup>55)</sup>
  - 부대 비용(incidental expenses), 영국 내 상품의 첫 번째 목적지까지 발생한 수수료, 포장, 운송 및 보험 비용 등
  - 영국으로 수입 시 지급해야 하는 관세 또는 부과금
  - 영국으로 수입 시 지급해야 하는 모든 소비세 또는 기타 비용(부가가치세 자체는 제외)
- 부가가치세를 위해 수입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부대 비용(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됨<sup>56)</sup>)
  - 통관 수수료, 부두 임대료, 입항비, 정박료, 처리, 적재 및 보관 비용

---

55) HMRC, <https://www.gov.uk/guidance/working-out-the-부가가치세-value-using-the-customs-value-of-the-imported-goods>, 검색일자: 2023. 11. 6.

56) 상동

-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대리인, 화물 운송업자 또는 운송업자와 같은 제3자에 의해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며, 수입자가 자체 운송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은 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음<sup>57)</sup>
- 부가가치세는 0%, 5%, 20%로 부과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20%가 부과되고 있음<sup>58)</sup>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011년 1월 4일 17.5%에서 20%로 인상되었음
- 일부 상품 및 서비스(예를 들어 어린이용 카시트 및 가정용 에너지)에 5%가 부과되고 있음<sup>59)</sup>
  - 안전벨트가 있는 아기 침대 어린이용 카시트, 부스터 시트 및 부스터 쿠션, 바퀴가 없는 틀이 있는 어린이용 안전 시트, 노인을 위한 이동 보조 기구, 금연 제품(니코틴 패치와 껌) 등등
- 대부분의 식료품과 아동복과 같은 비과세 물품들에 0%가 부과됨<sup>60)</sup>
  - 사이클 헬멧(CE 마크 획득),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오토바이 헬멧, 산업용 보호 부츠와 헬멧, 베이비웨어, 아동복과 신발, 책, 어린이 그림과 그림책, 지도 및 차트, 잡지, 신문, 프린트 또는 복사된 음악, 안내서, 전단지, 팜플릿, 자선 단체를 위한 광고 서비스, 시각장애인 또는 부분 시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비, 장애인용 장비, 시각장애인의 음성을 녹음하는 데 적합한 자기 테이프와 적응된 테이프를 만들고 재생하기 위한 장치 및 특정 저시력 보조 장치, 요실금 제품, 임산부 패드, 위생 보호 제품, 저시력 보조기구 등등

---

57) HMRC, <https://www.gov.uk/guidance/working-out-the-부가가치세-value-using-the-customs-value-of-the-imported-goods>, 검색일자: 2023. 11. 6.

58) HMRC, <https://www.gov.uk/부가가치세-rates>, 검색일자: 2023. 11. 6.

59) HMRC, <https://www.gov.uk/guidance/rates-of-부가가치세-on-different-goods-and-services>, 검색일자: 2023. 11. 6.

60) 상동

- 영국 부가가치세에 등록하지 않은 영국 무역업자인 경우에도 수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환급받을 수는 없으며, 지연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추가 신고 시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sup>61)</sup>
- £15 이하인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 저가 물품 면세(LVCR) 제도가 폐지되어 타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나. 소비세<sup>62)</sup>

- 영국 정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알코올 도수(ABV)를 기준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을 도입함<sup>63)</sup>
  -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던 기존의 주류 세율 시스템을 2023년 7월 31일부로 폐지하였음
  - 기존 세율 시스템은 주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방식을 적용하였음
    - 맥주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헥토리터(hL, 1hL=100L)당, 사과주와 와인은 제품의 헥토리터당, 증류주는 제품의 순수 알코올 1리터당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청구되었음
  - 이에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은 모든 주류 제품에 대해 순수 알코올 1리터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61) HMRC, <https://www.gov.uk/guidance/부가가치세-imports-acquisitions-and-purchases-from-abroad> 검색일자: 2023. 11. 6.

62) 더 자세한 소비세 품목과 내용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excite-duties-reliefs-drawbacks-and-allowances/uk-trade-tariff-excite-duties-reliefs-drawbacks-and-allowances#beer>에서 확인할 수 있음

63)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352&menu\\_dept2=35&menu\\_dept3=71](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352&menu_dept2=35&menu_dept3=71), 검색일자: 2023. 11. 6.

- 다음의 수입물품에 대해 소비세가 부과됨<sup>64)</sup>
  - 와인 및 제조와인, 맥주, 사이다와 페리, 주정, 저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수입 복합재, 담배 제품, 탄화수소 오일, 기후변화부담금, 바이오 연료
  
- 허가받은 와인 생산자가 영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한 와인(도수는 20°C 온도에서 알코올 비율을 참조하여 측정)은 다음의 제품을 포함함
  - 와인은 알코올 발효로 얻은 술 또는 신선한 포도의 필수품을 의미하며, 양주로 강화되거나 추출물로 별도의 맛을 내지 않아야 함
  - 메이드와인은(Made-wine 모든 물질의 알코올 발효로부터 얻은 모든 주류를 의미하지만, 와인, 맥주, 양주 또는 사이다를 포함하지 않음
  - 최소 5.5ABV(도수)에서 최대 22ABV까지 헥토리터당 최소 £288.10에서 최대 £396.72가 부과되고, 22% ABV를 초과하는 스틸 또는 스파클링 와인은 와인에 함유된 알코올 리터당 £28.74가 부과됨
  - 메이드와인(수입 과즙으로 만든 와인)의 경우 일반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과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함
  
- 연간 생산량 60,000 헥토리터 이상인 업체가 생산한 맥주는 1ABV 헥토리터당 £19.08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연간 생산량이 5,000 ~ 6,000헥토리터인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된 수입 맥주는 동일한 비율의 소비세가 부과됨
  - 5,000헥토리터 이하인 경우, 1ABV 헥토리터당 £9.54의 소비세가 부과됨
  - 도수가 높은(7.5ABV 초과) 맥주의 경우, 1ABV 헥토리터당 £5.69의 소비세가, 1.2ABV에서 2.8ABV의 맥주는 헥토리터당 £8.42의 소비세가 부과됨
  - 0.5ABV를 초과하고 1.2ABV를 초과하지 않는 맥아로 만든 저알코올 음료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64) 더 자세한 품목 및 내용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excise-duties-reliefs-drawbacks-and-allowances/uk-trade-tariff-excise-duties-reliefs-drawbacks-and-allowances#bee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사이다 및 페리의 경우 1.2% ABV 초과 8.5% ABV 미만 시 헥토리터당 £ 50.71에서 헥토리터당 £ 288.10 소비세가 부과됨
- 스피릿의 경우 1.2ABV에서 ABV 8%를 초과하지 않는 증류주 기반 음료를 포함하여 28.74°C의 온도에서 증류주 알코올 리터당 £20의 소비세가 부과됨
- 담배의 경우 담배 1,000개당 £294.72에 소매가의 16.5%를 더한 금액 또는 담배 1,000개당 £393.45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담배 393,45개비당 £1.000의 최소소비세가 적용됨
  - 여송연은 kg당 £367.61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중량은 시가의 총 중량으로 탈착식 필터 또는 마우스피스는 제외될 수 있음
  - 시가는 kg당 £351.03, 기타 담배 및 씹는 담배는 kg당 £161.62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난방용 담배는 kg당 £302.93가 부과됨
- 그 밖에 식초로 변환되거나 1.2ABV를 초과하지 않는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관세가 부과되는 알코올음료, 초콜릿 100kg에 알코올 8.5L를 초과하지 않는 식용 초콜릿 또는 식품 100kg에 알코올 5L를 초과하지 않는 식용 식품의 경우 소비세가 면제됨
  - 양조업자의 등록된 건물에서 제거되어 부패하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양조업자에게 반환된 맥주의 경우 소비세가 면제됨
  - 의료,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물품의 제조에만 사용되어 위원회에 입증되면 소비세가 면제됨
  - 창고에서 수입 또는 배송된 물품으로써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소비세가 면제됨
  - 세관장이 변성 알코올의 사용이 부적합하거나 해롭다고 판단하여 예술품 또는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세관으로부터 공인된 자에게 인도되는 경우 소비세가 면제됨
  - 변성 알코올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세 창고에서 배송되는 경우 소비세가 면제됨

## Ⅲ. 관세평가제도

### 1. 개요

#### 가. 관세평가제도

-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을 신고할 때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됨
-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표준이 되는 이러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을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라고 함
- GATT 제7조의 실시규정으로서 작성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 과세평가의 결정을 위한 기초는 거래가액으로 공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자의적 또는 가공한 과세가액은 배제하도록 함
  - 관행에 적합한 간명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수출국에 따른 차별은 배제하며 덤핑에 대항하는 조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입국에 수출을 위해 판매되었을 시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소요금액을 가산한 금액(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
-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더해지는 가산요소는 다음과 같음

-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의 비용, 포장에 관련된 비용, 무상 또는 할인해서 제공된 원재료 등의 비용,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요금,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 수익, CIF를 과세가액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수입항까지의 수송, 적재·하륙 등에 드는 비용 및 보험료
- CIF, FOB 등 어느 것에 기초하여 결정할지는 협정 가입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함
- 거래가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함
  - ①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 ②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방법, ③ 국내 판매 가격으로부터의 역산에 의한 방법, ④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적산에 의한 방법(수입자가 요청했을 시 ③ 및 ④의 적용순서는 반대가 됨), ⑤ 앞의 ①부터 ④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시, 본 협정 및 GATT 제7조의 원칙과 이 일반규정의 적합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 영국은 GATT 협정 국으로 GATT 제7조 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영국 관세청(HMRC)은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가이드를 홈페이지(<https://www.gov.uk/guidance/prepare-to-work-out-the-customs-value-of-your-imported-goods>)에 별도로 제공 중임
- 수입자는 과세가격 결정 시, 다음의 제1 방법에서 제6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함<sup>65)</sup>
  - 제1 방법은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품의 90% 이상에 사용되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인 제2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3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인 제3 방법을 사용할 수 없

65) HMRC, <https://www.gov.uk/guidance/prepare-to-work-out-the-customs-value-of-your-imported-goods>, 검색일자: 2023. 11. 1.

- 는 경우 제4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의 영국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4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물품의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 또는 가격을 합한 산정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5 방법을 사용해야 함
  - 제3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4 방법 또는 제5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5 방법을 먼저 사용해볼 수 있음
  - 제4 방법 또는 제5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제6 방법을 사용해야 함
  - 제2 방법부터 제6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때도 통계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창고 재고 관리 목적으로도 사용됨
- 또한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자유 유통되기 위해 반출될 시에도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함
- 수입자는 제시하는 상품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4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재심사(review)를 원할 때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결정자에게 답장을 보내,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HMRC와 독립된 재판소에 직접 항소할 수도 있음

#### 나. 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sup>66)</sup>

- 영국은 현재 품목분류 및 상품 원산지에 관한 사전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관세 평가에

---

66)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customs-advance-valuation-rulings/import-duty-rulings-as-to-method-of-valuation-of-goods>, 검색일자: 2023. 10. 26.

대한 사전 판결은 제공하지 않았음

- 영국은 2023년 「조세(국경간 무역)법」을 개정하여 사전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될 예정임
  - 해당 판정은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같이 3년 동안 HMRC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
  -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명시에 관한 규정
  - 신청서 작성에 관한 규정(양식,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및 첨부 문서 포함)
  - 지정된 기간 내에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및 기타 조건에 관한 규정
  - 판결이 어떤 형태로 주어질 것인지에 관한 규정
  - 판결의 철회나 수정에 관한 규정
  - 신청인들이 판결에 의존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규정
  -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HMRC에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 2.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sup>67)</sup>

-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상품을 영국으로 들여오기 이전에 판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 산정된 상품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송장사본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단,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운송비, 수수료(구매수수료 제외), 판매조건으로 지급한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포장(용기)비, 재판매 수익 등의 가산요소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산정해야 함
    - 거래가격은 물품에 대해 지급해야하는 대금 또는 영국으로 물품 수입 시 지급할

---

67) HMRC, <https://www.gov.uk/guidance/prepare-to-work-out-the-customs-value-of-your-imported-goods>, 검색일자: 2023. 11. 1.

수 있는 금액임<sup>68)</sup>

- 수입에 대한 거래로 볼 수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69)</sup>
  - 선물, 샘플 또는 판촉 품목과 같은 무료 위탁(가격 지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판매로 간주할 수 없음)
  - 위탁하여 수입한 상품(공급업체를 위해 판매할 수 있도록 단순히 보내진 상품들)
  -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개업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모든 범위의 상황을 포함
  - 별도의 법인이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품(판매는 별도의 법인 간의 거래이므로 판매로 간주할 수 없음)
  - 임대 또는 임대 계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은 계약에 물품 구매 옵션이 포함되었더라도 판매로 볼 수 없음
  - 보낸 사람의 소유물로 남아 있는 예를 들어 기계류와 같이 대출의 계약하에 반입되는 물품
  - 영국에서 폐기용으로 수입된 물품(폐기물 또는 고철) 및 발송인이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제1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sup>70)</sup>
  - 다음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상품 처리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함
    - 법률이나 영국 공공 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제한
    -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지역 제한
    - 상품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해당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시 제1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은 가치 계산이 불가능함
    - 판매자에게 수입자가 특정 수량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수입 상품

68)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16

69)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using-method-1-transaction-value#valuation-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1. 1.

70) 상동

의 가격을 고정한 경우

- 수입품에 대해 지급하는 가격이 다른 상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수입품에 대해 지급하는 가격이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판매 또는 가격은 평가대상 상품과 관련하여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 사항에 근거할 수 없음
- 판매자가 수입 상품의 후속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수익의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적절한 가치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함

□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sup>71)</sup>

- 운반비용: 영국 국경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것과 관련된 운송, 보험, 선적 또는 취급 비용 포함
- 컨테이너 및 포장: 평가된 상품과 하나로 취급되는 컨테이너(임차 비용이 운송 비용의 일부를 형성하는 화물 컨테이너가 아님) 및 노동용이든 자재용이든 포장된 것
- 판매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수료(수입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자가 비용을 지급하며 수입품을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조건)
- 구매자가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가 부과한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또는 가치의 일부를 관세 가격에 포함해야 함
  - 가격표, 킴볼 태그, 라벨을 포함하여 수입품에 포함된 재료, 부품, 부품 및 유사 품목
  - 도구, 금형, 주형 및 수입품 생산에 사용되는 유사한 품목
  - 수입품 제조에 사용되었지만 수입품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예: 연마재, 윤활제, 촉매제 및 시약)

71)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using-method-1-transaction-value#valuation-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1. 1.

- 영국 외부에서 수행되고 수입품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개발, 예술 작품, 디자인 작업과 계획, 스케치 연구 및 예비 디자인 스케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가공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가격에 다음 금액을 가산해야 함
    - 가공비용
    - 구매자에 의해 무료로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수입품의 재판매, 사용, 폐기로 인한 이익을 판매자와(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지급한 가격에 판매자의 몫을 가산해야 함
    - 예를 들어, 판매자가 귀하가 받는 이익의 30%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수입 시 이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보증을 받아 물품의 반출을 요청해야 함
  - 지급한 가격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당금은 관세에 포함되지 않음
  - 구매자가 원산지 또는 수출국에서 납부한 수출관세 및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매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감면 또는 환급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세금을 관세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과세가격 산정 시 제외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sup>72)</sup>
- 영국 내 배송비
  -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해 영국에서 지급해야 하는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을 지급하는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수입품과 관련이 있고 평가를 위한 실제 시점에 할인에 대한 유효한 계약상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할인 비용은 가능함
  - 수량 또는 거래 할인이 적립된 경우 이러한 할인을 제외하고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할인을 차감한 금액이 허용됨
  - 현금 및 조기결제 할인

72)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using-method-1-transaction-value#valuation-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1. 1.

-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제외할 수 있음
  - 수입품 관련 마케팅 활동(광고, 홍보, 보증 또는 보증 서비스, 구매수수료)
  - 수입품 구매 시 영국 외 지역의 대리인에 대한 판매수수료 또는 중개수수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거래가액과 별도로 표기되어야 함
  - 수입상품 구매를 위한 금융 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별도로 표기되어야 함
  - 재생산 권리(복제)
  - 산업플랜트, 기계, 중장비 등 물품의 수입 후 작업(건설 작업, 건립, 조립, 유지, 기술적인 도움)
  -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관리 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음(수입품과 관련되지 않은 관리, 마케팅, 회계 등에 대한 일반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됨)
- 해당 방법을 사용하면 수입 후 감사에서 검사한 수입 신고서를 요청할 때 평가 신고서 양식(valuation declaration)을 작성하여 수입 신고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sup>73)</sup>
- 평가 선언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이 서명할 수 있음
    - 영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양식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회사에 대한 양식이 완성된 경우, 서명자는 회사의 책임 있는 대표자여야 함

### 3.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

#### 가.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2 방법)

- 제2 방법 제1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품의 생산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

73)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using-method-1-transaction-value#valuation-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1. 1.

된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함

- 동일한 상품은 수입품과 해당 상품이 외관상의 경미한 차이를 제외하고 물리적으로 특성, 품질,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같은 동종·동질을 가진 상품을 의미함
  - 같은 나라에서 생산된 영국으로 거의 동시에 수출(90일 이내)된 제품을 의미함
  - 생산자가 제1 방법에 의해 수용된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생산자의 동일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음
- 상품의 과세가격은 상품 평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 방법에 따라 영국 세관에서 이미 승인한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둘 이상의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값을 사용해야 함
- 동일한 상품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90일 이내) 수출된 동일한 상품에 대한 증명을 영국 세관에 제출해야 함
- 90일은 상품가격이 변경되지 않을 기간으로 간주하였음
  - 증빙 서류가 포함된 수입 통관 사본
  - HMRC가 수입 항목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 나.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3 방법)

- 제2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품의 생산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3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유사한 상품은 수입품과 해당 상품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의미함
- 상품의 과세가격은 상품 평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 방법에 따라 영국 세관에서 이미 승인한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둘 이상의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값을 사용해야 함

- 유사한 상품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90일 이내) 수출된 동일한 상품에 대한 증명을 영국 세관에 제출해야 함
  - 90일은 상품가격이 변경되지 않을 기간으로 간주하였음
  - 증빙 서류가 포함된 수입 통관 사본
  - HMRC가 수입 항목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 다.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4 방법)

- 수입품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없어 제1 방법 ~ 제3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영국에서 생산된 물품 중 수입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함
  - 그러나 물품의 수입 시점, 운송방식 등 조건이 수입물품과 동일하지 않을 때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
- 과세가격은 영국에서 수입된 상태로 판매자와 관련 없는 고객에게 판매되는 각 품목의 단가(the unit price)를 기준으로 함
  - 단가는 평가 대상 상품의 수입 당시 또는 그 무렵의 최대 총량 판매와 관련되어야 함
  - 최대 총수량을 계산하려면 각 가격에서 판매된 품목 수를 합산해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 품목의 최대 개수가 최대 총량임
  - 물품이 자유 유통되는 시점에 최대 총수량으로 판매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상품을 수입하는 시점 또는 그즈음에 판매가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수입 후 90일까지 실제 판매되는 수입품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환급을 요청해야 함

- 상품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영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가공 후 상품이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함
  - 물품의 정체성이 상실된 경우(처리를 통해 부가된 가치를 정확하고 쉽게 확립할 수 없는 경우)
  - 물품의 정체성은 유지되나 판매되는 상품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단가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되기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일한 종류 또는 종류의 수입품을 영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익 및 일반 비용을 위해 추가되는 금액
  - 영국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운송 비용, 보험 및 관련 비용
  - 수입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영국 관세 및 내국세
  - 상품이 판매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행된 가공으로 인해 추가된 가치
  - 실제 이익 및 일반 비용에 대한 공제는 영국에서 동일한 종류 또는 종류의 수입품 판매에 대한 일반적인 금액과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됨
  - 같은 종류의 상품은 특정 산업 또는 산업 분야에서 생산된 상품 그룹 또는 범위에 속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동일하고 유사한 상품이 포함되지만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할 필요는 없음
  
- 무역 부문 내의 수입업자와 비교하여 공제액이 통상적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위해 수입 통관과 함께 최대 총수량의 단가를 표시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 판매 송장
  - 수입 당시의 가격표
  - 합의한 기타 증거
  - 전체 공제율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청구된 실제 공제액에 대한 세부정보도 필요함

- 수입 당시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증 목적을 위해서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해야 하며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 가치 명세서 또는 기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함
  - 신선한 과일, 채소, 절화 수입의 경우,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모든 상품이 판매 될 때까지 대기할 필요 없이 단가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판매한 후에는 판매 송장 사본과 계산서 사본을 국립수입관세조정센터(National Import Duty Adjustment Center, NIDAC)로 송부해야 함
  - 당사와 전체적인 비율 공제가 합의되지 않은 한, 실제 공제를 청구한 내역도 필요함
  - 신선한 과일, 채소, 절화 거래에서 거래처 판매 절차는 지급해야 할 관세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라. 산정가격 기준(제5 방법)

- 산정가격 기준은 제1 방법 및 제5 방법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 또는 가격을 합해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sup>74)</sup>
  - 산정가격에는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여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조립 및 기타 가공비, 포장(용기)비, 노무비, 자재비,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기타 운송 비용 등 모든 처리 비용이 포함되지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함
- 해당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물품 비용이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제작자의 상업 계정(producer's commercial accounts)을 기반으로 해야 함<sup>75)</sup>
  - 상품이 생산되는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 회계 원칙을 따라야 함

74)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using-method-5-com-uted-value>, 검색일자: 2023. 11. 2.

75) 상동

- 생산자의 이윤과 일반경비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가산되는 금액은 상품 수출국 생산자의 이윤과 일반경비에 관한 통상적인 수치와 일치해야 함<sup>76)</sup>
  - 동종 또는 종류(이는 특정 산업 또는 산업 부문에서 생산된 상품의 그룹 또는 범위에 속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동일 및 유사한 상품을 포함함 - 해당 상품이 평가 대상 상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음)
  - 영국 수출용이어야 함

**마. 합리적인 조정(제6 방법)**

- 제1 방법에서 제5 방법까지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6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sup>77)</sup>
  - 합리적 기준은 제1 방법에서 제5 방법까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한 것을 의미함
- 제 1방법 ~ 제 5방법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부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음
  - 제2 방법 또는 제3 방법 사용 시 관세금액은 평가대상 물품의 수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유사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제4 방법 사용 시 90일간의 판매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해당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방법 1부터 5까지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를 HMRC에 제공해야 하며, 방법 6을 사용할 수 있는 증거도 제공해야 함<sup>78)</sup>
  - 제공해야 하는 증거 유형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76)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using-method-5-com-uted-value>, 검색일자: 2023. 11. 2.

77)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using-method-6-fall-back-method>, 검색일자: 2023. 11. 2.

78) 상동

포함될 수 있음

- 영국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현재 수출 가격표 사본
- 납품업자의 상품가치에 대한 진술
- HMRC와 합의된 증거

#### 바. 기타 특별 절차에 따른 물품의 가치 평가

- 무료 물품의 가치 평가는 공급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1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음
- 제2 방법부터 제6 방법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제6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제품을 구매했다면 공급업체에 지급했을 가격을 기준으로 세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금액을 포함함
  - 수수료
  - 로열티 및 라이선스
  -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비용 절감으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 물품이 재질, 구성품, 부품 및 유사품
  - 도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품목
  - 수입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
  - 엔지니어링, 개발, 삽화, 디자인 작업과 계획 및 스케치
  - 용기 및 포장
  - 판매 수익금
  - 수출관세
  - 다음의 금액은 산정 시 제외됨
    - 영국 내 배송비
    - 영국 관세 또는 세금
    - 할인

- 수량 또는 무역 할인
  - 현금 및 조기 결제 할인
  - 배당금
  - 상품 수입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
  - 구매 수수료
  - 이자 부담금
  - 복제권
  - 수입 후 작업
  - 관리비
- 운송 중에 결함이 있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대체품으로 무료 품목이 포함된 경우, 계약된 판매 가격은 선적된 품목의 총수량이 됨<sup>79)</sup>
- 공급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1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배송의 대체 상품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2 방법에서 제6 방법을 사용하거나 HMRC에 계약상의 협정에 따라 원래 선적품의 관세 가치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구매한 상품 간의 사용 기간 및 범위와 자유 유통 진입 사이에 지연이 있어 상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는 제1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제2 방법부터 제6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sup>80)</sup>
- 과세가격은 제품 구매 당시의 가치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 손실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임대 또는 임대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판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6 방법을 사용함<sup>81)</sup>

79)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that-are-lost-damaged-or-defective>, 검색일자: 2023. 11. 2.

80) 상동

- 임대 또는 임대 이전에 물품이 판매 되었으면 제1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2 방법 ~ 제5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 추후 상품을 구매하려는 때를 대비해 임대 또는 임대 계약서에 현금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예도 있음
  - 이 현금 가격은 대신 상품을 임대하거나 임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현금 가격은 판매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제1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품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유통되기 전에 배송이 부족했거나 운송 중에 분실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sup>82)</sup>
- 상품이 자유 유통되기 전에 우리에게 물품 파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시 과세가격에 대한 수정을 HMRC에 요청할 수 있음<sup>83)</sup>
- 물품이 단순화된 절차 가을 체계하에 입력되었을 시 제4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물품 파손에 대해 허용되는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음
    - 판매자의 신용 전표
    - 물품을 검사한 세관원의 진술서
    - 파손신고 증명서
    - 항만 보건 당국의 성명서
    - 측량사와 같은 독립적인 전문가의 진술
    - 보험사 또는 보험사에 대한 청구 합의 세부사항
  - 부분적인 손실이나 손해를 고려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원래 가격을 사용
  - 판매자가 손실이나 손상의 결과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수정된 가격을 사용함
  - 손상된 상품을 판매한 가격과 판매 당시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해 공시된 평균

81)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that-are-lost-damaged-or-defective>, 검색일자: 2023. 11. 2.

82) 상동

83) 상동

시장 가격을 비교하고, 그 비율을 사용하여 송장 가격을 수정함

- 수입 후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관세국세환  
급센터(Customs National Duty Repayments Centre)에 관세환급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음<sup>84)</sup>
- 결함이 수리되었거나 판매자가 수행한 보증 작업 비용을 상환하면 가능함

---

84) HMRC, <https://www.gov.uk/guidance/valuing-imported-goods-that-are-lost-damaged-or-defective>, 검색일자: 2023. 11. 2.

##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 1. 개요

#### 가. 품목분류제도

- 영국의 품목분류제도는 WCO 협약을 수용하여 국제무역에서 공통으로 관세, 무역, 통계 등에 사용되는 유일한 국제통일 상품분류표인 HS(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음
- HS 6단위는 협약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무역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관세 등)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HS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음<sup>85)</sup>
- HMRC는 분류하기 어려운 특정 유형의 물품에 대해 일련의 품목분류 가이드를 별도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음<sup>86)</sup>
  - 해당 품목은 세라믹,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드론 및 항공기 부품, 식용 과일, 야채, 견과류, 전기 장비, 전기 램프, 신발류, 약초, 보충제 및 강장제. 철과 강철, 가죽, 유기화학물질, 의약품 및 위약, 플라스틱, 쌀, 섬유 의류, 담배, 장난감, 게임 및 축제 용품, 차량, 자전거, 부품 및 액세서리, 목재 등임

85) HMRC,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howto/commodity-codes> 검색일자: 2023. 10. 26.

86) HMRC, <https://www.gov.uk/guidance/finding-commodity-codes-for-imports-or-exports>, 검색일자: 2023. 10. 26.

##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영국은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제도(Advance Tariff Ruling)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든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소급한 신청 및 결정은 불가능함
- 첨부 파일이 기밀로 표시되지 않으면 신청서의 일부가 공개될 수 있음
  - 해당 물품을 수입할 계획이 없고 물품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통관 수입 절차를 통해 물품을 통관하면 HMRC는 심사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판결 사례는 HMR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sup>87)</sup>
-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Government Gateway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사용자 ID가 없는 경우 신청 시 만들 수 있음)
  - GB로 시작하는 경제 운영자 등록 및 식별(EORI) 번호
  -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적절한 경우 안내서, 매뉴얼, 사진 및 샘플 제공(기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세관에 고지해야 함)
  - 예상 품목분류 세 번
- 사전심사 신청 후 HMRC는 30일 ~ 120일 이내에 해당 결정 및 내용을 통지해야 함
  - 결정 내용
  - 물품에 대한 올바른 상품 코드
  - 정보의 유효기간 시작일
  - 물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참조번호

87) HMRC, <https://www.tax.service.gov.uk/search-for-advance-tariff-rulings/search?enableTrackingConsent=true>, 검색일자: 2023. 10. 26.

-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해당 정보를 사용할 법적 자격이 있는 자)
  - 국경에서 해당 물품을 쉽게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특정 표시 및 번호 포함)
  - 결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한지에 대한 설명
- 해당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3년간 유효함
- 수입 신고 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해 신고서식 BOX 44에 체크하여 사전심사에 대한 판결을 받았음을 통지할 수 있음

## 2. 관세율제도

### 가. 관세율 수준

- WTO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관세율은 3.8%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9.4%와 2.9%로 비농산물보다 농산물의 관세 수준이 약 3.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22년 수입액 기준 전체 품목의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은 3.2%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12.0%와 2.2%로 조사됨

〈표 2-IV-1〉 평균 MFN 관세율 및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기준년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평균 MFN 관세율	2022	3.8	9.4	2.9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2022	3.2	12.0	2.2
수입액(십억달러)	2021	666.9	67.0	599.9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3, 2023, p. 188

- <표 2-IV-2>의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양허관세 기준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비율은 농산물이 비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비율 또한 비농산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WTO 양허관세율 기준 30.4%, MFN 실행관세율 기준 38.7%이며, 비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각각 29.7%, 55.2임
  - 2021년 수입액 기준 농산물의 17.9%가 무관세를 적용받지만, 비농산물의 63.0%가 무관세 적용을 받음
  - 25% 초과 고율관세 구간은 농산물로만 구성되어 있음
  - 세율분포를 살펴보면 농산물 및 비농산물 모두 양허세율 기준으로 0% ~ 10%의 관세율이 약 30% 이상의 품목에 적용되었음

<표 2-IV-2>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단위: %)

구분		무관세	0%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100%이하	100%초과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30.4	11.5	18.2	13.2	12.6	8.6	2.8	0.5
	2022년 MFN 실행관세	38.7	10.9	19.0	10.4	10.9	7.1	2.3	0.2
	2021년 수입액	17.9	14.4	36.4	9.5	9.6	9.1	2.9	0.0
비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29.7	33.2	28.0	7.4	1.5	0.1	0	0
	2022년 MFN 실행관세	55.2	17.8	19.3	6.2	1.3	0	0	0
	2021년 수입액	63.0	16.3	16.6	3.6	0.5	0	0	0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3, 2023, p. 188

- <표 2-IV-3>의 품목별 관세율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35.2%의 낙농제품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11.4%의 의류로 나타남
- WTO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39.1%의 낙농제품이며, 설탕 및 과자류 21.2%, 음료 및 담배 19.1% 등의 수입
- 비농산물의 경우 어류 및 수산물이 12.0%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의류 11.5%, 직물 6.5% 등의 수입
- 낙농제품의 경우 무관세 적용 품목이 없었으며 면섬유의 경우 100%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었음
- 목제품 및 종이 제품 및 광물, 금속 제품의 약 90%에 무관세가 적용되었음

〈표 2-IV-3〉 품목별 관세율 수준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무관세	최대	평균	무관세	최대	비중	무관세
동물제품	16.3	28.4	122	16.0	28.2	122	1.1	11.0
낙농제품	39.1	0	176	35.2	0.2	146	0.4	0
과실 및 채소, 식물 제품	10.8	19.7	142	7.3	31.4	59	2.3	15.8
커피, 차	5.9	27.1	14	5.3	31.3	14	0.8	17.9
곡물 및 그 조제품	14.2	5.6	82	10.8	18.1	81	1.6	7.2
종자, 기름	4.9	48.1	88	5.3	55.7	68	0.7	60.4
설탕 및 과자류	21.2	0	90	20.2	11.8	89	0.6	2.1
음료, 담배	19.1	18.4	130	16.5	23.0	130	1.6	17.1
면섬유	0.0	100.0	0	0.0	100.0	0	0.0	100.0
기타 농산물	4.1	65.2	331	2.3	76.3	58	0.8	40.2
어류 및 수산물	12.0	5.4	26	10.8	8.8	25	0.6	12.8
광물, 금속	1.9	50.4	12	0.8	82.4	12	22.6	90.3

〈표 2-Ⅳ-3〉의 계속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무관세	최대	평균	무관세	최대	비중	무관세
석유제품	3.2	16.7	5	1.6	33.3	4	5.6	92.7
화학제품	4.6	21.6	17	3.0	40.7	7	13.3	46.1
목제품, 종이제품 등	1.0	81.3	12	0.7	85.6	10	6.2	90.1
직물	6.5	2.1	12	5.1	30.8	12	1.7	11.7
의류	11.5	0	12	11.4	0	12	2.5	0
가죽, 신발 등	4.1	27.1	17	3.1	39.2	16	1.7	6.3
비전기기계	1.7	29.6	10	0.6	78.7	8	11.4	77.6
전기기계	1.9	42.1	14	0.8	71.9	14	9.4	53.2
운송기기	4.5	16.7	22	3.2	54.3	18	9.4	14.8
기타 제조업 제품	2.0	36.6	10	0.8	63.2	4	5.5	67.1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3, 2023, p. 188

## 나. 관세율 체계

-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여 EU 회원국을 포함한 영국 이외의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독자적 관세체계인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 UKGT)를 적용함<sup>88)</sup>
  - 다만 무역협정 체결국과는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대비 일환으로 관세율표를 단순화해 기업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관세(2% 이하) 상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세율을 조정(인하)했음
  - 영국 내 생산이 없거나 생산에 제한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음

88)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6899](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6899), 검색 일자: 2023. 10. 26.

-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1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음
  - 영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농업, 자동차, 어업 부문과 양고기, 소고기 및 가금류 등의 농산물, 세라믹 상품의 경우 영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를 유지하였음
- 수입을 위한 전체 10자리의 영국 상품 코드는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4개 부분은 수출에 적용되고 5개 부분은 수입에 적용됨<sup>89)</sup>
- 물품 분류를 통해 제품의 종류, 재료, 기능, 포장, 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10자리 영국 상품 코드는 관세 및 관련 제세금을 비롯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함<sup>90)</sup>
-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세율
  - 기타 적용 가능한 세금의 세율
  - 상품이 무역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혜세율
  - 물품 운반을 위한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 해당 물품이 다음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농업정책,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쿼터, 관세 유예 등

[그림 2-IV-1] 영국 물품 분류 예시

HS Code(Harmonised System)			영국 물품 분류 (UK-specific coding)	
01	02	29	10	10
수출 분류				
수입 분류				

자료: HMRC,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howto/commodity-codes>, 검색일자: 2023. 10. 31.

89) HMRC,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howto/commodity-codes>, 검색일자: 2023. 10. 31.

90) 상동

-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은 HMRC 홈페이지(UK Integrated Online Tariff)에서 확인 가능함
  - 품목분류에 관한 확인은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browse>에서 가능함
  - 관세율은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find\\_commodity](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find_commodity)에서 조회 가능함
  - 이 밖에도 HMRC에서는 영국 상품 코드 분류에 대한 설명, 세부정보가 표시되는 형태의 표를 <https://data.api.trade.gov.uk/v1/datasets/uk-tariff-2021-01-01/versions/v3.0.254/metadata?format=html#table—measures-as-defined>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3가지 테이블은 각각 기존의 물품 분류 및 최근 분류 표시 UK Global Tariff (commodities), 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해 취해진 조치 UK Global Tariff (measures on declarable commodities), 정의된 조치(적용 불가능한 것 포함) UK Global Tariff (measures as defined)에 대해 나타내고 있음<sup>91)</sup>

[그림 2-IV-2] 영국 관세율 조회 화면

**Search for a commodity**

Commodity codes are internationally recognised reference numbers. A commodity code describes a specific product when importing or exporting goods. You will use this code on any customs declarations.

[▶ Tips on searching for products](#)

Search the UK Integrated Online Tariff

**When are you planning to trade the goods?**

You can enter the date your goods will be traded. This is important, as commodities, duties and quotas change over time. Use the format day, month, year, for example 27 3 2021. If you don't enter a date, today's date is used.

Day    Month    Year

자료: HMRC,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find\\_commodity](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find_commodity), 검색일자: 2023. 10. 31.

91) <https://www.api.gov.uk/dit/#department-for-international-trade>, 검색일자: 2023. 10. 31.

## 다. 관세율 종류

- 영국은 종량세 및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sup>92)</sup> UKGT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UK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됨<sup>93)</sup>
  - 수입하는 국가가 영국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
  - 관세 감면 또는 유예(relief or tariff suspension)와 같은 예외가 적용됨
  - 개발도상국 무역 제도(DCTS)가 적용되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상품
  
- 영국의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금액은 다음의 관세율에 따라 조정됨<sup>94)</sup>
  - 특혜세율(Preferential rate)(영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정)
    -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나 영토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상품 설명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이 표준 형식의 관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게 적용<sup>95)</sup>
  - 특혜세율(preferential rates given unilaterally)(개도국 무역특혜)
    - 하나 이상의 적격 개발도상국에 적용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하고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해 무세율의 수입관세를 적용<sup>96)</sup>
  -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quotas (ATQs)<sup>97)</sup>
  - 관세유예(Tariff Suspension)
  - 반덤핑관세(Anti-Dumping)
  - 상계관세(Anti-Subsidy)
  - 벨라루스 및 러시아에 대한 추가관세(Additional duty)

92)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8

93) HMRC, [www.gov.uk/guidance/tariffs-on-goods-imported-into-the-uk#importing-goods-covered-by-a-tariff-rate-quota](http://www.gov.uk/guidance/tariffs-on-goods-imported-into-the-uk#importing-goods-covered-by-a-tariff-rate-quota), 검색일자: 2023. 10. 30.

94)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7

95)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9

96)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10

97)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ference-documents-for-the-customs-tariff-quotas-eu-exit-regulations-2020>, 검색일자: 2023. 10. 30.

- 관세유예(duty suspensions)는 영국에서 관세율을 인하하여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관세할당(Autonomous tariff quotas, ATQs)은 제한된 물량을 인화된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함<sup>98)</sup>
- EU의 2020년 7월 이전에 또는 그 일환으로 시행된 경우에만 기존의 유예 및 할당을 유지하고 있음<sup>99)</sup>
  - 동일한 제품(동일한 상품 코드에 속함) 또는 유사한 제품이 영국 또는 영국 왕실령(Crown Dependency)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적용함
  - 원제품 이외의 제품은 영국 또는 영국 왕실령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제조된 경우 영국 또는 영국 왕실령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함
  - 간단한 조립 작업, 제품 재포장 또는 배송 또는 운송을 위한 제품 준비는 일반적인 생산 공정으로 볼 수 없음
  - 현재 총 6개의 ATQs가 적용 중이며 5개의 생선식품 그리고 사탕수수 원당에 적용되고 있음
    - 사탕수수는 정제용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과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형태)이 대상임
  - 4가지 수산물에 대한 ATQ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임
    - 대구(*Gadus morhua*, *Gadus microcephalus*), 냉동 필레 및 고기(가공용),
    - 알래스카 명태(*Theragra chalcogramma*), 냉동, 냉동 필레 및 기타 냉동 육류(가공용)
    - 새우와 판달루스 보레알리스(*Pandalus borealis*) 및 판달루스 몬타기(*Pandalus montagui*)종의 새우(요리하고 껍질을 벗겨 가공용)
    - 새우와 판달루스 보레알리스(*Pandalus borealis*) 및 판달루스 몬타기(*Pandalus montagui*)종의 새우(껍질이 벗겨진 상태, 신선, 냉장 또는 냉동된 것으로 가공용)
    - 새우와 페나이우스 흰다리새우(*Penaeus vannamei*) 및 페나이우스 모노돈

98) HMRC, <https://www.gov.uk/guidance/duty-suspensions-and-tariff-quotas>, 검색일자: 2023. 10. 30.

99) <https://www.gov.uk/guidance/duty-suspensions-and-tariff-quotas>, 검색일자: 2023. 10. 30.

(Penaeus monodon)(껍질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가공용)

- 영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일부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생산되는 품목군에 35%의 추가관세(Additional tariff)를 도입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해당 관세의 연장을 발표하였음<sup>100)</sup>
  -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 강철, 비료, 목재, 타이어, 철도 컨테이너, 시멘트, 구리, 알루미늄, 은, 납, 철광석, 잔류물/음식물 쓰레기, 음료, 증류주 및 식초(보드카 포함), 유리 및 유리 제품, 시리얼, 오일 종자, 종이 및 판지, 기계, 예술 작품, 골동품, 모피 가죽과 인조 모피, 선박과 흰살생선 등임
  - 추가관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2022년 7월 20일 이전에 수출 절차를 마치고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서 반출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증거 서류로는 선하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화물이 다른 국가의 세관 절차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영토에 반입되었다는 증거문서 등이 있음<sup>101)</sup>
  -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2022년 3월 25일, 2022년 6월 1일, 2022년 7월 20일, 2023년 1월 1일) 물품의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대한 반출 증거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지정된 농산물에 대해 물품의 수입량이 지정된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정된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수입관세를 적용하거나 적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sup>102)</sup>

100) HMRC,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nnounces-new-economic-sanctions-against-russia>, 검색일자: 2023. 11. 22.

101) KMI,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idx=22885>, 검색일자: 2023. 11. 22.

102)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14

## V. 감면 및 유예

### 1. 개요

- 영국에서는 The Customs (Reliefs from a Liability to Import Duty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2020에 근거하여<sup>103)</sup> 다음의 물품에 대해 관세의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sup>104)</sup>
  - 특혜협정에 따른 물품
  -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 임시 수입물품
  - 교육 및 문화 관련 물품
  - 의료 및 과학 관련 물품
  - 인쇄물 및 판촉물
  - 산업 또는 상업적 연구를 위한 물품
  - 특별 사용을 위한 물품
  - 수산물
  - 사업을 영국으로 이전할 때 관련 물품
  - 장례식 및 추도식 물품

---

103) 해당 규정에 대한 감면 제품 및 설명을 United Kingdom Customs Tariff: Reliefs from Import Duty, version 1.5, dated 10 July 2022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HMRC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신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104) HMRC,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an-pay-a-reduced-rate-of-customs-duty#goods-covered-by-a-preference-agreement>, 검색일자: 2023. 10. 17.

- 특송물품
  - 자선 또는 장애인 지원 용품
  - 개인용 물품
  - 관세 및 부가가치세 유보 물품
- 그 밖에 EU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원재료를 EU 역내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다시 역외로 수출하는 것을 역내가공이라 하는데, 영국은 역내가공 절차에 따른 관세유예를 유지하고 있음

## 2. 감면의 종류

### 가. 특혜협정에 따른 물품

- 특혜협정과 관련된 물품은 협정이 변경될 수 있어 국가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다르므로 특혜를 신청할 때마다 상품이 관련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개발도상국 무역 제도(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DCTS)가 발효되어 2023년 6월 19일부터 일반특혜제도(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GSP)를 대체하게 되었음<sup>105)</sup>
- 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영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DCTS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를 인하하고 원산지규정을 비롯한 각종 조건을 간소화하고 있음
  -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원산지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함

---

105)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veloping-countries-trading-scheme-dcts-new-policy-report>, 검색일자: 2023. 10. 17.

## 나.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재수입으로 감면 또는 관세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sup>106)</sup>
  - 수출할 때와 같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 가공이나 수리를 위해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경우
  
- 영국에서 수출 또는 운송된 상품을 영국으로 다시 수입할 시 다음은 관세가 감면됨<sup>107)</sup>
  - 영국에서 수출된 물품(북아일랜드에서 수출하는 특정 상품 제외)
  -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으로 이동하여 북아일랜드로 돌아온 물품
  -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 수출되어 북아일랜드로 돌아온 물품
  - 북아일랜드에서 EU 밖의 모든 국가로 수출되어 북아일랜드로 돌아온 물품
  - 적합한 북아일랜드 물품을 영국으로 다시 반입할 시에는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 물품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재수입되어야 하며 물품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을 제외하고 상품의 가치를 바꾸는 작업은 적용할 수 없음<sup>108)</sup>
  - 원래 국내 가공 또는 최종 사용으로 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당시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었던 것
  - 수리 또는 처리를 위해 수출되지 않았으나 수리 또는 처리가 수행되지 않았으면 감면이 가능할 수 있음

106) HMRC,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an-pay-a-reduced-rate-of-customs-duty#re-importing-goods-youve-exported-before>, 검색일자: 2023. 10. 18.

107)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less-import-duty-and-부가가치세-when-re-importing-goods-to-the-uk-and-eu>, 검색일자: 2023. 10. 17.

108) 상동

- 수출 후 3년 이내에 재수입되어야 하며, 수출 시 농업 조치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됨
  - 원래 수출품의 일부만 반품되는 경우 위의 조건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 최초 수입 당시 국내 가공을 위해 보류된 관세는 재수입 시 모두 상환되어야 하며 수출로 받은 농업 환급금 또한 반드시 상환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감면을 위한 재수입 기한은 3년 내이나 다음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sup>109)</sup>
- 해외에 배치된 후 영국으로 돌아가는 외교 직원, 군대, 대사관, 영사 직원의 물품(배치의 기한은 6년임)
  - 특수 물품이나 장비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 임대 또는 대여된 경우
  -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건축 장비 또는 기계
  - 전시품이 영국 외부에서 장기 전시 또는 대여되었거나 영국 외부에 보관된 경우
  - 상품을 반품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수출 후 3년 이내에 상품을 반품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경우 재수입 감면에 대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응용 미술에 사용되는 휴대용 기구나 고전문학, 원래 영국에서 제조되고 영국 밖에서 취득한 수집가 또는 유산(가구 또는 도자기의 수집 가능한 품목 등) 영국 거주자의 개인적(비상업적) 이용 물품이나 가구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2020년 12월 31일에 영국에서 EU로 운송된 물품은 정상적인 재수입 기한인 3년이 만료된 경우에도 감면의 적용이 가능함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하는 물품 중 감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110)</sup>
- 수출로 인해 관세가 상환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109)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less-import-duty-and-부가가치세-when-re-importing-goods-to-the-uk-and-eu>, 검색일자: 2023. 10. 17.

110) HMRC, <https://www.gov.uk/guidance/apply-to-pay-less-duty-on-goods-you-export-to-process-or-repair>, 검색일자: 2023. 10. 18.

- 수출 전에 제품이 최종 소비로 유통되었지만 제품이 공인된 용도(수리 제외)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 그 수출로 수출 환급이 되는 상품
- 상품의 수출로 영국 농업 정책에 따른 다른 재정적 이익을 얻는 경우

#### 다.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일시적 수입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견본, 전문 장비, 경매물건, 전람회 상품, 시범물품 등이 있음
- 화물 운송업자, 특송업, 관세사 등은 신청할 수 없으나 예술 또는 경주마(번식 포함) 부문의 전문 관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임시수입을 승인받을 수 있음
  - 상품이 규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된 경우
  - 수입자를 대신하여 규정된 용도로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된 경우
- 특별한 상황에서 제품을 수입 후 3년의 기간에만 소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sup>111)</sup>
  - 상품의 적격함을 인정받은 경우로서 사업적인 필요에 따라 일시 수입절차를 준수한 경우 가능함
  - 해당 인가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 소급기간에 포함되는 수입물품 목록 등이 필요하며, 소급승인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내로 이루어져야 함

#### 라. 교육 및 문화 관련 물품

- 교육적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한 서적, 출판물 및 문서, 교육 및 문화 관련 자료, 박물관과 화랑 전시회 사용 물품은 제세금이 면제됨<sup>112)</sup>

111) HMRC, <https://www.gov.uk/guidance/apply-to-import-goods-temporarily-to-the-uk-or-eu>, 검색일자: 2023. 10. 18.

112)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import-duties-and-부가가치세-on-miscellaneous-documents-and-related-articles>, 검색일자: 2023. 10. 18.

- 표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 공간이 있는 물품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비율은 관련 없는 상업적 홍보에만 적용하고 관광을 홍보하는 출판물과 포스터는 적용하지 않음
- 필름과 필름스트립, 최근의 뉴스로 가치가 있는 릴스 및 비디오테이프(2부), 디스크, 마이크로카드 또는 기타 컴퓨터화된 미디어 저장소, 녹음물, 시연 및 교육 목적을 위한 벽면 차트, 패턴, 모델 및 모형, 프로그래밍 된 수업을 위한 자료, 레이저 프로젝션용 홀로그램, 멀티미디어 키트 등<sup>113)</sup>
- 전시물품의 경우 박물관, 갤러리, 예술위원회, 지방 의회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과학적 성격, 교육적 성격, 문화적 성격을 가진 박물관 및 갤러리 전시품을 대상으로 제세금이 면제됨<sup>114)</sup>
- 물품은 승인된 시설로 수입 시 직접 발송해야 하며 통제 하에 전시품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마. 의료 및 과학 관련 물품

- 다음의 의료 및 과학 관련 물품은 의료 및 과학 관련 물품으로 감면의 대상임
  - 과학 자료, 장비 및 장치, 실험실 동물 및 연구용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물질
  - 인간 유래 물질, 혈액형 및 조직형 시약
  - 응급 이식을 위한 장기 및 물질
  - 의학 연구, 진단 또는 치료용 상품
  - 제약 물질
- 과학물품 중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음의 물품은 교육 및 문화 관련 물품과 마찬가지로

113)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import-duty-or-부가가치세-on-visual-and-auditory-goods>, 검색일자: 2023. 10. 18.

114)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customs-duty-and-부가가치세-on-importing-museum-and-gallery-exhibits#how-to-claim-relief>, 검색일자: 2023. 10. 18.

제세금이 면제됨<sup>115)</sup>

- 비상업적, 비영리적 교육 및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다음 기관의 물품은 제세금이 면제됨<sup>116)</sup>
  
- 또한 국제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 수입된 물품은 제세금이 면제됨<sup>117)</sup>
  - 영국에 기반을 둔 승인된 기관에서 국제적인 과학 연구를 수행, 영국 밖에 근거지를 둔 과학 연구 기관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수입되었거나, 과학적 협력 협정에 따라 영국 및 EU 밖에 기반을 둔 기관의 구성원 또는 대표자(또는 그들의 협정과 함께)가 사용하는 물품, 영국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 그 밖의 여분의 부품, 구성품, 액세서리, 도구, 유지품, 확인 및 교정, 수리하는 과학 도구 및 기구는 제세금이 면제됨
  
- 승인된 사용자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육되었거나 특별히 준비된 동물에 대해 제세금이 면제됨<sup>118)</sup>
  
- 인간의 혈액과 그 파생물 및 혈액 분류 및 혈액 부적합성 검출에 사용되는 모든 시약은 제세금이 면제됨<sup>119)</sup>
  - 인간의 혈액, 건조 인간 혈장, 인간 알부민, 인간 혈장 단백질, 인간 면역글로블린 및 인간 피브리노겐의 고정 용액, 혈액형 분류 시약

---

115)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import-duty-or-부가가치세-on-visual-and-auditory-goods>, 검색일자: 2023. 10. 18.

116)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customs-duty-and-부가가치세-on-scientific-instruments>, 검색일자: 2023. 10. 18,

117) 상동

118)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import-duty-or-부가가치세-when-importing-animals-for-scientific-research>, 검색일자: 2023. 10. 25.

119)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customs-duty-or-부가가치세-on-blood-grouping-tissue-typing-and-therapeutic-substances>, 검색일자: 2023. 10. 25.

- 조직형 분석 시약
  - 인체 조직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시약으로 특수 포장, 용제 및 액세서리는 면제가 가능하나 수입하는 빈 특수 포장재는 신고가 필요함
  - 응급 의료 절차를 위해 수입하는 사립 병원이 아닌 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면제를 청구할 수 없음
- 의학 연구, 의학적 진단 또는 의학적 치료 수행에 사용되는 기구 및 장치, 장비 및 장치의 예비 부품, 구성 요소 및 부속품, 유지 관리, 점검, 교정 또는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증받은 것은 제세금이 면제됨<sup>120)</sup>
- 자선 단체 또는 자선 단체에서 기부한 것
  - 개인이 기증한 것
  - 자선 단체 또는 자선 단체에서 제공한 자금이나 자발적인 기부로 구매한 것
  - 기증된 장비의 경우 기부자의 상업적 의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장비 제조업체와 연관성이 없어야 함

## 바. 인쇄물 및 판촉물

- 교육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한 서적, 출판물 및 문서, 관광 진흥, 저작권이나 특허권 보호를 위한 문서를 비롯한 무역 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제세금이 면제됨<sup>121)</sup>
- 인쇄물 및 광고물, 상업용 샘플로, 무역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제품

---

120)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import-duty-or-부가가치세-on-do-ated-medical-equipment>, 검색일자: 2023. 10. 25.

121)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import-duties-and-부가가치세-on-miscellaneous-documents-and-related-articles>, 검색일자: 2023. 10. 25.

## 사. 산업 또는 상업적 연구를 위한 물품

- 제품의 성분,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업 또는 상업적 조사를 위해 수입된 제품은 제세금이 면제됨<sup>122)</sup>
  - 담배 제품을 만들거나 포장하기 위해 시험 기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소비세 면제(수입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시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소비한 물건, 휘발유 또는 휘발유 대용품, 도로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증유의 경우 소비세는 면제받을 수 없음

## 아. 특별사용을 위한 물품 및 수산물

- 특별사용을 위한 물품으로써 감면신청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23)</sup>
  - 조선소 물품, 민간용 헬리콥터,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탄화수소유, 해양 추진 엔진, 군용 장비, 물고기, 치즈, 카세인(치즈 산업에서 사용됨)
- 어류, 고래 또는 기타 바다의 천연물 또는 바다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영국으로 직접 반입되는 경우) 제세금이 면제됨<sup>124)</sup>
  - 영국 상품의 경우(아래 참조), 관세 부과 목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EU 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에서 착지한 농산물의 경우, EU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되며 수입 관세가 면제됨

122)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import-duties-or-부가가치세-on-importing-goods-for-testing>, 검색일자: 2023. 10. 25.

123) HMRC, <https://www.gov.uk/guidance/apply-to-pay-less-duty-on-goods-you-import-for-specific-uses>, 검색일자: 2023. 10. 25.

124)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relief-from-customs-and-excise-duties-and-부가가치세/uk-trade-tariff-relief-from-customs-and-excise-duties-and-부가가치세#sea-produce>, 검색일자: 2023. 10. 25.

### 자. 사업을 영국으로 이전할 때 관련 물품 및 장례식과 추도식 물품

- 사업장을 영국으로 이전할 때 기계, 도구 등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sup>125)</sup>
  - 사무실 및 상점 장비나 기계, 기타 도구,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운송수단, 컴퓨터 및 기타 기술 장비, 모든 가축 등이 대상임
- 전쟁 희생자를 위한 기념물이나 묘지의 건축, 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에 대해 제세금이 면제됨<sup>126)</sup>
  - 제3국 전쟁 묘지 및 기념물의 건설 유지 또는 장식에 사용하기 위해 승인된 기관에서 수입한 물품은 제세금이 면제됨

### 차. 소액물품 및 자선 또는 장애인 지원 용품

- 주류 및 담배 제품 선물, 향수 및 화장수 선물 중, 멀티 선물 패키지가 £39를 초과하는 선물에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가치가 £135 이상이면 관세를 지급해야 함<sup>127)</sup>
- 음식, 약, 옷가지, 담요들, 정형외과용 기구, 목발, 영국의 재난 대처를 돕기 위한 물품의 경우 제세금이 면제되나 다음은 자선용품으로 적용될 수 없음<sup>128)</sup>
  - 알코올 제품(알코올 기반 향수 포함), 담배와 담배 제품, 커피와 차, 구급차 이외의 자동차, 조각상이나 펠릿과 같이 예배에만 관련된 물건

125)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less-customs-duty-and-부가가치세-if-yo--are-importing-capital-goods>, 검색일자: 2023. 10. 25.

126)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relief-from-customs-and-excise-duties-and-부가가치세/uk-trade-tariff-relief-from-customs-and-excise-duties-and-부가가치세#war-graves>, 검색일자: 2023. 10. 25.

127) HMRC, <https://www.gov.uk/guidance/import-부가가치세-and-customs-duty-on-gifts>, 검색일자: 2023. 10. 25.

128)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import-duties-and-부가가치세-on-goods-for-charity>, 검색일자: 2023. 10. 25.

- 수입이 남용이나 경쟁의 증대한 왜곡을 초래하는 모든 상품
- 재해 지역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는 상품과 장비
  
- 다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품 및 장애인용품은 수입 시 제세금이 면제됨<sup>129)</sup>
  - 장애인 이동 지원 및 상태 식별과 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흰색 지팡이 및 유사한 물품, 교구, 점자와 말하는 책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와 디지털 매체, 전자판독기
  - 신체적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 고용 또는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물품
  
- 다만 다음의 용품은 장애인용품에 대한 제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sup>130)</sup>
  - 표준 일반 휠체어 및 이동성 경차, 장애인의 단독 사용을 위해 아직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기타 운송 수단, 귀금속으로 만든 시계

### 카. 개인용 물품

- 개인용 물품 중 영국 방문, 이주, 결혼예물, 상속품, 유학 시 사용한 용품, 트로피 및 상,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사용되는 개인 의약품들, 타국 군인의 방문 물품, 국제 관계 시 받는 선물 등은 제세금이 면제<sup>131)</sup>

## 3. 관세의 유예

- 역내가공은 관세 납부와 관련하여 관세환급 및 유예와 같은 2가지 유형이 있으며,

---

129)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no-customs-duty-or-부가가치세-on-goods-for-disabled-people>, 검색일자: 2023. 10. 25.

130) 상동

131) HMRC,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an-pay-a-reduced-rate-of-customs-duty#goods-covered-by-a-preference-agreement>, 검색일자: 2023. 10. 25.

영국의 경우 관세유예를 적용하고 있음

- 「조세(국경간 무역)법」 및 관세 관련법상 소비세<sup>132)</sup>에 대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세 환급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음
- 관세유예 형식을 통한 역내가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의 유효기간(원재료를 가공하여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은 신청자의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관이 정할 수 있음
  - 상품을 처리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내부 처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영국 외부에서 수입한 다음 영국에서 재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영국에서 상품을 보관하는 경우 가공품에 대한 관세율이 수입 상품보다 낮을 때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음
- 제품 처리에 도움이 되지만 최종 제품에는 소진되는 물품의 경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진되었을 시 관세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화학 반응 촉진제, 지연제 또는 차단제
  - 가공 중 제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물품
  - 처리 작업 수행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
- 다음의 테스트용 물품의 경우 관세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sup>133)</sup>
  -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수리를 위해 수입한 제품의 결함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이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원
  - 제품의 테스트에 필요한 것 이외의 윤활제

---

132)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cise-notice-207-excise-duty-drawback/excise-notice-207-excise-duty-drawback#main-conditions-and-requirements>, 검색일자: 2023. 10. 23.

133) 상동

## VI. 원산지제도

### 1. 개요

#### 가. 원산지제도

- 원산지제도는 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특혜원산지(Preferential origin) 제도로 분류할 수 있음
  - 영국의 특혜원산지규정에는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규정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무역규정(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이 있음
    - DCTS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영국의 GSP(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국가에 적용됨
- 영국의 원산지 제도와 관련하여「조세(국경간 무역)법」, 관세율규정[The Customs Tariff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EU Exit) Regulations 2020] 등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영국 「관세 및 소비세법」상에서는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가 입증된 정보 또는 문서 작성을 요구할 권한에 관해서만 간략히 명시하고 있음

## 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sup>134)</sup>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Binding Origin Information, BOI)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 제품의 원산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관 당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원산지 규칙을 해석하기 어려운 때 또는 제품의 제조 상황이 규칙의 적용을 어렵게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음
  -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HMRC는 기업 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와 함께 협의함
  
- 영국법의 변경으로 BOI가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구속력 있는 상거래 계약의 대상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결정은 최대 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음
  - BOI 결정이 있더라도 수출입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 BOI 결정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지만, 샘플을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샘플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함
  
-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BOI 결정을 내리며, 결정이 완료되면 다음의 내용에 대한 법적 문서를 신청자에게 보냄
  - 상품의 원산지
  - 결정이 적용되는 날짜
  -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해당 정보를 사용할 법적 자격이 있는 자
  - 결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한지에 대한 설명

---

134) HMRC, <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binding-origin-information-decision>, 검색일자: 2023. 10. 23.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심사에 관한 결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
  - 결정이 영국 법률과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후속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상품이 구속력 있는 상업적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 변경된 결정은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할 수 있음

## 2. 비특혜원산지제도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무역 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됨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경우와 원산지표시 의무, 수량제한, 관세 쿠티터 및 정부조달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됨
- 비특혜원산지는 단일 국가 또는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인지 또는 작업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sup>135)</sup>
-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원산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고 있으며, 2023년 4월 12일부터 비특혜원산지 결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Rules of Origin: Special Rules for Determining Non-Preferential Origin, version 1.2, dated 12 April 2023)를 제정하여 적용 중에 있음
  - 「조세(국경간 무역)법」에 기반하여 규정의 적용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다음의 단일 국가 또는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은 「조세(국경간 무역)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그 국가 또는 영역에서 원산지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함<sup>136)</sup>

135)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Article 17

- 국가 또는 영토 내에서 추출된 광물 제품
  - 수확한 채소 제품
  - 태어나고 자란 살아있는 동물들
  - 사육되는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파생된 제품
  - 수렵 또는 어업으로 운반되는 제품
  - 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 등록된 선박이 해당 국가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국기를 게양하는 해상 어업 및 기타 제품
  - 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서 출발하는 상기지점에서 언급한 제품으로부터 선내 공장선에서 얻거나 생산되는 제품(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 등록되어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해당 국가가 해당 해저 또는 해저 토양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영해 밖 해저 또는 해저 하층 토양에서 채취한 제품
  - 제조업 작업 및 중고 물품에서 파생된 폐기물 및 고철 제품(원자재 회수에만 적합한 경우)
  - 명시된 제품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생산된 제품
- 다음은「조세(국경간 무역)법」제 17조 제3항에 따라 비우대적 원산지를 부여할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당한 실질적인 가공이라고 볼 수 없는 작업임<sup>137)</sup>
- 운반 및 보관(환기, 펼침, 건조, 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중 제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을 보장하는 작업 또는 선적 또는 운송을 쉽게 하는 작업
  - 먼지 제거, 체질 또는 스크리닝, 구분(sorting), 등급분류(classifying), 일치, 세척, 절단으로 구성된 간단한 작업
  - 포장 변경, 화물의 분해 및 조립,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상자 등의 단순 배치, 카드 또는 보드에 고정 및 기타 모든 단순 포장 작업
  - 상품을 세트나 앙상블 형태로 전시하거나 판매용으로 전시하는 것

136) HMRC, 「RULES OF ORIGIN: SPECIAL RULES FOR DETERMINING NON-PREFERENTIAL ORIGIN」 Part 1, 2023. 4. 12. Version 1.2, dated 12th April 2023, Part 1

137) HMRC, 「RULES OF ORIGIN: SPECIAL RULES FOR DETERMINING NON-PREFERENTIAL ORIGIN」 Version 1.2, dated 12th April 2023, Part 2, 2023. 4. 12.

- 제품이나 포장에 마크, 라벨 또는 기타 유사한 식별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
  -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제품 부품의 단순 조립
  - 분해 또는 용도 변경
  - 위에서 명시된 두 가지 이상의 조합
- 품목분류표의 XVI, XVII 및 XVIII에 분류된 물품과 함께 배송되고 표준 장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품, 예비 부품 또는 도구는 해당 물품과 동일한 원산지를 갖는 것으로 간주함
- 생산 단계에서 필수 예비 부품의 통합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영국에서 이전에 반출허가가 난 품목분류표 XVI, XVII 및 XVIII에 열거된 물품에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은 해당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함
- 필수 예비 부품은 다음과 같은 부품을 의미함
    - 반출절차에서 제외되었거나 이전에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 기계, 장치 또는 차량의 적절한 작동을 보장할 수 없는 구성 요소를 제외한 부품
    - 해당 상품의 특징 및 손상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동일한 종류의 부품을 교체하고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것
- 마지막으로 각 품목에 따라 물품별로 적용되는 특정한 원산지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한 국가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는 해당 재료를 포함하는 상품 또는 해당 국가에서 추가 작업 또는 가공을 통해 해당 재료로 만들어진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함
  -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대체 가능한 재료 또는 상품의 별도 재고를 보관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대체 가능한 혼합 재료 또는 상품의 원산지 국가는 해당 재료 또는 상품이 혼합된 국가에서 인정되는 재고 관리 방법에 기초함
  - 관세 분류 변경에 따른 기본 규칙 적용의 목적상, 기본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

산지 재료는 특정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고 재료의 총 가치가 해당 상품의 공장도 가격(ex-works price)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무시됨

### 3. 특혜원산지제도

#### 가. 특혜원산지제도

-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특정 국가 사이에 관세특혜를 제공하는 지역 간 협정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할 때 적용함
  - 협정을 맺은 회원국 간 물품 수출입 시 특정 물품이 특혜관세 조치의 자격을 가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지역별 무역협정 대상국들이 협의하여 정함
  
- 영국의 경우 약 70여개의 무역 관련 협정을 체결 중이며, 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음<sup>138)</sup>
  -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상품별 규정에 따라 충분히 가공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를 특혜대상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실질 변경기준을 적용함
  - 2021년 1월 EU와의 무역협력협정(Trade Cooperation Agreement, TCA)에 명시된 원산지규정 요건 충족 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영국은 실질적 변경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을 사용하고 있음<sup>139)</sup>

138) HMRC, <https://www.gov.uk/guidance/check-your-goods-meet-the-rules-of-origin>, 검색 일자: 2023. 10. 23.

139) 상동

- 세번변경기준은 제조,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기준 단위의 HS코드가 다르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임
-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실질적 변형의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제품의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기준가격에 대한 역외산 재료 비율의 상한을 규정함
- 협정문에서 지정된 특정공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한다.
- 그 밖에 미소기준, 누적기준(양자, 교차, 유사, 완전), 중간재, 간접재료부속품 대체 가능물품 등을 보충 기준으로 협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나. 원산지 증명<sup>140)</sup>

- 세관신고서에 원산지 증명을 기재해야 하며 관세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2년 이내에 역내로 반출해야 함<sup>141)</sup>
  - 원산지 신고서는 물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HMRC에 제출해야 함
  - 무역협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세특혜를 주장할 때마다 상품이 관련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상업 문서(송장, 포장 목록, 배달 통지서)에 대해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음
  - EUR1 또는 EUR-MED 이동 증명서
  - 원산지 선언
  - 수입자 선언
  - 양식 A

140) HMRC, <https://www.gov.uk/guidance/get-proof-of-origin-for-your-goods>, 검색일자: 2023. 10. 23.

141) 상동

- 무역협정에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하고 수령한 경우에만 £5,400 이상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는 다음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정기적으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의도가 있는 경우
  - 수출할 물품이 특혜자격을 얻기 위해 관련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함
  - 정확하게 서류 작성 및 관리가 확인되어야 함
  - 승인된 수출자인 경우,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서명 없이 원산지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 HMRC의 허가에 따라 서명이 생략 가능함
  
- 협정에 따라 수입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특혜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수입자의 인지(Importer's Knowledge)'라고 하고 원산지 신고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증빙 서류 또는 기록이 필요함
  - 생산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사용 제품의 원산지 포함)
  - 원산지기준이 완전 획득 기준인 경우, 해당 범주(수확, 광업, 어업 등) 및 생산지
  - 가공공정기준인 경우 제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가치요건 만족을 위해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원산지 재료의 가치
  - 제품의 중량 및 관련 비원산지의 중량, 또는 중량 요건을 준수하는 데 적절한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중량
  - 모든 비원산지 재료 목록을 비롯한 품번
  - 상품이 변경되거나 변형된 경우 HMRC가 요청할 때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 그 밖에 공급업체 신고를 통해 공급업체가 영국과 다른 국가 간의 특혜 무역을 위해 공급업체가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음
  
- HMRC의 원산지 사후 검증을 위해 세관이 요청할 시 원산지 증명을 뒷받침할 생산

기록, 송장, 회계 관련 세부정보 공급자 선언 등을 제출해야 함

#### 다. 개발도상국 무역규정

- DCTS는 2023년 6월 19일 발효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되어 관세를 인하 및 관련 조건을 완화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규정을 간소화함
  - 「조세(국경간 무역)법」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무역제도 규정」[The Trade Preference Schem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23]을 제정하였음
-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경기준 중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sup>142)</sup>
- 유엔이 규정한 최빈개도국(LDCs) 및 세계은행이 규정한 저소득·저중소득 국가 65개국을 그 대상으로 함<sup>143)</sup>
  - 공여수준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이 3년 연속 중상위소득국가(Upper-Middle Income Countries, UMIC)로 분류한 국가들,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비최빈국은 공여대상에서 제외됨
  - 최빈개도국(LDC)에 적용되는 포괄적 특혜(Comprehensive Preference) 47개 국가
    - 포괄적 선호 대상 국가의 수출업자는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99.8%의 제품에 대해 0%의 수입 관세가 적용됨
  -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Low Income Countries (LICs) and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국가에 적용되는 우선적 특혜(Enhanced Preference) 16개

142) HM Government, 「Guidance Document Understanding the rules of origin」, 2023. 6.

143) HMRC, <https://www.gov.uk/guidance/preference-tiers-under-the-developing-countries-trading-scheme#find-out-your-country-preference-tier>, 검색일자: 2023. 10. 24.

국가

- 제품군의 92%에 대해 0%의 수입 관세가 적용됨
- LICs 및 LMICs 국가 중 경제적 취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기본특혜(Standard Preference) 2개 국가
- 제품군 65%에 대해 0%의 수입 관세가 적용되며 제품군의 26%는 관세 인하가 적용됨
  
- 48개군의 물품에 대해 CTSH 또는 MC 75%의 기준을 적용하며, 80개군의 물품에 대해서는 단일규칙을 적용하여 제품의 종류에 따른 예외를 줄여 기업의 원산지 증빙이 더욱 쉬울 수 있도록 함<sup>144)</sup>
  
- 16개군의 물품에는 규칙이 모든 상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호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 CTH기준을 적용함<sup>145)</sup>
- 16개군에 대해 정부는 나이로비 결정 원칙을 충족하고 기존 공급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모두 유지하기로 함
  
- 협정국과 영국 간에 거래 시 면세 및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원자재에 대해 DCTS 국가 및 EPA 국가 간 확장 누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EU, 노르웨이, 스위스 및 지역 그룹과의 확장 누적을 허용함<sup>146)</sup>
- LDCs 는 95개국의 원자재와 관련된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제품을 영국에 면세로 수출할 수 있음
- DCTS 누적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증명이 필요함
  - 양자 간 누적의 경우 영국 수출업체의 원산지 신고서
  - 유럽 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또는 영국 해외 영토와의 양자 누적의 경우, 관련 원

---

144)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veloping-countries-trading-scheme-dcts-new-policy-report/developing-countries-trading-scheme-government-policy-response#rules-of-origin-1>, 검색일자: 2023. 10. 23.

145) 상동

146) 상동

산지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 지역 간 누적의 경우 누적된 자재가 DCTS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증거
- LDCs에 대한 확장 누적의 경우 영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수출업자가 관련 협정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 증명 서류, 또는 해당 상품이 파트너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 및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 VII. 보세제도

### 1. 개요

- 영국의 보세제도는 크게 보세창고와 자유지역(free zon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물품은 해당 창고 및 지역에 보세상태로 반입되어 관세 및 제세금의 납부가 유예 또는 면제됨
- 「조세(국경간 무역)법」에서는 보세창고는 해당법 부칙 2에서 규정하는 보관 절차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조세(국경간 무역)법」 부칙 2에서 규정하는 보관 절차에 대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물품이 다음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sup>147)</sup>
  - 해당 절차에 따른 물품은 HMRC에 의해 승인된 곳에 보관해야 함
    - HMRC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대한 언급은 HMRC에 의해 승인된 사람이 해당 부지를 소유, 점유 또는 기타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또는 HMRC 위원에 의해 지정되거나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된 요건에 따라 자유지역에 보관되어야 함
    - 자유지역은 「관세 및 소비세법」의 제100A항에 따라 관세 목적을 위한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영국 내 지역을 의미함

---

147)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2 Article 2(1)

## 2. 보세창고

### 가. 창고 관리<sup>148)</sup>

- 보세창고는 영업용 보세창고 및 자가용 보세창고로 구분되며, 공공 또는 민간 보세창고의 공탁자가 되기 위해 HMRC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경우 창고관리인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HMRC로부터 창고관리인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을 기반으로 EORI 번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세관 관련 양호한 규정 준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창고에 대한 사업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신고가 가능하거나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함
  - 재고 기록을 유지하고 창고를 산업안전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이거나 공인 경제 운영자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나. 물품 보관 및 반출<sup>149)</sup>

- 보세창고에 물품 보관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대리인이 신고할 시 상품 신고에 대한 명확한 서면 지침을 제공하여 상품이 창고로 직접 발송되도록 해야 함

148) HMRC, <https://www.gov.uk/guidance/apply-to-operate-a-customs-warehouse>, 검색일자: 2023. 10. 24.

149) HMRC, <https://www.gov.uk/guidance/how-to-use-a-customs-warehouse#placing-your-goods-in-a-customs-warehouse>, 검색일자: 2023. 10. 25.

- 물품이 세관에 의해 통관된 후 5일 이내에 신고서에 명시된 창고로 운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창고관리인에게 수입 신고의 모든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함
  - 창고가 냉장, 냉동 또는 화학 물질과 같은 특별한 보관이 필요한 상품을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창고가 보관하려는 상품 유형에 대해 승인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함
  - 물품이 창고에서 반출되었을 시 올바르게 신고해야 함
- 보세창고에서 물품 반출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창고 물품을 자유 유통할 때 세관 창고에서 해당 물품을 하역하거나 제거해야 하며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물품을 반출하려면 세관 신고를 하거나 관련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물품 반입 번호는 전자적으로 통보되며, 신고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간이신고를 사용하여 상품을 이동할 수 있음
  - 물품을 창고에 반입하기 위해 간이신고를 한 경우에는 물품을 반출하기 위한 간이 신고를 할 수 없음
- 물품을 내부 처리 등을 위해 다른 통관 절차를 적용하거나 보세창고에서 직접 물품을 재수출할 때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물품을 다른 보세창고로 운반할 시, 예를 들어 런던과 버밍엄 등 서로 다른 지역을 다루는 동일한 승인 내에서 또는 서로 다른 승인 보유자 간 운반이 가능함
- 동일한 승인이 적용되는 창고 간에 물품 이동 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서로 다른 승인 보유자 간에 물품 이동 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 물품이 새로운 완제품으로 반출될 시, 창고에 들어온 물품을 이동할 때 개별 물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완제품의 부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부품은 특정수의 완제품을 만드는 수량으로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그 제품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질 정도의 부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완성품에 영국 및 비영국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영국 제품은 영국 부품을 추가하기 전에 완제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보세창고에서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과 같음
  - 영국 이외의 지역을 여행하는 개인, 국제기구 회원, NATO 군대의 구성원
  - 외교 및 영사 협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주문을 위해 상품을 선택하고 배송하는 원격 및 온라인 고객
- 물품은 영국을 떠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용 면세점 및 승무원용 면세점으로 반출될 수 있음

#### 다. 창고 내 작업 및 관리<sup>150)</sup>

- 보세창고의 물품은 보전, 외부, 품질향상, 유통이나 재판매를 위한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음<sup>151)</sup>
  -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처리하거나 수리하려면 내부 처리 또는 최종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 중 하나로 물품을 운반해야 함
  - 물품은 창고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처리가 완료되면 승인된 경우 기록을 통해 또는 세관 신고를 통해 물품을 창고에 다시 반입해야 함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일시적으로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할 수 있음

150) HMRC, <https://www.gov.uk/guidance/managing-your-customs-warehouse>, 검색일자: 2023. 10. 25.

151) 해당 작업의 내용은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an-carry-out-simple-repairs-or-process-your-goods-in-a-customs-warehouse>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 여기에는 예비구매자의 확인 또는 테스트를 위한 반출은 승인된 창고 구역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비구매자는 항상 창고 직원과 동행해야 함
  - 물품이 창고 지역에 있지 않은 동안에도 창고와 관련된 계약에 따라 보관됨
  - 어떤 이유로든 물건을 사유지로 가져갈 수 없음
  - 대중의 접근이 허용되는 모든 장소로 물품을 일시적으로 반출할 수 없음
  - 경매 또는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반출할 수 없음
- 창고에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지만, 물품의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품 주문을 받으면 상태가 다른 상품을 사용하여 주문을 완료할 수 없음
- 동일하거나 동등한 상품을 사용하려면 승인이 필요함<sup>152)</sup>
    - 상품 또는 그와 동등한 상품이 유전적으로 변형되었거나 유전적으로 변형된 요소를 포함할 때는 동등성을 적용할 수 없음
  - 영국 외 상품을 자유 유통할 때 소비세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품을 보관할 수 있음
- 창고 재고 기록에는 항상 해당 절차에 따른 현재 물품 재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함
- 재고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상업 시스템을 지원하는 관세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늦어도 하루 또는 다음날 영업개시 전 업데이트 해야 함

### 3. 자유지역

#### 가. 자유지역 및 혜택

- 재무부는 영국의 모든 지역을 관세 목적을 위한 특별 지역(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까지 영국 내에는 자유지역이 운영되지 않았음<sup>153)</sup>

152) HMRC, <https://www.gov.uk/guidance/using-similar-goods-to-replace-customs-special-procedure-goods>, 검색일자: 2023. 10. 25.

153)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Section100A

- 2020년 2월 10일 영국 정부는 기업이 관세유예 조치 및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유지역의 설립을 제안하였음
- 2021년 봄 정부는 예산안에서 영국 내 8개 자유항의 위치를 발표하였음<sup>154)</sup>
  - 8개의 지역은 East Midlands Airport, Felixstowe and Harwich, Humber, Liverpool City Region, Plymouth and South Devon, Solent, Teesside, Thames 입
- 「조세(국경간 무역)법」의 세관 보관 절차를 위해 보관된 물품 규정에서 자유무역지역 절차를 적용받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관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sup>155)</sup>
- 현재 자유지역은 The Free Zones (Customs, Excise and Value Added Tax) Regulations 2021의 적용을 받고 있음<sup>156)</sup>
  - The Free Zone (Customs Site No. 1 Teesside) Designation Order 2021 에 따라 Teesside 지역이 최초의 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자유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sup>157)</sup>
  - 관세의 유예, 재수출에 대한 관세 면제, 유연한 관세의 산정, 물품의 보관 및 처리를 허용함
    - 자유지역에 보관 또는 처리된 영국 외 상품을 영국 시장으로 반입 시 승인된 기업은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가치 중 기업에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수입관세를 산정할

154)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free-zones-customs-e-cise-and-부가가치세-regulations-2021/the-free-zones-customs-excise-and-부가가치세-regulations-2021>, 검색일자: 2023. 10. 25.

155)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general rule at section 4(2)

156)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free-zones-customs-e-cise-and-부가가치세-regulations-2021/the-free-zones-customs-excise-and-부가가치세-regulations-2021>, 검색일자: 2023. 10. 25.

157) HMRC, 「HMRC UK Freeports Induction Pack」, 검색일자: 2023. 10. 25., p. 6

수 있음

- 예외적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에는 우회를 피하려고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산정함
- 가공품의 테스트 또는 수리가 필요한 자유지역 물품의 결합 감지에 필요한 것 이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원, 가공품의 시험, 조정 또는 회수에 필요한 윤활유, 장비 및 도구의 경우 산정에서 제외됨<sup>158)</sup>
- 여러 권한 대신 하나의 결합된 자유구역 세관 특별 절차에 따름
- 자유구역 및 관세영역 물품 반입 및 반출 절차 간소화
- 관세영역 절차 및 기타 특수한 절차에서 사업의 필요에 맞게 물품의 이동을 허용함

## 나. 자유지역 허가 및 요건

- 자유지역 운영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식별된 지점에서만 출입이 가능해야 함
  - 자유 무역항 관련된 기록을 직접 또는 원격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설
  - 전자 기록 보관 요구 사항 준수
  -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정보 제공
  - 물품의 검사 또는 수색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무료 제공 및 유지
  -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고 금지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 중단
  - 관할 당국이 부과한 건강 안전 요구 사항의 충족, 세관원 근무조건 확인
  - HMRC가 관세영역에서 보관을 금지한 물품 보관 금지
  - HMRC에 다음의 변경 및 위반 내용 통지
    - 현장 또는 자유지역과 관련된 자의 세관 규정 위반
    - 자유지역 운영자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재료 변경 사항
    - 안전 또는 요구 사항 또는 운영자의 승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58) 「The Free Zones (Customs, Excise and Value Added Tax) Regulations 2021」 Article 18G

- 허용된 상황 이외에 자유무역항 세관 외부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 권한 있는 담당자가 자유지역 법률에 따라 제공한 지침 준수
- 자유지역 운영자로서 취득한 허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sup>159)</sup>
- 자유지역 절차를 위해 신고된 물품은 보관될 수 있다는 내용
  - 기타 자유지역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증명
  - 자유지역 절차를 위해 물품을 신고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받았다는 내용
  - 허가된 모든 자유지역 활동에 관한 내용(산업, 상업, 서비스)
- 자유지역 절차에 대한 물품 신고가 수락될 때 상품이 자유지역 밖에 있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다음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함.<sup>160)</sup>
- HMRC가 신고를 수락하면 신고된 물품은 물품 보관이 승인된 자유지역으로 직접 이동되도록 보장해야 함
  - 해당 자유지역의 책임 당국에 신고 세부사항 및 기탁 물품과 신고 물품 간의 차이 점을 설명해야 함
  - 상품 자체를 저장, 사용 또는 처리하거나 다른 자유지역 기업이 상품을 저장, 사용 또는 처리하도록 추천할 수 있음
  -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자유지역 기업의 승인 조건에 따라 해당 저장, 사용 또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물품의 처리가 다른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를 초래할 시 처리 또는 각각의 개별 처리 작업이 승인된 수량 안에서 이루어져야함

---

159) 「The Free Zones (Customs, Excise and Value Added Tax) Regulations 2021」 Article 18A

160) 「The Free Zones (Customs, Excise and Value Added Tax) Regulations 2021」 Article 18B(1)

### 다. 자유지역 물품 반출

- 다음의 때에만 자유지역에서 물품 반출이 가능함<sup>161)</sup>
  - 물품 반출자가 해당 자유지역에 대한 책임 당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이동에 대한 통지가 책임 당국에 전달된 경우
  - 물품이 다음의 절차로 신고된 경우
    - 내부 처리 절차, 승인된 사용 절차, 환적 절차, 임시 수입절차, 보세창고 절차,
  - 자유지역 절차 적용을 받기 위해 물품이 신고된 후 해당 장소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 수출되는 장소, 자유지역 절차 이행을 위한 신고가 접수될 수 있는 세관, 북아일랜드, 영연방 자유지역
  - 영국 국내 제품의 경우 HMRC 담당자가 물품 반출을 승인한 후 승인 조건에 따라 이동이 발생한 경우
  
-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유지역에서 부과 대상 물품을 운반하거나 그러한 운반을 일으킨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으나 다음은 예외로 함<sup>162)</sup>
  - 자유 지역에서 상품을 운반하거나 운반을 일으킨 자
  - 물품의 운반이 의도되지 않은 때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때
  -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책임 있는 당국에 물품 운반 통보를 한 때

---

161) 「The Free Zones (Customs, Excise and Value Added Tax) Regulations 2021」 Article 18F(1)~(7)

162) 「The Free Zones (Customs, Excise and Value Added Tax) Regulations 2021」 Article 18F(8),(9)

## VIII. 수출입규제

###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sup>163)</sup>

- 영국의 수입금지 기준은 ECP법(Export and Customs Powers (Defence) Act 1939)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단, 상세사항은 산업통상부(DBT)에서 운영하는 OGIL(Open General Import Licence)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을 제외한 상품은 영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함<sup>164)</sup>
  
- 영국의 수입 제재 정책은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 지원,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 테러 방지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에는 무기 금수 조치 및 기타 무역 제한이 포함될 수 있음<sup>165)</sup>
  
- 영국은 수입 통제(Import controls)로 인한 수입금지 품목은 총기(firearms), 대인지뢰(anti-personnel mines), 특정 핵 및 화학 제품(certain nuclear and chemical goods)임<sup>166)</sup>

---

163)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import-controls>, 검색일자: 2023. 11. 15.

164) 영국 산업통상부 Open General Import Licence gra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p. 1, The OGIL (open general import licence) is a national trade control measure run by the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DBT) that allows the import of all goods into the UK, subject to,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en-general-import-licence-ogil>, 검색일자: 2023. 11. 15.

165)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import-controls#import-controls>, 검색일자: 2023. 11. 15.

166) 영국법령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13/part/1/chapter/3>, 검색일자: 2023. 11. 15.

- 무기 수입금지 조치(Arms embargo)는 군사 품목과 관련된 거래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금지 사항으로 유엔(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또는 영국에 의해 부과될 수 있음<sup>167)</sup>
  - 제재법에 따르면 무기 금수 조치는 군사 품목의 수출, 공급 또는 인도, 사용 및 이전, 군사 품목과 관련된 기술 지원, 금융 서비스 및 자금 제공, 중개 서비스 금지로 구성됨
    - 상품 및 기술의 수입, 수출, 양도, 이동, 이용 가능 및 획득
    - 상품 및 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조달
    - 특정 기타 비금융 서비스의 제공 및 조달
    - 이러한 활동에 대한 영국 국민의 참여
  - 금지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정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금지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함
  
- 2020년 12월 31일에 발효된 「2019년 화학무기(제재)법 (EU 탈퇴)」을 통해 화학무기 사용 및 확산에 관한 제재를 함
  - 이 제재 체제는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됨
  
- 대부분의 상품을 영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은 산업통상부의 수입허가 ILB(Import Licensing Branch)가 필요함

---

167)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current-arms-embargoes-and-other-restrictions>, 검색일자: 2023. 11. 15.

2. 무역구제제도<sup>168)</sup>

##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1) 영국이 우리나라에 부과 중인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현황

- 영국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시행 중이며, 철강 제품(Certain steel products)에 세이프가드 규제를 시행 중임
- 2023년 11월 기준, 상계관세 조치 중인 품목은 없음

〈표 2-VIII-1〉 영국의 대(對) 우리나라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규제 현황

품목명	HS CODE	경과	조사개시일	규제종류
철강 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7312108112	브렉시트 이후 이행된 EU의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의 한국 경유 우회 조치에 대한 재심사(Transition Review) 2009. 8. 12.: EU의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의 한국/모로코 우회 조사 개시 2010. 5. 11.: EU 우회덤핑 긍정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 시 60.4% 관세 부과) 2018. 4. 20.: EU 우회덤핑 조치 연장 결정 2020. 12. 31.: 영국, 해당 조치 이행 발표 ○ 이행 재심사(Transition Review) 개시 : 2022. 3. 30. - 조사대상기간(POI): 2022. 1. 1 ~ 2022. 12. 31.	2023. 3. 30.	반덤핑
	7312108113			
	7312108119			
	7312108312			
	7312108313			
	7312108319			
	7312108512			
	7312108513			
	7312108519			
	7312108912			
	7312108913			
	7312108919			
	7312109812			
7312109813				
7312109819				

168) 영국은 그동안 EU 회원국으로 유지해 왔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수입규제 체계를 수립함

〈표 2-Ⅷ-1〉의 계속

품목명	HS CODE	경과	조사개시일	규제종류
철강 제품 (Certain steel products)	7208	* 2021. 6. 11: 철강 세이프가드 이행재심사의 최종 권고안 발표  - 19개 품목 중 9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관세 철폐, 8개 품목 유지, 2개 품목은 부분 유지  ○ 연장조사(extension review) 개시	2020. 10. 1.	세이프가드
	7211			
	7212			
	7225			
	7226			
	7209			
	7211			
	7226			
	7210			
	7225			
	7226			
	7210			
	7228			
7214				
7213				
7216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de-remedies-notice-202311-safeguard-measure-tariff-rate-quota-on-steel-goods>, 검색일자: 2023. 11. 15.

2) 덤핑 및 보조금에 관한 규칙<sup>169)</sup>

- 영국은 2023년 3월 1일 UK Trade Remedies Reform을 통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공표하였음
  - 이 조항은 무역구제당국(Trade Remedies Authority, TRA)과 정부 간의 정보 흐름을 확대하고 정부가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증거 기반 결정을 내릴 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무역구제법을 변경함
- 무역구제법에 대한 개정 조항은 영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과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익을

169) Schedules 4 (dumping of goods or foreign subsidies causing injury to UK industry) and Schedules 5 (increase in imports causing serious injury to UK producers) of the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유연성을 갖추도록 하는 데 필요하며, 구체적 조항은 다음과 같음

- TRA가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함
- 국무장관에게 합당한 경우, 예를 들어 TRA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사실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조사를 종료하라는 권고 또는 결정을 재평가하도록 TRA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국무장관에게 TRA가 권고한 구제책에 대해 다른 구제책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고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정당하면 TRA가 국무장관에게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경제적 이익 테스트(EIT)에 대한 TRA의 평가를 권고하여 TRA가 EIT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국무장관이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장관에게 무역구제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TRA 권고 없이 무역구제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국무장관은 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TRA에 조언,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관세 부과에 차질 없이 예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상가격 판단 시 국가를 시장경제국 및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별하여 덤핑 마진 산정에 차이를 두었음

#### 나. 기술무역장벽(TBT) 및 식품위생검역(SPS)

- 영국은 EU 탈퇴 후 수입품의 안전 및 보건 기준, 규정 등에 관해 대부분 영국 독자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함
  - 영국은 EU 탈퇴 후 EU와 별개로 독립적인 기술무역장벽(TBT)과 식품위생검역(SPS)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됨

- 장난감에 TBT가 적용된 경우는 장난감 안전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장난감을 GB(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 출시할 때 충족해야 하는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함<sup>170)</sup>
  -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장난감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 장난감은 어린이의 행동을 염두에 두어 의도한 대로 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 사용자나 제3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됨
    - 사용자 및 감독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특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또는 특정 연령 그룹이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난감에 적용됨
    - 장난감 사용과 관련된 위험 및 위험에 대한 정보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방식으로 영어로 표시해야 함
    - 위 정보는 경고라는 단어가 앞에 와야 하며 장난감이나 포장에 부착된 라벨 및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함
  - 제조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장난감이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사용 기간에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 확인함
  - 장난감의 안전성 평가 수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름
    - UKCA 마킹을 장난감에 부착된 라벨 또는 포장에 부착(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착해야 함. 단 북아일랜드 상품은 CE 및 CE UKNI 적합성 표시 상품으로 출시)
    - 장난감 및 제조업체를 장난감에 식별하고 사용 지침, 안전 정보 및 적절한 경고가 읽기 쉽게 표시되어야 함
- 한편, 영국은 수입 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경 통제 모델(BTOM)을 적용해 동식물 유래 수입품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을 분류해서 통제할 예정임<sup>171)</sup>

170)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oys-safety-regulations-2011/toys-safety-regulations-2011-great-britain>, 검색일자: 2023. 11. 15.

171)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isk-categori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to-great-britain>, 검색일자: 2023. 11. 15.

- 2024년 1월 31일부터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수입하는 동물 또는 동물성 상품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3단계로 구분해 통제함
  - 고위험군은 살아있는 동물과 수생동물 및 배아 제품, 보호조치가 적용된 상품에 적용하며 높은 수준의 물리적 검사와 신원 확인 검사가 시행됨
  - 중위험군은 날것 또는 냉장·냉동 상태의 육류·유제품 등을 먹이 용도의 동물성 부산물·수생동물 및 동물성 수산제품에 적용하며, 수입품의 1%에만 위험기반 물리검사가 시행됨
  - 저위험군은 복합식품과 육류 통조림 등 가공 및 실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가공된 동물성 부산물·저위험 국가에서 수입한 수생동물 및 수산제품에 적용되며 최소한의 통제조치가 적용됨
- 2022년 10월부터 영국은 비EU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 제품의 경우 새로운 버전(3.1)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sup>172)</sup>
  -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으로 육류 및 가공 육류 제품을 수출하는 EU 회원국 및 비EU 회원국은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번 수정 공고에 따라 비EU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수정된 서식에 맞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 인증 및 라벨링

### 1) UKCA 인증<sup>173)</sup>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독자적 규제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영국에 공급되는 제품에는 기존의 CE마킹을 부착하는 대신 영국 시장용 제품 마킹인 UKCA(UK Conformity

172) Composite products from non-EU countries 28/2012 GBHC088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osites-health-certificates>, 검색일자: 2023. 11. 15.

173)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kca-marking-roles-and-responsibilities>, 검색일자: 2023. 11. 15.

Assessed)를 부착해야 함

- UKCA 마크는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 마크임
- UKCA 마킹은 영국의 EU 최종 탈퇴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영국 적합성평가로 GB(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시장에 출시하는 공산품에 적용됨
  - 영국 정부는 2024년 12월 이후에도 영국 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CE 마크의 인정을 무기한 연장할 계획임<sup>174)</sup>
- UKCA 인증은 이전에 CE 마크가 적용되었던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됨
  - UKCA 마킹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술 요구사항은 제품에 관한 제품별 법률에 따라 달라짐
- 의료 기기, 철도 제품, 건설 제품, 민간 폭발물, 해양 장비, 케이블카, 에코디자인, 이동식 압력 장비 및 유해 물질(RoHS)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 규정이 적용됨
  - 이 지침은 영국(GB)에서 UKCA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제 운영자의 몇 가지 의무와 책임에 관해 설명하며 해당 제품은 다음과 같음
    - 장난감
    - 불꽃놀이
    - 레크리에이션 공예 및 개인 선박
    - 간단한 압력 용기
    - 전자파 적합성
    - 비자동 계량 기기
    - 측정기
    - 측정 용기병
    - 리프트

---

174)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kca-marking-roles-and-responsibilities>, 검색일자: 2023. 11. 24.

-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용 장비(ATEX)
- 무선 장비
- 압력 장비
- 개인 보호 장비(PPE)
- 가스 기기
- 기계
- 실외용 장비
- 에어로졸
- 저전압 전기 장비

□ 한편,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아있는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의해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시장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됨<sup>175)</sup>)

## 2)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인증<sup>176)</sup>

□ RoHS는 전기·전자제품(EEE)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으로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및 화학물질의 수준을 제어하도록 규제하는 인증임

□ RoHS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

-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지원 기술 문서(technical file)
- 적합성 선언
- 필수 정보 표시
- GB 및 북아일랜드 시장에 적합한 적합성 표시를 적절하게 표시

---

175)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ing>, 검색일자: 2023. 11. 15.

176)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rohs-compliance-and-guidance>, 검색일자: 2023. 11. 15.

□ RoHS 규정은 EEE를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경제 운영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함

○ 제조사

- 제조업체는 최종 어셈블리에 통합될 수 있는 예비 부품 또는 완제품을 포함하여 시장에 출시되는 전체 제품의 규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제조업체는 RoHS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EEE의 설계, 제조 및 작동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함
- 기술 문서가 작성되면 나열된 제품이 RoHS 규정의 해당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함을 선언하는 적합성 선언(DoC)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함으로써 제조업체는 EEE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도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에 있어야 함
- 기술 문서와 DoC는 모두 제품 라인의 마지막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인

-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장에 따라 자신을 대신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음
- GB 시장의 위임 담당자는 GB 또는 NI에 기반을 둘 수 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국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둘 수 없음
- 2021년 1월 1일부터 GB에 기반을 둔 공식 대리인은 더 이상 EU 법률에 따라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sup>177)</sup>

○ 수입업자

- 수입업자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영국 외 국가에서 GB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임
- 전환 기간이 끝나기 전에 EEE의 유통업체 역할을 했던 영국에 본사를 둔 사업체가 EEA 국가 또는 스위스의 EEE를 GB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전환 기간이 종료

---

177) GB에 본사를 둔 공식 대리인은 NI 또는 유럽 경제 지역(EEA)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 EEA 또는 북아일랜드에 장비를 판매하는 GB 제조업체가 해당 장비와 관련하여 작업을 수행할 공식 대리인을 임명하려는 경우 북아일랜드 또는 EEA에 기반을 둔 공식 대리인을 임명해야 함

- 된 후 법적으로 수입업자로 인정됨
- 수입업자는 적합성 선언(DoC) 사본을 보유해야 하며 모든 기술 문서를 검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에서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EEE에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EEE 포장 또는 EEE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 세부정보 및 적합성 표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 수입업자가 EEE를 자체 브랜드 또는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관한 규정에서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유통업체(소매업체 포함)
-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제외하고 EEE를 시장에 출시하는 공급망의 모든 사람이며, 여기에는 범위 내 제품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포함됨
-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규정은 모든 EEE, 케이블 및 예비 부품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음
- 군사용 또는 우주로 보내도록 특별히 설계된 일부 장비
  -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장비에 필수적인 제품
  - 대규모 고정식 산업용 공구 및 대규모 고정 설비
  - 특정 위치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된 태양광 패널
  - 운송 수단(특정 이륜 전기 자동차 제외)
  - 전문가용 비도로용 이동식 장비
  - B2B(Business-to-Business) 기반으로 제공되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제품
  - 파이프 오르간
  - 능동 이식형 의료 기기
- GB 및 북아일랜드에서 EEE를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업체는 제품이 <표 2-VIII-2> 유해 물질의 최대 규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생산 관리를 평가해야 함

〈표 2-Ⅷ-2〉 유해물질 규정

물질	제한 한도(%)	제한 한도(ppm)
납(Pb)	0.1	1,000
수은(Hg)	0.1	1,000
6가 크롬(Cr(VI))	0.1	1,000
카드뮴(Cd)	0.01	100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0.1	1,000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0.1	1,000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0.1	1,000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0.1	1,000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0.1	1,000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0.1	1,00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striction-of-hazardous-substances-rohs-regulations/restriction-of-the-use-of-certain-hazardous-substances-in-electrical-and-electronic-equipment-regulations-2012-as-amended-great-britain>, 검색일자: 2023. 11. 22.

### 3) UK REACH 인증<sup>178)</sup>

- UK REACH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때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영국과 EU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할 때에 UK REACH와 EU REACH를 모두 준수해야 함
  - 영국 REACH는 기존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목표와 원칙을 유지함
- 따라서 영국에 화학물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장에 접근해야 하며, 동물실험, 근로자를 위한 정보 접근, 예방 원칙을 따라야 함

178)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how-to-comply-with-reach-chemical-regulations>, 검색일자: 2023. 11. 15.

4)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인증<sup>179)</sup>

- 화장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영국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SCPN 등록이 필요함<sup>180)</sup>
- 등록절차를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함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내 제품 출시를 위한 영국 소재 책임자(RP) 지정
  - 제품정보 파일을 영어로 관리해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 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RP의 정보를 라벨링에 포함해야 함
- SCPN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카테고리 및 이름
  - 책임자(RP) 이름
  - 제품정보 파일(PIF) 보관 주소
  - 긴급 시 담당자 연락처
  -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 구성
  - 규정(EC) No 1272/2008에 따른 카테고리 1A 또는 1B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CMR)으로 분류된 물질의 이름 및 CAS(Chemicals Abstracts Service) 혹은 EC 번호
  - 라벨 원본 및 해당 포장 사진
- 나노물질 함유 제품을 GB 시장에 신규로 출시할 때는 위에서 언급된 정보와 더불어 아래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179) <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n-eu-ecolabel#full-publication-update-history>, 검색일자: 2023. 11. 15.

180) 영국과 EU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OPSS(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CPNP(Cosmetics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사용하여 제품을 등록해야 함

- 나노물질 형태의 물질 존재 확인
-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2~2에 대한 전문의 2번 항목에 명시된 화학명 (IUPAC) 및 기타 물질을 설명하는 나노물질 식별
- 나노물질의 예측 가능한 노출 조건

## 5) 영국 국가 라벨링

- 2021년 이후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로운 제품들은 새로운 영국 국가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
  - 기존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규칙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됨
    -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새로운 제품들은 영문과 함께 영국 에너지 라벨을 포함함
    - 제품에는 공개 접속이 가능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됨

## 라. 환경 관련 규제

- 영국은 2022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를 도입했으며,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 플라스틱 포장 수입업체, 이들의 고객,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새로 도입되는 세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sup>181)</sup>
  - 다음의 2가지 경우에 플라스틱 포장세가 적용됨
    - 향후 30일 이내에 10톤 이상의 완제품 플라스틱 포장 부품을 영국으로 수입하거나 영국에서 제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지난 12개월 동안 10톤 이상의 완제품 플라스틱 포장 부품을 영국으로 수입하거나 영국에서 제조한 경우

---

181)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plastic-packaging-tax>, 검색일자: 2023. 11. 15.

- 플라스틱 포장에 30%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톤당 210.82 파운드의 세금이 적용됨<sup>182)</sup>
  -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이상 포함된 플라스틱 포장 부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12개월 동안 제조 또는 수입하는 포장재에 대한 10톤 이상은 부과됨
  - 플라스틱 포장세의 목적상, 재활용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함
  - 재활용 플라스틱은 화학적 또는 기계적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소비 전 플라스틱 또는 소비 후 플라스틱에서 재처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비롯되며, 유기 재활용은 포함되지 않음

---

182) 2022년 4월 1일 기준 톤당 200파운드였으나 2023년 4월 1일부터 인상됨

## IX. 행정구제제도

### 1. 개요

- 영국의 관세 분쟁에 대한 행정 불복은 「재정법(Finance Act 1994)」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법」 제2장 이의신청 및 과태료(Chapter II Appeals and Penalties)의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Appeals and Penalties Customs and excise reviews and appeals)에서 절차, 대상, 기간, 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HMRC에서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고지한 결정서를 발송하며, 다음에 대한 몇 가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sup>183)</sup>
  - 세금 감면 청구
  -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
  - 벌금(예를 들어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경우)
  - 항소는 세금을 관리하는 자(예를 들어 회계사)가 제기할 수 있음
  
-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세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sup>184)</sup>
  - HMRC의 재심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조세 재판소에 이의를

183) HMRC, <https://www.gov.uk/tax-appeals>, 검색일자: 2023. 9. 13.

184) HMRC, <https://www.gov.uk/tax-appeals/review-of-a-tax-or-penalty-decision>, 검색일자: 2023. 11. 14.

- 제기할 수 있음
  - 조세심판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음
- 조세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는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과태료나 납부해야 할 세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sup>185)</sup>

## 2. 행정구제대상

- 관세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HMRC의 결정은 다음과 같음<sup>186)</sup>
  - 어떤 경우든 관세나 부담금이 부과되는지와 시기
  - 해당 관세 또는 부과금이 부과되는 요율 또는 부과되는 금액
  - 부과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
  - 관세나 부과금에 대한 구제나 상환,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구제, 상환, 면제 또는 환급 금액
  - 1979년 「주류세법」(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제88E조 또는 해당 법률의 부칙 2B HMRC에 개인이 벌금 또는 개인의 책임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
  - 1979년 「주류세법」 부칙 2A 제4(2)(h)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환 또는 신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상황 또는 신용 금액에 대한 HMRC의 결정
  - 1979년 「주류세법」 부칙 2A제4(2)(i)항에 근거한 결정에 따라, 지급된 대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된다는 HMRC의 결정 또는 그렇게 몰수된 금액
  - 1979년 「담배세법」(Tobacco Products Duty Act 1979) 제8조에 따라 개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HMRC의 결정 또는 개인의 책임 금액에 관한 결정

185) HMRC, <https://www.gov.uk/tax-appeals>, 검색일자: 2023. 9. 13.

186) 「Finance Act 1994」 Article 13A(1)(2)

- 2017년 「재정(제2호)법(Finance Act)」 제55조에 따른 규정 또는 해당 법의 부칙 13에 따라 개인이 처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는 HMRC의 결정 또는 다음에 따라 개인의 책임 금액에 관한 결정
- 또한 본 장의 조항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HMRC의 결정 또는 어떠한 평가에 포함된 책임액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sup>187)</sup>
  - 관세 또는 농업 부과금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
  - 관세 또는 농업 부과금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HMRC가 상환하는 경우 이자가 부과되거나 해당 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비율 또는 기간이 적용됨
  - 「관세 및 소비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압류된 것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법」 제 152조 (b)에 따른 결정을 제외하고, 이 법의 부칙 5에 명시된 설명에 대한 HMRC에 의한 모든 결정<sup>188)</sup>
    - 물품의 반입, 하역 또는 운송,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의한 또는 어떤 목적으로의 반출이 허용되거나 달리 허용되는지에 관한 모든 상품과 관련된 결정
    - 관세 또는 기타 신고의 수정 또는 철회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결정
    - 위원들(Commissioners)에게 제출된 물품의 검사 또는 샘플 채취에 대한 허가가 부여되는지에 관한 결정
    - 상품의 이동 경로에 관한 결정
    - 위원들에게 제출되거나 제출될 물품에 대한 절차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준수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른 형식이 포기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요구된 절차를 준수할 수 없거나 기타 실패한 결과로 부과될 어떠한 요건을 포함하여 취해질 조치에 관한 기타 결정
    - 특정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라이선스, 승인을 부여할지에 대한 결정(부지, 장소, 지역 또는 기타 항목과 관련하여)

187) 「Finance Act 1994」 Article 13A(2)

188) 「Finance Act 1994」 Article SCHEDULE 5 Decisions subject to review and appeal

- 특정 경우에 처리나 기타 작업 또는 절차의 수행이 승인되는지에 대한 결정
- 창고나 기타 시설의 설립이나 운영, 또는 건물의 건설과 관련된 설립, 운영 또는 건설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든 계속 승인 또는 승인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 위원이나 임원에게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라는 요구사항을 부과하거나, 어떤 일이든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대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부과된 물품에 관한 결정
- 상품의 샘플을 채취 또는 보관하기로 한 결정, 또는 상품이나 샘플에 적용될 검사나 분석에 관한 결정
- 「조세(국경간 무역)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 또는 금액에 관한 결정
- 관세 또는 농업세 체납에 대한 이자 징수를 면제할지에 대한 결정
- 이전 하위 단락 중 하나에 언급된 결정과 관련하여 그렇게 언급된 결정이 내려지는 조건에 관한 결정 또는 때에 따라 해당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관세 또는 농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및 이전 하위 단락 중 하나에 언급된 허가, 지정, 승인을 비롯하여 허가 또는 요구사항의 조건 또는 해당 하위 단락에 해당하는 결정의 목적을 위한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위해 어떤 사람이 담보 또는 기타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또는 그러한 담보 또는 기타 보증의 형태나 금액, 조건
- 농업 부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또는 기간에 관한 결정
- 관세 납부 의무 또는 과세, 「조세(국경간 무역)법」제1부에 따라 제정된 조항의 결과로 요구되거나 승인된 기타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또는 기간에 관한 결정
- 해당하는 결정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는지에 대한 결정(해당 결정이 발효되는 시점을 연기할지에 대한 결정 포함) 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 조건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결정

### 3. 재심사

#### 가. 재심사 절차

- HMRC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정을 재심사해야 함<sup>189)</sup>
  - 「재정법」 제15A조에 따라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제안했으며, 재심사 제안 통지가 포함된 문서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수락을 HMRC에 통지해야 함
  -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결정을 재심사해야 하며 그 재심사에 있어서 위원은 결정을 확인하거나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될 수 있는 철회 또는 변경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sup>190)</sup>
  
- 개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시 재심사 제안 수락을 HMRC에 통지하지 않을 수 있음<sup>191)</sup>
  - 관련 결정이 제14(1)(b)항(몰수 또는 압수된 물건에 관한 「관세 및 소비세법」 152(b)항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결정)에 따라, Section 15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관세 및 소비세법」 Section 152(b)에 따른 결정을 HMRC가 재심사 중이거나 이미 재심사한 경우
  - 해당 개인이 관련 결정과 관련하여 「재정법」 제16조에 따라 재판소에 항소한 경우
  
- 심사가 필요한 날부터 시작하여 45일 이내에 심사에 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결정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sup>192)</sup>
  - 위원은 결정을 재심사하는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도 부과된 벌금의 양을 완화할 권한이 없음

---

189) 「Finance Act 1994」 Article 15(C)

190) 「Finance Act 1994」 Article 15(1)

191) 「Finance Act 1994」 Article 15(B)

192) 「Finance Act 1994」 Article 15(2),(3)

- HMRC가 HMRC에 의해 관련 결정(relevant decision)을 개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HMRC는 동시에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제공해야 하며 재심사의 결론(conclusions of a review) 통보에는 적용되지 않음<sup>193)</sup>

### 나. 재심사 요구권리

- 다음의 경우 관련 결정에 대해 HMRC가 해당 결정을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sup>194)</sup>
  - 관련 결정이 제14(1)(b)항(몰수 또는 압수된 물건에 관한 「관세 및 소비세법」 제152(b)항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결정)에 속하는 경우
  - 제15조에 따라 관련 결정이 「관세 및 소비세법」 제152조 (b)에 따른 결정을 재심사하고 있거나 재심사한 바 있는 경우
  - 개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해 제16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경우
-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통지는 그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다. 재심사 기간

- HMRC가 개인에게 재심사를 제안한 경우, HMRC는 해당 기간 내에 관련 기간 연장을 통지할 수 있으며, 「재정법」 제15B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HMRC에 문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HMRC는 해당 기간 내에 해당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다른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음<sup>195)</sup>

193) 「Finance Act 1994」 Article 15(A)

194) 「Finance Act 1994」 Article 15(B)

195) 「Finance Act 1994」 Article 15(D)

- 통지하는 경우 관련 기간은 통지 날짜, 또는 통지 또는 추가 통지에 명시된 기타 날짜의 다음 날로부터 30일까지 연장됨<sup>196)</sup>
  
- 재심사가 필요한 자가 HMRC가 재심사를 제안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거나 기간 연장 등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의 때에만 재심사를 허용함<sup>197)</sup>
  - 허용된 시간이 지난 후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HMRC에 시간이 지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HMRC가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허용된 시간 내에 재심사를 요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HMRC는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사유 적용이 중단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요청했다고 판단한 경우
  
- 「재정법」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해당 결정을 통지하는 문서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sup>198)</sup>
  - HMRC는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결정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항소심판소에 항소하면 결정을 재심사하지 않음
  
- 「관세 및 소비세법」에 의거한 모든 절차의 목적으로 발행된 소환, 통지, 명령 또는 기타 문서, 또는 그러한 절차의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담당자가 보낼수 있음<sup>199)</sup>

---

196) 「Finance Act 1994」 Article 15(D)

197) 「Finance Act 1994」 Article 15(E)

198) 「Finance Act 1994」 Article 15(D)

199)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46(2)

## X. 벌칙

### 1. 개요

- 관세와 관련한 위반에 대한 형벌은 「관세 및 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형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각 수출입과 관련한 행위를 다루고 있는 장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형벌 및 벌금에 관해 서술하고 있음
  - 「관세 및 소비세법」 제7장 일반 및 기타 일반적인 위반 (Part XII General and Miscellaneous General offences)의 제167조에서 제170조까지 일반적인 관세 관련 범죄(General offences)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형벌에 대해 기술하되 관세 관련 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벌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술하였음
  - 동법 제171조에서는 위반행위 및 처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벌금 내용에 한정하여 서술하였음
  
- 영국은 관세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의 병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두고 있지 않음
  
- 약식재판과 기소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 및 방조범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벌칙

### 가. 위반행위 및 처벌에 관한 일반조항

- 「관세 및 소비세법」 제171조에서는 위반행위 및 처벌에 대해 적용되는(General provisions as to offences and penalties)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sup>200)</sup>
  - 지정된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 따라 또는 이에 따라 행해진 규정, 지시, 조건, 요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이러한 범죄, 위반 또는 불충분(failure)에 대해 동일한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각각의 범죄, 위반 또는 불충분에 대해 해당 처벌을 받을 의무가 있음
  
- 영국은 국가적 특성상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대해 특정한 금액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에 지정된 금액으로 언급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언급하는 규정된 금액(Prescribe Sum)은 다음을 의미함<sup>201)</sup>
  -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1980년 「치안법원법 (Magistrates Courts Act 1980)」 제32조(£1,000 또는 그 법 제143조 (1)에 따른 명령으로 대체된 기타 금액)의 의미 내에서 규정된 금액을 부과함
  - 스코틀랜드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1995년 「형사소송법(스코틀랜드)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1995)」 제225조(8) (£5,000 또는 그 밖의 금액이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대체됨)의 의미 내에서 규정된 금액을 부과함
  - 북아일랜드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1984년 과태료 및 벌칙 (북아일랜드) 명령 (Fines and Penalties (Northern Ireland) Order 1984)」 제4조의 의미 내에서 규정된 금액 (£1,000 또는 그 밖의 금액은 해당 명령 제17조에 따른 명령으로 대체

200)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0(1)

201)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1(2)

됨)을 부과함

- 지정사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칙금을 물품의 가액을 참조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가치는 해당 물품이 해당 범죄를 범한 당시 또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부과될 세금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계산되어야 함 202)
  
- 책임자, 관리자의 동의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사항으로 법에 따라 범죄가 입증된 경우, 이사, 관리자(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기타 관련 직원의 태만에 기인하는 경우, 법인 단체의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
  - 책임자(director)는 국가 소유 하에서 산업 또는 산업의 일부 또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내국세 및 관세에 대한 위원회법 2005」 및 부칙 1에 열거된 사항(이전 내국세 수입)(Schedule 1 to the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 2005 (former Inland Revenue matters)과 관련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음<sup>203)</sup>
  
- 「관세 및 소비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절차에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세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수입관세 및 소비세의 의무 시점을 확인할 수 없을 시 절차가 시작된 시점이 수입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 간주함<sup>204)</sup>

---

202)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1(3)

203)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1(4A)

204)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1(5)

## 나.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

### 1) 허위신고

- 고의 또는 과실로(knowingly or recklessly) 문서를 작성하거나 답하는 경우, 사실이 아닐 시 구금(detained)되거나 해당 진술에 대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음<sup>205)</sup>
  - 신고서, 통지서,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를 만들거나 서명하거나 작성하거나 서명하도록 하거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및 법률에 따라 답변해야 하는 담당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 처벌의 대상임
  - 약식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표준 척도 수준 4<sup>206)</sup>의 처벌을 받게 됨<sup>207)</sup>
  - 작성된 문서 또는 진술이 물질적 특정 사항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경우, 본 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며 구금될 수 있고 또한 해당 문서 또는 진술이 이루어진 모든 상품은 몰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거짓 신고, 진술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됨
  - 약식재판(summary conviction)의 경우 규정된 £20,000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
  - 기소(conviction on indictment)하여 유죄판결일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imprisonment)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문서나 진술서에 의해 지급해야 할 모든 관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모든 환급, 비용, 할인(drawback, allowance, rebate) 또는 의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과도한 지급이 발생했을 시 미지급 또는 과지급된 금액은 정부(Crown)에 대한 채무 또는 민사 채무(civil debt)로 약식 상환될 수 있음<sup>208)</sup>

205)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67(1),(2)

206) 영국법령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5/21/section/289G> 참고

207)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67(3)

## 2) 문서 위조 등

- 다음은 문서 위조죄로 처벌되어 구금될 수 있음<sup>209)</sup>
  - 지정된 사항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필요하거나 관련된 업무의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하려는 행위 또는 위·변조된 문서를 고의로 수용, 수령 또는 사용하는 행위
  - 공식적으로 발행된 후 해당 문서를 변경하는 행위
  - 이러한 문서의 확인, 상품의 보안 또는 해당 문제와 관련된 다른 목적을 위해 직원이 사용하거나 사용한 인장, 서명, 이니셜 또는 기타 마크를 위조하는 행위
  
- 위의 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면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210)</sup>
  - 약식재판의 경우 규정된 금액 £20,000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금액과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제169조 거짓된 측정 등(False scales, etc)에 관한 규정은 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음

## 3) 관세 회피

- 동법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provision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s 1979)<sup>211)</sup>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사기로 인한 관세 회피로 처벌받음<sup>212)</sup>

---

208)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67(4)

209)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68(1)

210)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68(2)

21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http://kasanlaw.com/bbs/board.php?bo\\_table=sub04\\_8&wr\\_id=24](http://kasanlaw.com/bbs/board.php?bo_table=sub04_8&wr_id=24)의 용어 참조, 검색일자: 2023. 11. 21.

- 다음 상품의 소유권을 고의로 취득하는 경우
  - 보세창고 또는 여왕의 창고(Queen's warehouse)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물품
  - 관세가 지급되지 않은 물품
  - 법률에 따라 당분간 금지 또는 제한이 시행되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행위
- 어떤 식으로든 관세 회피를 위해 해당 물품을 운반, 제거, 보관, 보존, 취급 또는 은폐(carrying, removing, depositing, harbouring, keeping or concealing)하는 데 고의로 관여하는 경우 구금될 수 있음
  
- 동법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품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다음에 대해 회피 또는 회피를 시도한 경우 구금될 수 있음<sup>213)</sup>
  -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 법령에 따라 물품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금지 또는 제한
  -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및 소비세법」, 「조세(국경간 무역)법」(「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제1부 또는 제40A조 또는 제40B조의 규정 위반
  
- 「관세 및 소비세법」 제170(4), (4A) (4AA) (4B), (4C)에 따라, 본 조에 따른 범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됨
  - 약식 유죄판결 시 지정된 금액(prescribed sum) £20,000 또는 상품 가치의 3배 중 큰 것,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
  -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금액과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
  - 1971년 「의약품 오사용법」(Misuse of Drugs Act 1971) 제3조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상기에 언급한 약식 및 기소 유죄판결의 경우, 본 법 부칙 1(규제약물)에 명시된 수정 사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함
  - 「총기법」(Firearms Act 1968)에서 명시하는 무기 또는 탄약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범한 범죄 및 무기 또는 탄약의 수입 또

212)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0(1)

213)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0(2)

는 수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북아일랜드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sup>214)</sup>

- 「위조 및 사기법」(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sections 20 and 21에 규정된 금지물품과 관련하여 관세사기, 회피 또는 관련 시도가 발생했을 경우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sup>215)</sup>
- 「바다표범 가죽 수입 규정」(Seal Skins Regulations 1996) 제2조에 포함된 금지와 관련하여 관세사기, 회피 또는 관련 시도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216)</sup>
  - 약식 유죄판결의 경우, 법정 상한액 £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기소 유죄판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핵물질 저장고로서의 수입, 수출 또는 선적과 관련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관세사기, 회피 또는 관련 시도가 발생했을 경우 기소 유죄판결의 경우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sup>217)</sup>

#### 다. 수입 관련 처벌

- 관세를 미납하였거나 수입, 반입 또는 하역이 법에 따라 일정기간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구금될 수 있음<sup>218)</sup>
  - 영국에 있는 항공기 또는 영국에 들어온 다른 차량에서 이러한 운송, 착륙 또는 하역과 관련된 화물을 인도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수입 장소 또는 승인된 부두, 검사소, 임시 보관 시설, 「조세(국경간 무역)법」 제1부에

214)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0(4A)

215)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0(4AA)

216)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0(4B)

217)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70(4C)

218)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50(1),(2),(3)

따라 세관원이 지정한 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장소에서부터 물품을 제거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그러한 제거와 관련이 있는 행위

- 위의 행위 및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세를 미납하였거나 수입, 반입 또는 하역이 법에 따라 일정기간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219)</sup>
  - 약식 유죄판결 시 규정된 금액 £20,000 또는 상품 가치의 3배 중 큰 금액,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함
  - 기소 시 유죄판결, 금액과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
  - 「약물오남용법」의 Section 3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수입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처벌은 본 법의 부칙 1(규제약물)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함
  - (5A)에 따른 다음은 7년 이하의 징역은 무기징역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 (a)「총기법」에 언급된 종류의 무기<sup>220)</sup> 또는 탄약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관세를 미납하였거나 수입, 반입 또는 하역의 행위가 법에 따라 일정기간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의 행위를 한 경우
    - [북아일랜드 총기류령] The Firearms (Northern Ireland) Order 2004에 언급된 종류의 무기 또는 탄약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북아일랜드에서 관세를 미납하였거나 수입, 반입 또는 하역의 행위가 법에 따라 일정기간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의 행위를 한 경우
  - 「위조 및 사기법」 제20조와 관련하여 관세를 미납하였거나 수입, 반입 또는 하역의 행위가 법에 따라 일정기간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의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sup>221)</sup>

219)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50(4)

220) 영국법령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8/27/section/5>에서 내용 확인 가능, 검색일자: 2023. 11. 27.

221)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50(5AA)

- 「바다표범 가죽 수입 규정」 제2조에 포함된 금지와 관련하여 관세를 미납하였거나 수입, 반입 또는 하역의 행위가 법에 따라 일정기간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의 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222)</sup>
  - 약식 유죄판결 시 법정 최고치를 초과하지 않는 £20,000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모두에 처할 수 있음
  - 기소 유죄판결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핵물질의 수입과 관련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관세를 미납하였거나 수입, 반입 또는 하역이 법에 따라 일정기간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의 행위를 한 경우,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sup>223)</sup>
  
- 다음은 약식기소 시 상품 가치의 3배 또는 표준 척도의 3등급(standard scale)<sup>224)</sup>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sup>225)</sup>
  - 다른 종류의 상품을 담은 컨테이너에 숨겨진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게 만드는 것
  - 「조세(국경간 무역)법」 제1부(PART 1 Import duty)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세관 절차로 반출되기 전이나 후에 발견된 부과 대상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하게 하는 경우
  
- 금지 또는 제한에 반하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본 조에 따른 범죄,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 또는 다른 문서에 따라 상응하는 범죄로, 해당 규정 또는 다른 문서에 의해 벌금 또는 기타 처벌이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범죄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음<sup>226)</sup>
  
-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이 밀수 방지에 사용되는 동안 이에 발포한 자는 5년 이하의

---

222)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50(5B)

223)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50(c)

224) 영국법령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2/48/part/III/crossheading/introduction-of-standard-scale-of-fines/1998-03-01>, 검색일자: 2023. 11. 21.

225)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50(6)

226)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50(7)

징역에 처할 수 있음<sup>227)</sup>

- 적절한 관리의 권한이 있거나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고의 문이나 자물쇠를 열거나 해당 창고나 그 안에 보관된 물품에 접근하고자 하거나 접근한 자의 경우, 즉결 유죄판결 시 £20,000의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함<sup>228)</sup>
- 물품을 가져가거나, 제거하거나, 적재하거나 은폐한 자가 관세 회피 또는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유죄로 구금될 수 있음
  - 약식 유죄 판결의 경우 £20,000 또는 상품 가치의 3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7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고받을 수 있음
- 「관세 및 소비세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모든 절차에서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의 치안 판사 법원(magistrates' court in England or Wales) 또는 스코틀랜드의 약식 관할 법원(a court of summary jurisdiction)이 범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외의 징역형에 대해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sup>229)</sup>
  - 동일한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북아일랜드에서 당분간 시행되는 어떠한 법률에 따라 즉결심판소가 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징역형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경우, 「관세 및 소비세법」에 따라 해당 징역형의 합계는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 될 수 있음<sup>230)</sup>

---

227)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85(2)

228)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00(1)

229)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49(1)

230)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Article 149(3)

# XI. AEO제도

## 1. 개요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AEO)는 미국이 9·11 테러를 계기로 무역 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세관 민관 협력프로그램(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으로부터 시작되었음<sup>231)</sup>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와 무역 안전의 조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도입하였음
  - 특히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위협과 급증하고 있는 국경 통과화물 물량에 대해 민간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국경관리와 무역원활화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sup>232)</sup>
  - AEO라는 명칭은 EU에서 사용한 세관 민관협력프로그램의 명칭으로 WCO가 2005년 SAFE Framework of Standards에서 AEO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AEO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sup>233)</sup>
  
- 영국의 AEO는 세관 간소화(AEO C), 공인 경제 사업자 보안 및 안전(AEO S)의 두

---

231) 브렉시트와 AEO 상호인정협정,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1/view.do?seq=13267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1/view.do?seq=13267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18. 8. 1.

232) 송선욱, 「EU의 AEO 운영에 따른 평가와 시사점」, 『관세학회지제16권 제4호』, p. 28, 2015. 12. 28.

233) 브렉시트와 AEO 상호인정협정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1/view.do?seq=13267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1/view.do?seq=13267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18. 8. 1.

가지 형태가 있음

- 세관 간소화 및 보안 및 안전을 각각 적용받거나 두 가지 모두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은 「조세(국경간 무역)법」, 「공인경제운영자 등록 및 확인 규정」(「The Customs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9」, 「세관의 보안 안전 공인경제운영자 등록 및 확인 규정」(「The Customs Safety, Security and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Amendment etc.)(EU Exit) Regulations 2020」)임
  - Regulation(EU) 952/2013, Regulation(EU) 2015/2447, Regulation(EU) 952/2013, Regulation(EU) 2015/2446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함

## 2. AEO 공인 대상 및 기준

### 가. 공인 대상<sup>234)</sup>

- 공인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법인으로써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 설립되어 있어야 함
  - 관세 업무 및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 운영자 등록 및 식별(EORI) 번호가 있어야 함
  - 사업 규모는 관계없으나 제조 과정부터 수입 및 수출 절차를 통한 상품 배송에 이르기까지 국제 공급망의 일부로써 운영되어야 함
  - 제조업자, 수출업자, 화물 운송업자, 창고지기, 세관원, 운반인, 수입자, 항구 운영자, 화물 주차 요원(freight parking operatives)

---

234) HMRC, <https://www.gov.uk/guidance/authorised-economic-operator-certification>, 검색 일자: 2023. 10. 11.

- 항공기 탑재원(airline loaders)
- 북아일랜드의 기업으로써 AEO를 취득한 경우 해당 상태는 EU에서 계속 인정됨
  - 북아일랜드에 설립된 기업으로써 XI로 시작하는 EORI 번호가 있어야 하며, 사업 과정에서 북아일랜드 관세법이 적용되는 활동에 관여하는 자여야 함

#### 나. 공인 기준<sup>235)</sup>

- 기존 충족에 대한 검사는 신청 후 이루어지며 HMRC는 비즈니스의 규모,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고 HMRC 직원이 방문조사를 수행함
- 세금 및 관세 납부 이행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세관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함
  - 기업의 3년간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며 기업이 운영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이용 가능한 최신 정보를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했는지 파악함
  - 기업은 다음에 대한 절차 및 조치를 하고 있음에 대해 입증해야 함
    - 관세 위반이나 오류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절차
    - 모든 불규칙성을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 세관 업무 관련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절차
    - 통제 물품 취급에 대한 명확한 절차
- 세관 기록 보관에 대해 상업 기록 및 운송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세관에 입증해야 함
  - 철저한 감사기록이 있는 정비된 물류시스템
  - 세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235) HMRC, <https://www.gov.uk/guidance/authorised-economic-operator-certification>, 검색 일자: 2023. 10. 11.

- 논리적인 행정 체계
  - 상품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 불법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거래를 탐지하는 내부 통제시스템
  - 면허 및 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 보관 및 검색 절차를 시행 중인지 여부
  - 시스템 오류에 대해 알려주는 훈련을 받은 직원들
  - 귀하를 대신하여 제3자가 제출한 세관신고서를 확인하는 절차
  - 정보 기술 보안 조치 시행
-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했음을 세관에 입증해야 함
- 계약상의 책임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서면 지시를 받았다는 것
  - 간접 또는 직접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이해했다는 것
  -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한 절차
  - 상품의 평가, 분류 및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관리하거나 검토하는 절차
- 당사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사업에 대한 재무 기록을 확인함
- 사업 시작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AEO에 대한 지원은 가능함
  - 전체 관리 계정 및 예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인회계사나 은행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서를 확인함
  - 사업이 파산절차나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함
- 만약 사업체가 계정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시, 입증된 재무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있음
- 세관은 현재 순자산에 긍정적으로 예상하며 특별한 상황이 있는 때에만 부정적인 순자산 보유를 평가할 때 고려함

- 세관 간소화 신청 전 지난 3년간 세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떻게 역할, 책임, 역량(roles, responsibilities and competences)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운영한 지 3년이 안 된 경우 최신 정보를 사용함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이는 세관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업무가 이들 업무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 함
  - 관세사를 통해 세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세사가 대리인으로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기업은 비즈니스와 공급망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절차가 비즈니스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며 견고한지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예를 들어 안전한 외부 울타리와 인터폰이 있는 소규모 기업은 상시 보안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은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다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안전 및 보안 위험 평가를 할 것
  -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 외부 경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화물 장치를 검사하고 보호하려는 조치를 마련해야함
  - 선적 구역, 선적 부두 및 화물 구역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보관, 제조 및 운송 중에 제품의 안전성과 안전성을 점검해야 함
  - 공급업체와 적절한 안전 및 보안 조치를 합의해야 함
  - 잠재 직원 및 계약 당사자에 대한 보안 심사 및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및 안전 요구사항을 교육해야 함
  - 임시직 직원들과 계약 체결
  - 화물기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소유
  - 모든 위탁 계약(청소, 보안, 유지보수 및 기타 포함) 보유
  -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검토

- 방문조사 시 다음 중 하나의 안전 및 보안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국제협약
  -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 기업이 규제가 적용된 대리인이거나, 알려진 위탁자이거나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자(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보안 운영자는 보안 및 안전 승인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해당 영역에 적용되어있어야 함
  -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안 및 안전 증명서
  -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국제표준
  - 유럽 표준 기구의 유럽 표준
  -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안 및 안전 인증서
  - 확실한 채용 정책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취업 확인 시 적어도 지난 3년의 이력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함
  - 규제를 받는 대리인이나 알려진 위탁자는 5년의 고용 이력을 확인해야 함
  - 직원이 보안에 민감한 위치에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 적용될 보안 심사 기준은 기업의 대리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신원조치로 적용됨

### 3. 공인 절차

- AEO 신청 전 지원자는 관련된 기준과 점점을 읽고 이해하며 질문에 대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야 함
  - 또한 EORI 번호, 현장에서 감사 방문에 사용 가능한 책임 있는 세관 관리자 및 특정 인력, 사용 가능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함
  
- 그룹사일 경우 법인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국 이외의 모기업은 지점을

영구 사업장으로 인가받아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법인의 특정 지역, 사업부 또는 지점에 AEO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며, 신청서는 국제무역 공급망에 관련된 법인의 모든 활동과 영역에 대한 것이며 AEO 기준 또한 모든 활동과 영역에 적용됨
  - 제3국에서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와 같이, 법인임이 입증된 때에만 지점(branch)이 신청할 수 있음
  - 영국의 사무소나 지사가 아닌 제3국의 모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모회사는 영국에 상설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AEO를 신청해야 함
- 전체 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을 시작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으며,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전체 내용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접수 후, 점점이 진행되며 AEO 승인까지 최대 120일이 걸릴 수 있음
  - HMRC에 이메일을 통해 Welsh(Cymraeg)로 AEO 자체 평가 양식과 신청서를 요청해야 함
  - 신청이 접수되면 확인서가 송부되고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합격 통지서를 보냄
- HMRC는 지속해서 기업이 AEO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해당 기업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발생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함
- 귀하의 법인에 대한 변경사항
  - 상호나 주소의 변경
  - 비즈니스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변화
  - 신청서에 언급된 세관 문제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변경사항
  - 회계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변경사항
  - 국제 공급망과 관련된 위치 또는 지점의 추가 또는 삭제
  - 승인된 범주의 추가 또는 삭제

#### 4. 공인 혜택<sup>236)</sup>

- AEO C로써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기업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관 간소화 및 허가를 위한 보다 빠른 신청 절차의 적용
  - 서류와 상품에 대해 수행하는 세관 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낮은 위험 점수
  - 지급 유예 계좌 수준까지의 보증 면제
  
- AEO C로써 북아일랜드의 기업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관 간소화 및 허가를 위한 보다 빠른 신청 절차의 적용
  - 세관 통제를 위해 우선적 취급 허용
  - 서류 및 상품에 대해 수행하는 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낮은 위험 점수
  - 포괄적 보증의 축소 또는 면제
  - 사업체의 유예보증금액의 70% 인하
  - 신고기록 통지 면제
  - 서로 다른 회원국 간 임시 보관소에서 상품 이동
  
- AEO S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서류 및 상품에 대해 수행하는 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낮은 위험 점수
  - 세관 통제를 위해 우선적 취급 허용
  - 간소화된 수출입 신고
  - 상호 합의 및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

236) HMRC, <https://www.gov.uk/guidance/authorised-economic-operator-certification>, 검색  
일자: 2023. 10. 11.

## 5. 영국의 상호 인정협정

- 영국은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적용하는 AEO 상호 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하고 있음<sup>237)</sup>
  - MRA는 AEO S(보안 및 안전)에 대해서 체결하고 있음
  - MRA 체결 시 빠른 통관, 세관의 낮은 정도의 개입, 낮은 위험 점수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영국은 유럽 연합,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MRA를 체결하고 있음<sup>238)</sup>

---

237) HMRC, <https://www.gov.uk/guidance/authorised-economic-operator-certification#full-publication-update-history>, 검색일자: 2023. 10. 10.

238) 상동

##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I. 수입 통관절차

#### 1. 수입 통관절차

##### 가. 수입 사전 절차

- 영국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업체 또는 운송업자 및 통관을 담당하는 대리인은 EORI 번호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함(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EORI 번호)<sup>239)</sup>
- EU에서 국가 간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부호와 유사한 일종의 EU 공동 세관등록번호임<sup>240)</sup>
- 다만 통제를 받는 물품이 아니거나 개인용은 EORI 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음

---

239) HMRC, <https://www.gov.uk/eori?step-by-step-nav=849f71d1-f290-4a8e-9458-add936efefc5>, 검색일자: 2023. 11. 15.

240)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2020. 3., p. 97

- 기존 EORI 번호를 대체하는 GB EORI 번호는 번호 앞에 GB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EORI 번호와 거의 동일하며, GB EORI 번호의 취득은 EU 역내 또는 역외국인지에 상관없이,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관에서 필수사항임<sup>241)</sup>
  - 단, 개인 간의 물품 이동, 국가 간 서비스의 이동 및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의 교역 시에는 제외됨
  - 북아일랜드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상품을 이동하는 경우 XI로 시작하는 EORI 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소포는 필요한 때에만 세관에서 해당 번호를 요청할 수 있음
  - 영국-EU국 간 수출입의 경우, 브렉시트 이전에는 역내교역에 해당하여 EORI 번호가 불필요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EU국 간 통관 시에도 EORI 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음
  
- EORI 번호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으면 즉시 발급 가능하나, HMRC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5영업일 정도 이내로 발급됨
  - 경제 사업자 등록 및 식별 번호(EORI 번호)를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됨
    - 고유 납세자 번호(Unique Taxpayer Reference)
    - 사업개시일 및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코드
    - Government Gateway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 부가가치세 번호 및 등록 유효일(부가가치세 등록일 경우)
    - 국민 보험 번호 - 개인 또는 단독 거래자인 경우
  
- 물품 도착 전 세관에 적하목록(Entry Summary Declaration- ENS)을 전송해야 함<sup>242)</sup>
  - 전기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수입되는 것, 편지, 엽서 및 인쇄물(전자 매체 포함),

241)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2020. 3., p. 98

242) HMRC, <https://www.gov.uk/guidance/making-an-entry-summary-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1. 15.

-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 세관에 구두로 신고한 물품의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화물 상세 정보 제출(물품 명세,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봉인 번호, 패키지 수량, 화물의 총중량 등), 영국 세관등록번호(EORI)1),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함<sup>243)</sup>
  - 세관은 화물에 대한 적절한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화물이 발송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문서 또는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므로 ENS의 전송은 물품 발송되기 전 완료되어야 함<sup>244)</sup>
  - 화물 발송이 인정되면 이동 참조 번호(Movement Reference Number, MRN)가 발송인에게 제공됨
  - 운송 또는 배송 유형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음
    - 해상 컨테이너 화물-출발항에서 적재하기 최소 24시간 전
    - 해상 벌크 또는 분할 벌크 화물은 도착 최소 4시간 전
    - 근해운송-도착 최소 2시간 전
    - 단거리 항공편-4시간 미만 적어도 실제 이륙 시점에는
    - 장거리 항공편-도착 최소 4시간 전
    - 철도 및 내륙 수로-도착 최소 2시간 전
    - 도로 교통-도착 최소 1시간 전

## 나. 수입신고

### 1) 일반적인 수입신고

- 물품은 수입 시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물품이 제출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sup>245)</sup>
- 물품은 영국으로 수입되는 즉시 HMRC 담당자의 통제를 받음

24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영국』, 2021, p. 28

244) 상동

245)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1 Article 1.2

- 담당자는 물품이 임시 보관 시설로 승인된 모든 장소로 이동 및 보관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 의무는 90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국으로부터 수출되면 종료됨
  - 물품 수입 시 세관에 상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품 제출에 대한 보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물품이 영국으로 수입되기 전 다른 경우에 세관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물품이 허용된 기간 내에 수입 세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신고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함<sup>246)</sup>
- 허용된 기간은 신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또는 HMRC 위원이 공고한 공고에 명시될 수 있는 더 길거나 더 짧은 기간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신고는 HMRC 위원의 공고에 명시된 전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나 HMRC 위원이 별도의 공고를 고시할 시 명시된 형태로 서면(전자적 형태 이외)으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음<sup>247)</sup>
- HMRC 위원이 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세관신고서는 구두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HMRC 위원은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가 구두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 조항의 운영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
  - 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상업 송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수취인이 이 송장을 반환받으려면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 사본을 제공해야 함<sup>248)</sup>
    - 송장에는 상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기술된 경우 번역이 필요할 수 있음
    - 개별 패키지의 내용물에 대한 세부정보가 송장에 표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포장 목록, 중량 메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덧붙여야 하며, 송장 및 기타 관련 상업

246)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1 Article 3(1)~(4)

247)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1 Article 4

248)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imports-and-community-transport-inwards/uk-trade-tariff-imports-and-community-transport-inwards#documents-to-accompany-declarations>, 검색일자: 2023. 11. 21.

문서의 팩스 사본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물품의 통관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문서가 수신되지 않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텔레텍스 또는 유사한 메시지 형태의 대체 증거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위해 수출입 화물 통관 처리(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CHIEF) 시스템 및 통관신고서비스(Customs Declaration Service, CDS)를 사용할 수 있음

○ 2024년 3월 30일부터 CDS는 영국의 단일 세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모든 기업은 CDS를 통해 상품을 신고해야 함<sup>249)</sup>

- CDS 계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함
- Government Gateway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 GB EORI 번호
- UTR(Unique Taxpayer Reference)
- 세관 기록에 보관된 사업장 주소
- 국민 보험 번호(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을 시작한 날짜

## 2) 간소화된 수입신고<sup>250)</sup>

□ 물품이 임시수입(Temporary Admission (ATA) Carnet) 절차 또는 일반 수입신고 수리에 따라 수입되지 않는 한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통해 수입 가능함

○ CHIEF에서 CDS 전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CHIEF를 통해서 간소화된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보완 신고 또한 가능함

---

249) HMRC,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ustoms-declaration-service> 및 <https://bhworldwide.com/ko/chief-to-cds-migration/>, 검색일자: 2023. 11. 15.

250) HMRC, <https://www.gov.uk/guidance/using-simplified-declarations-for-imports>, 검색일자: 2023. 11. 20.

- 간소화된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sup>251)</sup>
  - EORI 번호 취득
  - HMRC의 승인
  - 추가 신고서 제출을 위해 HMRC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HMRC가 시스템을 테스트해 CDS와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허용해야 함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지연 납부 계좌 소지
  - 간소화된 절차를 승인하기 전에 지연 납부 계좌가 있어야 하지만, 신청서의 '지연 납부 계좌 옆에 '보류 중'이라고 명시하여 계정 보유 전에 신청도 가능함
  
- 간소화된 신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sup>252)</sup>
  - 기업이 영국에 설립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지연 납부 계좌 등과 관련하여 양호한 세관 규정 준수 기록이 있어야 함
  - 사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 제출일로부터 4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신고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세관에 제공해야 함
  - 서면 절차 제공 및 유지[집계 절차, 집계된 규칙 준수 여부(aggregated rules), 관리 등 의무 관리 시스템(duty management system, DMS) 절차 및 DMS가 상용 시스템과 접속하는 방법 등]<sup>253)</sup>
  - 규정 준수 기록은 지난 3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 동안 관세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전 사업에 대한 사용 가능한 기록 및 정보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가 판단됨

---

251) HMRC, <https://www.gov.uk/guidance/using-simplified-declarations-for-imports>, 검색일자: 2023. 11. 20.

252) 상동

253) HMRC, <https://www.gov.uk/guidance/apply-to-use-simplified-procedures-for-i-port-or-export-ce48>, 검색일자: 2023. 11. 20.

- 물품에 대한 임시 보관 신고가 이루어지면 간소화된 신고는 물품이 세관에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sup>254)</sup>
  
- 간소화된 신고 시 통제 및 제한대상으로써 면허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음
  - 농업 정책 관련재
  - 소비재
  - 제조되지 않은 담배, 줄기가 없거나 벗겨지지 않은 담배
  - 제조되지 않은 담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기 모양이거나 벗겨짐
  - 담배 쓰레기
  
- 물품이 임시 보관 시설이 없는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 간소화된 신고는 해당 장소의 운영자가 정한 기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물품 도착 30일 전까지 신고할 수 있지만 물품이 실제로 도착하여 세관에 제출된 후에만 공식적으로 승인됨
  
- 간소화된 수입신고 시 다음의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 통관 절차 코드
  - 통제 물품일 경우 물품 코드
  - 출발지와 목적지
  - 수취인과 위탁자
  - 상품의 유형, 수량 및 포장
  - 운송 방법 및 비용
  - 통화 및 평가 방법
  - 인증서 및 라이선스

---

254) HMRC, <https://www.gov.uk/guidance/making-a-simplified-frontier-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1. 20.

- 신고인 기록을 통해 간소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방식의 신고에 대해 신청하고 신고인 기록(entry in declarant's records, EIDR)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으면 가능함<sup>255)</sup>
  
- 다음의 물품은 EIDR로 간소화된 수입신고가 불가능함<sup>256)</sup>
  - 수입 통제 물품
  - 탄화수소 오일
  - ATA 절차에 따른 물품
  -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
  - 개인 소지품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수입물품
  - 농업 정책을 적용받는 물품
  - 소비세 대상 물품
  - 줄기가 있거나 벗겨지지 않은 제조되지 않은 담배
  - 제조되지 않은 담배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줄기가 제거되거나 벗겨진 담배
  - 담배 부산물
  
- EIDR로 기록에 다음의 물품에 관한 세부정보를 입력해야 함<sup>257)</sup>
  - 상품 코드
  - 통관 절차 코드
  - 고유 참조번호
  - 구매 및 가능한 경우 판매 송장 번호
  - 기록 입력 날짜 및 시간 - 부가가치세 납부액 계산에 사용
  - 자유지역 또는 창고 또는 임시 저장 재고 계좌

---

255) HMRC, <https://www.gov.uk/guidance/making-an-import-declaration-in-your-records>, 검색일자: 2023. 11. 20.

256) 상동

257) 상동

- 자유지역 또는 창고 승인 번호
- 상품에 대한 서면 설명
- 과세가격
- 상품 수량(패키지 및 품목 수, 순 질량)
- 라이선스 요구 사항 및 라이선스 번호에 대한 세부정보
- 해당되는 경우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포함한 보충 문서의 세부 정보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선언하는 경우 대리하는 사람의 세부 정보

### 3) 보충 신고<sup>258)</sup>

- EIDR 또는 간소화된 수입신고 후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는 다음 달 4일 근무일까지 제출 및 수리되어야 함
- 신고서는 HMRC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신고서에는 통관절차 코드, 물품 코드, 신고자 고유 위탁 참조번호(Declaration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DUCR)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그 밖에도 수탁자와 위탁자, 상품의 유형, 수량 및 포장, 운송 방법 및 비용, 통화 및 평가 방법, 인증서 및 라이선스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 간소화 신고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충 신고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세금의 납부는 다음 달 15일에 지급유예 계좌에서 이루어짐

---

258) HMRC, <https://www.gov.uk/guidance/making-an-import-supplementary-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1. 22.

다. 물품검사<sup>259)</sup>

- 물품검사에는 신고서 및 증빙 서류 심사, 물품검사 물품의 표본 추출검사 등이 있음
- 물품은 영국 내 도착 후 검사를 위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세관의 통제하에 수입 장소에서 내륙으로 운반됨
  - 검사 날짜를 선택 후 물품에 대한 전체 검사를 수행하여 확인한 후 세관 통제에서 반출할 준비가 된 상태로 통관함(상품을 압수하거나 담보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물품검사에는 수입자 또는 지명인이 참석하거나, 지명인과 수입자가 함께 참석할 수 있음
- 물품검사의 완료에는 최대 5주가 걸릴 수 있으며, 대부분 검사가 이 시간 내에 완료되지만 일부 검사의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물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사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 검사의 특정 시점에서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대리인이 소요하는 시간이 포함됨(예: 질문에 대한 답변 지연)
- 세관에서는 물품검사를 위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신고서나 물품에 관해 질문
  - 신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에 대한 조사
  - 신고 및 문서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
  - 물품을 분류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샘플을 채취
  - 검사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 문서 또는 품목에 표시함
  - 물리적인 검사를 이행할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세(국경간 무역)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명된 물품을 억류하거나 압수함

259) HMRC, <https://www.gov.uk/guidance/when-we-select-your-goods-for-inland-pre-clearance-checks>, 검색일자: 2023. 11. 20.

- 물품에 대한 보증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선지급 확인 후 물품의 반출을 허가함
- 추가 증거가 필요하면 HMRC에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HMRC는 검사가 진행된 후 통관이 되었더라도 통관 후에 규정 준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세관의 감독하에 물품검사 후 다음의 위반이 발견될 시 과태료가 부과됨<sup>260)</sup>
  - 「조세 (국경간 무역)법」 위반
  - 세관 관련 승인, 허가, 등록 또는 면허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허위신고
  - 통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 제공 실패
  - 기록 보관 실패
  - 부정확한 반품 또는 문서
  - 세관 감독하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 라.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신고하기 위한 조건의 충족 여부 및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에 첨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sup>261)</sup>
  - 다만 HMRC 담당자가 세관신고서에 부정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에 수반되는 서류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것을 포함) 신고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신고를 수정하거나, 신고자 또는 기타 적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수정을 지시해야 함
- 부과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해당 물품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HMRC의 통제를 받으며,

260)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neral-information-about-customs-inland-pre-clearance-checks-ccfs1j/general-information-about-customs-inland-pre-clearance-checks>, 검색일자: 2023. 11. 20.

261)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1 Article 13

수입관세가 납부된 때 또는 지급 방식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HMRC가 신고를 수리했을 시 반출이 가능함<sup>262)</sup>

- 수입관세에 대한 보증이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
  - HMRC 위원들이 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참조하여 수입세를 납부한 경우
- 지연 납부 계좌를 사용하면 평균 30일 동안 요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물품을 통관할 때마다 즉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sup>263)</sup>
- HMRC는 각 거래에 대한 지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상품을 더 빨리 통관할 수 있음
  - 관세 연기 명세서 사본(copies of duty deferment statements)을 받을 수 있음
  - CDS를 이용하는 경우 계정에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음
- CDS를 이용하는 경우 즉시 지급 방법(immediate payment methods)을 사용하여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CHIEF를 사용하는 경우 유연한 회계 시스템(flexible accounting system)을 이용하여 즉시 결제가 가능함<sup>264)</sup>
- CDS를 사용할 시 현금계정(cash accounting)을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일반 보증 계정(general guarantee account)을 사용하여 수입 상품에 대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계정에서 여러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 HMRC가 신고자에게 상품이 절차에서 반출되었음을 통지하면 자유 유통 절차로 물품이 반출 완료됨<sup>265)</sup>

262)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1 Article 17

263)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ing-부가가치세-and-duties-on-imports-step-by-step-nav=8a543f4b-afb7-4591-bbfc-2eec52ab96c2>, 검색일자: 2023. 11. 20.

264) HMRC, <https://www.gov.uk/guidance/paying-부가가치세-and-duties-on-imports>, 검색일자: 2023. 11. 21.

265)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SCHEDULE 1 Article 17

-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물품이 더 이상 관세 청구 대상 물품이 아님
  - 물품이 더 이상 HMRC 담당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지만 신고 확인을 위한 권한은 유지할 수 있음
  - 물품이 특별 통관절차를 위해 신고된 경우, 물품은 다음 중 보다 늦은 시점에 맞추어 반출됨
    - HMRC가 신고를 수락한 시점 또는 절차가 신고자에게 허가를 요구하는 절차인 경우, 해당 절차가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기간
- 다음과 같은 경우 물품이 국경에서 통관 보류될 수 있음<sup>266)</sup>
- 적절한 금액의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나 사업에 대한 올바른 수입 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물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보류된 배송물과 결합한 경우

## 2. 기타 수입 통관절차

### 가. 개인용 물품

- 개인 용도로 소지한 물품 중 신고가 필요한 경우 도착 72시간 전부터 승객을 위한 HMRC 온라인 서비스([gov.uk/duty-free-goods](https://www.gov.uk/duty-free-goods))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항구와 공항에는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이 있으며, 여행자는 해당 물품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여 통과해야 함<sup>267)</sup>

---

<sup>266)</sup> HMRC, <https://www.gov.uk/import-customs-declaration?step-by-step-nav=849f71d1-f290-4a8e-9458-add936efefc5>, 검색일자: 2023. 11. 21.

-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 그린 채널로 통과할 수 있음<sup>268)</sup>
  -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
  - 금지 또는 통제 물품이 아닌 경우
  - 승객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 수하물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한 현금
  
- 다음의 경우 레드 채널로 통과할 수 있음<sup>269)</sup>
  - 신고할 개인 물품이나 현금이 있는 경우
  - 신고할 상업 물품이 있는 경우
  -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 사용이 금지된 물품을 운반하는 것
  - 허가가 필요한 물품에만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허용량을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카테고리 또는 초과된 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해야 함
  - gov.uk/dutyfree-goods에서 허용량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sup>270)</sup>
  - 양주 또는 강한 리큐르(부피 기준 알코올 22도 이상), 강화 와인 9리터(포트 또는 셰리 등) 및 같은 용량의 스파클링와인 또는 22도 미만의 기타 알코올음료<sup>271)</sup>의 경우 반입이 가능함
    - 총 알코올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해당 허용량을 합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강화 와인 4.5리터(전체 허용량 9리터의 50%)를 반입할 시, 100% 알코올 허용량을 구성하기 위해 양주 2리터(전체 허용량 4리터의 50%)를 반입할 수 있음
  - 담배는 담배 200개, 가는 담배 100개, 시가 50개, 담배 250g(시사 담배 포함) 또는

267)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4

268)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20

269)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20

270)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7

271)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8

난방용 담배 200개를 반입할 수 있음<sup>272)</sup>

- 총 담배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 허용량을 합할 수 있으므로 담배를 100개만 가지고 돌아온다면(전체 200개의 50%) 100% 담배 허용량을 구성하기 위해 시가 25개(전체 허용량 50의 50%)를 반입할 수 있음

□ 그 밖에 다음의 물품은 수입이 조건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됨<sup>273)</sup>

- 육류, 꿀 또는 유제품(영유아 우유 또는 의학적 이유로 필요한 특수 식품은 제외되거나 2kg을 초과할 수 없음)
- 2021년 1월부터 4월부터 모든 규제 식물 및 식물 제품은 EU에서 반입 시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함
- 그 밖에 규제약물, 무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은 반입이 금지됨

□ 대부분의 여행객은 영국에서 관세를 비롯한 제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대 £390(예: 향수 및 전기 제품) 상당의 다른 제품을 영국으로 반입할 수 있음

- 다만 오락 목적으로 개인 비행기나 보트로 여행하는 승객에게는 £270상당의 물품만 반입이 허용됨<sup>274)</sup>

□ £10,000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사전 신고 또는 레드 채널이 있는 항구에서는 국경 수비대(Border Force Officer)부터 BOR 9011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sup>275)</sup>

---

272)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9

273)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11, 12, 15

274)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10

275)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p. 12

## 나. 우편 및 선물

### 1) 우편

- 국제 우편 협약에 따라 발송인은 세관신고서(CN22 또는 CN23 양식)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가 패키지에 첨부되어야 함
  - 신고서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 상품의 가치, 선물인지 상업용 품목인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신고가 없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국경수비대(Border Force)가 추가 조사를 하는 동안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패키지와 내용물이 발송인에게 반환되거나 압수될 수 있음
  
- 국경수비대는 우편 패키지를 검사하여 신고서에 명시된 설명과 가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세관신고서를 확인하여 관세, 소비세 및 수입 VAT가 부과되는지 확인함
  - 패키지 개봉, 재포장 및 재밀봉은 국경수비대의 지시에 따라 Royal Mail 직원이 수행함
  
- 국경수비대에서는 영국에 도착하는 우편물에서 다음의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의 반입 여부를 검사함
  - 약제,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자료, 무기, 멸종 위기종, 위조 제품
  
- 우편 패키지 가격이 £900(영국) 및 £873(북아일랜드)를 초과하거나 특정 특별 절차(모든 특별 절차 포함)에 해당하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 해당 경우 세관신고서(C88 또는 C160)를 받게 되며, 이를 작성하여 국경수비대에 제출해야 패키지가 배송될 수 있음
  
- 하나 이상의 저가 소포를 단일 수입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시 각 우편물에는

관세가 면제된 물품이 포함되어있어야 함<sup>276)</sup>

- 수입된 각 우편물의 총 가치가 £135 이하여야 하며 하나의 우편 패킷에는 편지 한 통, 소포 한 통, 하나의 패킷, 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이 포함됨
- 다음의 경우 단일 수입신고가 불가능함
  - 소비세 부과 물품
  - 금지 또는 제한 물품
  - 만국 우편 조약에 따라 이동된 물품
  - 유럽 공동 운송 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물품은 Bulk Import Reduced Data Set 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절차가 해제됨
  - £135 이상의 우편물
  - 면허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음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불가능할 수 있음
- 해당 단일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국에 설립된 기업
  - 양호한 관세 관련 준수 기록을 보유
  - 해당하는 경우 최종 대량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견된 오류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신고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금지된 물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제한된 물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세관신고서를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 수입 허가 및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단일 수입신고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 후 다음의 조건을 유지해야 함

---

276) HMRC, <https://www.gov.uk/guidance/apply-to-import-multiple-low-value-parcels-on-one-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1. 20.

- 수입 및 수출 목적으로 4년 동안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 VAT 목적으로 6년 동안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 승인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속해서 만족해야 함
- 신청서의 정보 변경사항이 있다면 HMRC에 통지해야 함

## 2) 선물

- £39 미만의 선물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만 선물로 인정됨<sup>277)</sup>
  - 선물일지라도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보내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선물로 취급되지 않음
  - 세관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선물은 영국 외부의 개인이 영국에 있는 개인 또는 사람들에게 송달되어야 함
  - 영국 내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선물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선물은 특정한 날에 낮은 빈도로 제공되어야 함<sup>278)</sup>
- 다음의 허용량에 대해서만 선물로 취득할 수 있음<sup>279)</sup>
  - 변성되지 않은 에틸알코올 및 알코올 함량이 24도를 초과하는 알코올음료는 국제 우편으로 금지됨
  - 가격이 £39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 및 담배 제품의 선물
  - 담배 50개, 가는 담배(각각 최대 무게가 3g인 시가) 25개, 시가 10개, 흡연 담배 (smoking tobacco) 50그램
  - 알코올이 22도를 초과하는 증류 음료 및 주류, 80도 이상의 변성되지 않은 에틸알코올 1리터, 증류 음료 및 증류주, 와인 또는 알코올 도수 22도 이하인 페리티프, 타피아, 사케 또는 이와 유사한 알코올 도수 22도 이하인 음료, 스파클링와인 및

---

277) HMRC, <https://www.gov.uk/guidance/import-vat-and-customs-duty-on-gifts>, 검색일자: 2023. 11. 20.

278) 상동

279) 상동

강화 와인 1리터, 스틸와인 2리터

-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화물은 수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모든 주류 및 담배 제품에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 변성되지 않은 에틸알코올과 알코올 함량이 24도를 초과하는 알코올음료는 국제 우편으로 반입 금지됨
  - 향수 및 화장수 선물에는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상품 가격이 £39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향수 50그램(인화점이 60°C 미만인 향수는 국제 우편으로 반입 금지됨), 화장수 0.25리터
- 선물이 두 개 이상 포함된 다중 선물 패키지일 시 다음의 경우 각 개인에게 £39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됨<sup>280)</sup>
- 개별 포장되어 있어야 함
  - 개인에 대한 특별 언급이 있어야 함
  - 세관신고서에 별도로 신고되어야 함
  - 명시된 수당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신고서에 개별 품목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특정인에게 2개 이상의 개별 패키지가 전달되는 경우 상품 가격이 함께 합산되며, 총금액이 £39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280) HMRC, <https://www.gov.uk/guidance/import-부가가치세-and-customs-duty-on-gifts>, 검색일자: 2023. 11. 20.

## II. 수출 통관절차

### 1. 수출 통관절차

#### 가. 수출신고

- 수출자 또는 대리인은 상품이 영국을 떠나기 전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통관을 받아야 함<sup>281)</sup>
  - 신고 시기는 물품 이동에 사용한 마지막 운송 수단에 따라 다름
  - 도로 및 내륙의 수로를 이용할 때에는 출발 최소 1시간 전에 신고해야 함
  - 바다에서 보트나 선박을 사용하여 상품을 이동하고 화물이 영국에서 컨테이너에 들어 있으면 다음의 장소로 향할 시 항구를 떠나기 최소 2시간 전 신고해야 함
    - 그린란드,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 발트해의 항구, 북해, 흑해, 지중해
  - 컨테이너로 이동될 기타 모든 화물은 영국을 떠나는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컨테이너에 들어 있지 않은 화물은 물품이 항구를 떠나기 최소 2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항공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영국 공항에서 출발하기 최소 30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차가 형성된 마지막 기차역에서 출구 세관까지의 이동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도착 최소 1시간 전,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상품이 영국을 떠나기 최소 2시간 전에

281) HMRC, <https://www.gov.uk/guidance/making-a-full-export-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2. 4.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sup>282)</sup>
  - 통관절차 코드
  - 상품 코드
  - 신고를 연결하는 주요 참조 번호인 신고 고유 위탁 번호(unique consignment reference)
  - 출발지와 목적지
  - 수취인과 위탁자
  - 상품의 유형, 수량 및 포장
  - 운송 방법 및 비용
  - 통화 및 평가 방법
  - 인증서 및 라이선스
  
- 신고는 CDS 또는 CHIEF로 이루어져야 함
  - 2024년 3월 30일부터 관세 신고 서비스 (CDS)가 영국의 단일 통관 플랫폼이 되며 모든 기업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신고해야 함
  
- 잉글랜드, 웨일스 또는 스코틀랜드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면 GB로 시작하는 EORI 번호가 필요하며 북아일랜드로 상품을 이동하는 경우 XI로 시작하는 번호가 필요함
  
- 다음의 경우 수출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음
  - 세관 통관 완료 전
  - 신고가 통과된 후 3년까지의 통계 기록은 HMRC에 보고하고 수정할 수 있음
  
- 다음의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또는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

282) HMRC, <https://www.gov.uk/guidance/making-a-full-export-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2. 4.

- 동·식물 제품
  - 식물과 식물의 산물
  - 의약품과 의약품
  - 의료 기구
  - 화학 물질들
  -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과 F-가스
  - 방사성 물질
  - 다이아몬드
  - 미술품, 골동품 및 문화적으로 중요한 상품
  - 고문이나 사형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총기, 탄약 및 관련 장비
  - 군수품, 서비스 및 기술
  - 민간용과 군사용을 겸할 수 있는 물품
- 상품이 특정 위치에서 출발하는 경우 상품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도착'(arrived)으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함<sup>283)</sup>
- 수출신고서를 도착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을 세관에 제출한다는 의미이며, 물품이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할 물품이 선택되면 출발 위치에 따라 항구의 세관 검사 시설이나 내륙 국경 시설을 방문해야 함
- 도착한 수출신고서가 내륙 국경 시설에서 검사 또는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참석하기 전에 물품 이동 참조서(goods movement reference) 작성해야 함

---

283) HMRC, <https://www.gov.uk/guidance/check-which-locations-need-an-arrived-export-declaration-from-1-january-2022>, 검색일자: 2023. 12. 5.

- 신고서를 제출한 후 상품이 확인 대상으로 선택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음
- HMRC에 물품이 영국에서 반출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재고 연동시스템이나 물품 차량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위치의 경우 출발지점의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짐
- 재고 연계 시스템이 없고 승인된 로더를 출발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영국 출발지에 도착했을 때와 제품이 영국에서 반출되었을 시 HMRC에 보고해야 함

## 나. 물품검사

- HMRC는 일반적으로 HMRC가 승인한 건물 또는 지정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함
  -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HMRC는 상품을 특정 위치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수출자는 상품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서류를 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전자는 국경수비대의 인지가 찍힌 상품에 대한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함
  - 검사대상 물품을 운송하는 자는 항구의 세관 검사 시설이나 내륙 국경 시설에 방문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품이 세관에서 수출되지 못하고 보류될 수 있음<sup>284)</sup>
  - 물품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물품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보류된 배송물과 결합한 경우

---

284) HMRC, <https://www.gov.uk/export-customs-declaration>, 검색일자: 2023. 12. 5.

다. 물품 반출 및 환급<sup>285)</sup>

- 소비세 이동 및 제어 시스템(Excise Movement and Control System, EMCS)을 사용하여 전자 행정 문서에 따라 소비세 유예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HMRC에 전체 반출 메시지를 제공해야 수출을 완료하고 세금을 환급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 수출 증거와 함께 온라인 양식을 HMRC에 제출하기
  - HMRC IT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제3자 증개 준비
  
- RoRo(롤온 롤오프) 포트를 통해 CES의 간소화된 신고를 통해 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출 메시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수출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영국 소비세 부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청구하려면 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물품이 영국에서 소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소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물품으로써 수출되는 물품이거나 수출용 창고 해당 물품이어야 함
  
- 환급 청구 시 환급 청구 의향서를 작성하여 환급 처리 센터로 보내야 하며 물품과 함께 예를 들어, CHIEF에 대한 수출신고와 같은 증빙 문서를 준비해야 함
  - 물품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문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HMRC가 검사하기로 한 경우 최소 통지 기간을 기다려야 함
  - 환급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양식을 받은 날과 상품을 수출하려는 날 사이에 영업일 기준 최소 2일 전에 통지해야 함

---

285) HMRC, <https://www.gov.uk/guidance/sending-goods-to-the-eu-through-roll-on-roll-off-ports-or-the-channel-tunnel?step-by-step-nav=5644f562-0af5-4d85-b112-9b0a12fd10f0>, 검색일자: 2023. 12. 5.

## 2. 기타 수출 통관절차

### 가. 개인용 물품<sup>286)</sup>

- 개인용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은 구두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항구나 공항에서 빨간색 채널(또는 사용 가능한 경우 빨간색 전화를 사용)을 통해 세관원에게 구두로 다음을 물품 설명, 물품의 목적,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고 당사자에 대해 설명함
  - 개인 용도 또는 선물로 주고 싶은 것
  - 수하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동반 수하물에 포함됨
  - 영국에 등록해야 하는 교통수단
  - 예비 부품, 부속품 및 해당 운송 수단에 연결된 장비
  - 여행 중인 동물의 사료
  - 재사용 가능한 포장
  - 임시 입국 절차에 따른 특정 물품
  
- 행위에 의한 신고는 항구(물은 롤오프 위치 포함)나 공항의 세관 통제 지점(보통 '신고 할 것 없음'으로 표시된 녹색 채널)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상품을 가지고 세관 통제소를 통과하고 차 안에 있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 통제 지점을 지나칠 수 있음
  - 세관 통제 지점이 없는 경우 계속 반출을 진행하며 이는 여전히 행위에 의한 신고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 행위로 개인용 물품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함<sup>287)</sup>
  -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선물로 주려고 한 경우

286) HMRC, <https://www.gov.uk/guidance/check-how-to-declare-personal-goods-you-bring-into-or-take-out-of-the-uk>, 검색일자: 2023. 12. 5.

287)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st-of-goods-applicable-to-oral-and-by-conduct-declarations>에서 참고 가능

- 수하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동반 수하물에 포함됨
  - 휴대용 악기(영국으로 임시 여행하는 경우)
  - 구두 및 행위 신고에 적용되는 상품 목록의 파트 E 또는 파트 F에 나열된 것
  - 여행하는 동물의 사료
  - 임시 반입 절차에 따른 특정 상품(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경우)
  - 개인 보트
  - 개인 항공기
- 다음의 경우 개인용으로 구두 신고 또는 행위 신고가 불가능하며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함
-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예: 총기)
  - 허용량 초과
  - 관세의 상환 또는 면제에 대한 거부된 청구
  - 관세유예
  - 수출 제한
  - 영국 농업 정책

**나. 우편<sup>288)</sup>**

- 영국 이외의 국가로 소포를 보낼 때 우체국에 세관신고서를 받은 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sup>289)</sup>
- 필요한 모든 특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은 우편으로 수출 전 패키지 외부에 부착해야 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무게가 2kg까지 나가는 소포는 Royal Mail을 통해 발송됨

288) HMRC, <https://www.gov.uk/guidance/sending-post-or-a-parcel-abroad>, 검색일자: 2023. 12. 6.

289) HMRC,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exports-of-goods-from-the-uk/vexp50400>, 검색일자: 2023. 12. 6.

- Royal Mail 고객은 수출 증거로 국제 우편 발송 증명서 또는 Royal Mail Collection Manifest를 제출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서는 기업의 회계 기록과 연결될 수 있고 Royal Mail 수거 운전사가 인 증서에 서명하면 허용되는 증거임
  
- Parcel Force는 Royal Mail Group에 속해있으며 2kg을 초과하는 패키지를 운송하고 있음
  - 현재 Parcel Force 사용자는 상업적 수출 증명을 이행해야 하며 계정이 있는 고객 은 Parcel Force Worldwide Distribution Manager Online 시스템에 접속하여 Parcel Force로 전송된 패키지의 수집 목록, 추적 기능 및 보관 기록(계약 조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최대 지난 6개월까지)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 증거는 상품이 픽업되었거나 Parcel Force에 배송되었음을 보여주는 Parcel Force Despatch Pack(CP72)의 도장이 찍힌 사본임
  
- 상업 송장은 수출 허가가 필요하거나 세관 특별 절차에 따라 수출되는 품목에 첨부해야 하며 스티커 라벨 C 및 E83A도 부착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증명서(C&E132)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급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영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비세도 면제됨
  
- 모든 소포는 세관에서 개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포에 대해 완전히 작성된 세관신고서가 필요함<sup>290)</sup>
  - 상품의 수량, 무게 및 가치를 포함하여 소포 내의 모든 품목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수출신고서에 물품에 대해 부정확하게 설명할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290) HMRC, <https://www.gov.uk/guidance/vat-on-goods-exported-from-the-uk-notice-703>, 검색일자: 2023. 11. 30.

## 참고문헌

- 강유덕,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제3국과의 FTA 체결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8권 1호, 2020.
- 관계부처합동, 『한-영국 FTA 상세설명자료』, 2021. 2.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2020. 3.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영국』, 2021.
- 송선욱, 「EU의 AEO 운영에 따른 평가와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5.
- 영국 산업통상부 Open General Import Licence gra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p. 1.
- 영국 DBT, 『UK-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Strategic Approach』, 2023.
-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7.
- 코트라, 「브렉시트 이후 EU 변화 및 대응방향」, 2020. 7.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3.
-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동향분석: 최근 영국 경제 상황 및 평가」, 2022. 2.
- Border Force, 「UK customs information」, 2020. 12.
- EY (Ernst and Young), 「attractiveness survey of foreign investors' investments in the UK」, 2022.
- HM Government, 「Guidance Document Understanding the rules of origin」, 2023. 6.
- HMRC, 「RULES OF ORIGIN: SPECIAL RULES FOR DETERMINING NON-PREFERENTIAL ORIGIN」 Part 1, 2023. 4. 12., Version 1.2, dated 12th

April 2023.

House of Commons Library,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23. 6.

IMF, Country Report No. 23/252, United Kingdom, 2023.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3. 10.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3, 2023.

「Finance Act 1994」 1992, 2003, 2008.

「The Customs (Import Duty) (EU Exit) Regulations 2018」.

「The Free Zones (Customs, Excise and Value Added Tax) Regulations 2021」.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가산종합법률사무소, <http://kasanlaw.com/>.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

산업통상자원부 뉴스, <https://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fta.go.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B&H worldwide, <https://bhworldwide.com/>.

FTA 포털, <https://www.fta.go.kr/>.

HMRC, <https://www.gov.uk/government/>.

HMRC, 「HMRC UK Freeports Induction Pack」,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

IMF <https://www.imf.org/en/>.

KMI. <https://www.kmi.re.kr/globalnews/>.

KOTRA, <https://dream.kotra.or.kr/>.

OECD, <https://www.oecd-ilibrary.org/>.

브렉시트와 AEO 상호인정협정 <http://overseas.mofa.go.kr/>

영국법령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영국중앙은행(BOE), <https://www.bankofengland.co.uk>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영국 -

---

발 행 2023년 12월 31일  
저 자 홍용기 · 노영예 · 박지우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I S B N 979-11-6655-239-7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

